2021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1. 9.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21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교육부

차례

Ⅰ 특수교육의 개요 13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Ⅱ 2021년 특수교육 현황 21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Ⅲ 2021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3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33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33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 ····· 33
      (2) 특수학교 학생 ····· 34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36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37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38

차례

2) 특수교육기관 확충 ····· 39
(1) 특수학교 ····· 39
(2) 특수학급 ····· 42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45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48
5)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50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50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 57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6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64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64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65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68
4)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71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73
6)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79
7)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 81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83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및 발전 ····· 83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85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94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94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 98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00

차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103

1)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103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105
3) 장애발견 진단 · 배치 체계 구축 ····· 108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114

5.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 118

1) 학사 및 학습지원 ····· 118
2) 방역관리 ····· 118

6.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20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120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123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 · 직업교육 지원 ····· 125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27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 129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130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33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136

Appendix **부록**

Ⅰ: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139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67

표차례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4
〈표 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 15
〈표 1·3〉 연도별 특수학교 수 ····· 15
〈표 1·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 15
〈표 1·5〉 연도별 특수학급 수 ····· 15
〈표 1·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15
〈표 1·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 16
〈표 1·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 16
〈표 1·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17

〈표 2·1〉 2021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 21
〈표 2·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2
〈표 2·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3
〈표 2·4〉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 24
〈표 2·5〉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 24
〈표 2·6〉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 25
〈표 2·7〉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 26
〈표 2·8〉 특수학급 현황 ····· 27
〈표 2·9〉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 27
〈표 2·10〉 순회교육 현황 ····· 28
〈표 2·1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28
〈표 2·12〉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 29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33
〈표 3·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4
〈표 3·3〉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4
〈표 3·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 35
〈표 3·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36

표차례

〈표 3 · 6〉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6
〈표 3 · 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 37
〈표 3 · 8〉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7
〈표 3 · 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 38
〈표 3 · 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 39
〈표 3 · 11〉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39
〈표 3 · 1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40
〈표 3 · 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 41
〈표 3 · 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 42
〈표 3 · 15〉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 43
〈표 3 · 16〉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 · 현원 ····· 44
〈표 3 · 17〉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 45
〈표 3 · 18〉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 45
〈표 3 · 19〉 공 · 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 46
〈표 3 · 20〉 유치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현황 ····· 47
〈표 3 · 2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 49
〈표 3 · 22〉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 51
〈표 3 · 23〉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 54
〈표 3 · 24〉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 56
〈표 3 · 25〉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 58
〈표 3 · 26〉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 59
〈표 3 · 27〉 전국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 학교의 시 · 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 61
〈표 3 · 28〉 국 ·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 62
〈표 3 · 29〉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 62
〈표 3 · 30〉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 62
〈표 3 · 31〉 특수학교 시 · 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 63
〈표 3 · 3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64
〈표 3 · 33〉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 66

표차례

〈표 3 · 34〉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 67
〈표 3 · 3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69
〈표 3 · 36〉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 70
〈표 3 · 37〉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 71
〈표 3 · 38〉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 72
〈표 3 · 39〉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 72
〈표 3 · 40〉 치료지원 현황 ····· 73
〈표 3 · 41〉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 ····· 74
〈표 3 · 42〉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 75
〈표 3 · 43〉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 76
〈표 3 · 44〉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 77
〈표 3 · 45〉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 78
〈표 3 · 46〉 병원학교 운영 현황 ····· 80
〈표 3 · 47〉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 81
〈표 3 · 48〉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현황 ····· 82
〈표 3 · 49〉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운영 · 지원 현황 ····· 84
〈표 3 · 50〉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 86
〈표 3 · 51〉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 87
〈표 3 · 52〉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 88
〈표 3 · 53〉 2021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 89
〈표 3 · 54〉 2021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 90
〈표 3 · 55〉 2021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 91
〈표 3 · 56〉 2021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 92
〈표 3 · 57〉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 93
〈표 3 · 58〉 2021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 95
〈표 3 · 59〉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 96
〈표 3 · 60〉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 97
〈표 3 · 61〉 일반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 99

표차례

〈표 3 · 62〉 원격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 99
〈표 3 · 63〉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 100
〈표 3 · 6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개황 ····· 102
〈표 3 · 65〉 유 · 초 · 중 · 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 104
〈표 3 · 6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 106
〈표 3 · 67〉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20) ····· 106
〈표 3 · 68〉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107
〈표 3 · 69〉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107
〈표 3 · 7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 109
〈표 3 · 71〉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 110
〈표 3 · 72〉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 111
〈표 3 · 73〉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 112
〈표 3 · 7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 113
〈표 3 · 7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 114
〈표 3 · 76〉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 115
〈표 3 · 77〉 특수교육 총예산 ····· 116
〈표 3 · 7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116
〈표 3 · 79〉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 117
〈표 3 · 80〉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122
〈표 3 · 81〉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 교과서 관련 사업 ····· 124
〈표 3 · 82〉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 · 직업교육 지원 ····· 126
〈표 3 · 83〉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28
〈표 3 · 84〉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 129
〈표 3 · 85〉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 130
〈표 3 · 86〉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 131
〈표 3 · 87〉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 133
〈표 3 · 88〉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134
〈표 3 · 89〉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 137

특수교육의 개요 I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Ⅰ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령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표 1 · 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A)	′21(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2,734**
학교 과정별	장애영아	356	403	578	680	742	656	549	582	532	439	369	-70
	유치원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661
	초등학교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1,609
	중학교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1,072
	고등학교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486
	전공과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2
특수학교 수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5
특수학급 수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381
교원 수*		15,934	16,727	17,446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1,349

* 국 · 공 · 사립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표 1 · 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62	′67	′72	′77	′82	′87	′92	′97	′03	′06	′09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학교 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37	143	150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표 1 · 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0	′08	′12	′15	′16	′17	′18	′19	′20	**′21**
학생 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400	24,720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표 1 · 5〉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71	′76	′80	′85	′90	′95	′08	′09	′12	′15	′16	′17	′18	′19	′20	**′21**
학급 수	1	350	355	1,601	3,181	3,440	6,352	6,924	8,92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표 1 · 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71	′82	′86	′91	′96	′08	′09	′12	′15	′16	′17	′18	′19	′20	**′21**
학생 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37,857	39,380	44,43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표 1 · 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단위: 학급)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급 수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특수학교 학급	4,550	4,615	65	1.4%	4,747	132	2.9%	4,843	96	2.0%	4,968	125	2.6%	5,114	146	2.9%
일반학교 특수학급	10,065	10,325	260	2.6%	10,676	351	3.4%	11,105	429	4.0%	11,661	556	5.0%	12,042	381	3.3%
특수교육 지원센터	60	74	14	23.3%	77	3	4.1%	72	-5	-6.5%	50	-22	-30.6%	59	9	18.0%
계	**14,675**	**15,014**	**339**	**2.3%**	**15,500**	**486**	**3.2%**	**16,020**	**520**	**3.4%**	**16,679**	**659**	**4.1%**	**17,215**	**536**	**3.2%**

〈표 1 · 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2	24,932 (29.3)	44,433 (52.3)	15,647 (18.4)	60,080 (70.7)	85,012 (100)
2013	25,522 (29.5)	45,181 (52.2)	15,930 (18.4)	61,111 (70.5)	86,633 (100)
2014	25,827 (29.6)	45,803 (52.5)	15,648 (17.9)	61,451 (70.4)	87,278 (100)
2015	26,094 (29.6)	46,351 (52.6)	15,622 (17.7)	61,973 (70.4)	88,067 (100)
2016	25,961 (29.5)	46,645 (53.0)	15,344 (17.4)	61,989 (70.5)	87,950 (100)
2017	26,199 (29.3)	47,564 (53.2)	15,590 (17.4)	63,154 (70.7)	89,353 (100)
2018	26,337 (29.0)	48,848 (53.8)	15,595 (17.2)	64,443 (71.0)	90,780 (100)
2019	26,459 (28.5)	50,812 (54.7)	15,687 (16.9)	66,499 (71.5)	92,958 (100)
2020	26,615 (27.9)	52,744 (55.3)	16,061 (16.8)	68,805 (72.1)	95,420 (100)
2021	**27,288 (27.8)**	**54,266 (55.3)**	**16,600 (16.9)**	**70,866 (72.2)**	**98,154 (100)**

〈표 1 · 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4	2,130 (2.4)	3,581 (4.1)	47,667 (54.6)	11,209 (12.8)	2,605 (3.0)	9,334 (10.7)	1,966 (2.3)	3,362 (3.9)	2,029 (2.3)	3,395 (3.9)	87,278 (100)
2015	2,088 (2.4)	3,491 (4.0)	47,716 (54.2)	11,134 (12.6)	2,530 (2.9)	10,045 (11.4)	2,045 (2.3)	2,770 (3.1)	1,935 (2.2)	4,313 (4.9)	88,067 (100)
2016	2,035 (2.3)	3,401 (3.9)	47,258 (53.7)	11,019 (12.5)	2,221 (2.5)	10,985 (12.5)	2,089 (2.4)	2,327 (2.6)	1,675 (1.9)	4,940 (5.6)	87,950 (100)
2017	2,026 (2.3)	3,358 (3.8)	48,084 (53.8)	10,777 (12.1)	2,269 (2.5)	11,422 (12.8)	2,038 (2.3)	2,040 (2.3)	1,626 (1.8)	5,713 (6.4)	89,353 (100)
2018	1,981 (2.2)	3,268 (3.6)	48,747 (53.7)	10,439 (11.5)	2,221 (2.4)	12,156 (13.4)	2,081 (2.3)	1,627 (1.8)	1,758 (1.9)	6,502 (7.2)	90,780 (100)
2019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9)	92,958 (100)
2020	1,908 (2.0)	3,132 (3.3)	50,693 (53.1)	9,928 (10.4)	1,993 (2.1)	13,917 (14.6)	2,404 (2.5)	1,226 (1.3)	1,785 (1.9)	8,434 (8.8)	95,420 (100)
2021	**1,826 (1.9)**	**3,026 (3.1)**	**51,788 (52.8)**	**9,695 (9.9)**	**1,874 (1.9)**	**15,215 (15.5)**	**2,450 (2.5)**	**1,114 (1.1)**	**1,799 (1.8)**	**9,367 (9.5)**	**98,154 (100)**

통계 자료 분석

○ 학생 수 변화 추이

– ′21년 특수교육대상자는 98,154명으로 ′20년보다 2,734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는 70,866명(72.2%)으로 ′20년보다 2,061명이 증가함

– 장애영역별로는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학생 비율이 각각 0.9%p, 0.7%p 증가함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교원 변화 추이

– ′21년 특수학교는 총 187교로 ′20년보다 5개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총 12,042학급으로 ′20년보다 381학급이 증가함

– 특수교육교원은 총 23,494명으로 ′20년보다 1,349명이 증가함

2021년 특수교육 현황 Ⅱ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Ⅱ 2021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2021.4.1.

1 주요 현황

〈표 2 · 1〉 2021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단위: 명, 교, 학급)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27,027**	**54,266**	**16,600**	**261**	**98,154**
학생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130	234	460	2	1,826
		청각장애	605	689	1,723	9	3,026
		지적장애	14,356	32,537	4,883	12	51,788
		지체장애	3,826	3,425	2,376	68	9,695
		정서 · 행동장애	79	1,199	596	-	1,874
		자폐성장애	6,247	8,004	960	4	15,215
		의사소통장애	159	1,380	911	-	2,450
		학습장애	19	705	390	-	1,114
		건강장애	7	105	1,687	-	1,799
		발달지체	599	5,988	2,614	166	9,367
		계	**27,027**	**54,266**	**16,600**	**261**	**98,154**
	학교과정별	장애영아	108	-	-	261	369
		유치원	927	4,444	1,826	-	7,197
		초등학교	8,704	28,484	7,626	-	44,814
		중학교	5,750	10,755	3,707	-	20,212
		고등학교	6,365	10,363	3,441	-	20,169
		전공과	5,173	220	-	-	5,393
		계	**27,027**	**54,266**	**16,600**	**261**	**98,154**
학교 및 센터 수			187	11,709		199	12,095
				8,729	7,986		
학급 수			5,114	12,042	15,772	59	32,987
특수학교(급)교원 수*			9,501	12,718	-	1,275	23,494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4,614	8,880	269	-	13,763

*국 · 공 · 사립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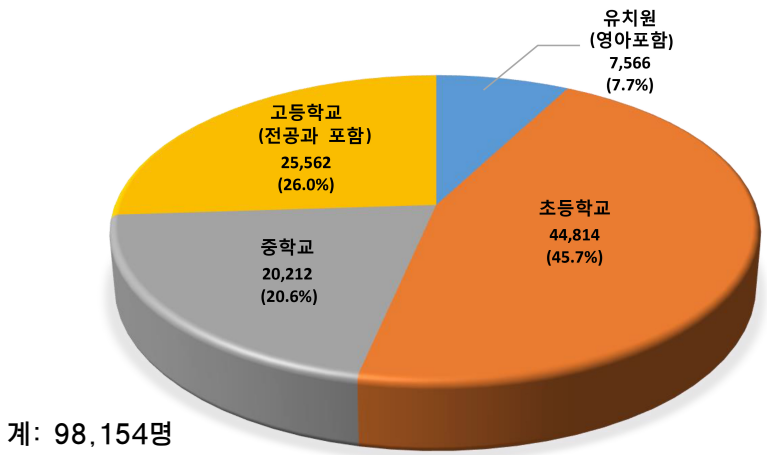

계: 98,154명

〔교육기관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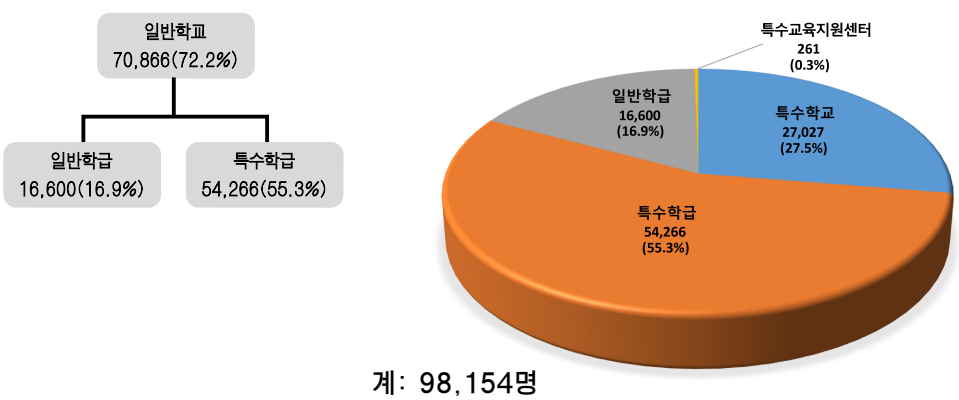

계: 98,154명

〈표 2 · 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7,027 (27.5%)	54,266 (55.3%)	16,600 (16.9%)	70,866 (72.2%)	261 (0.3%)	**98,154** **(100)**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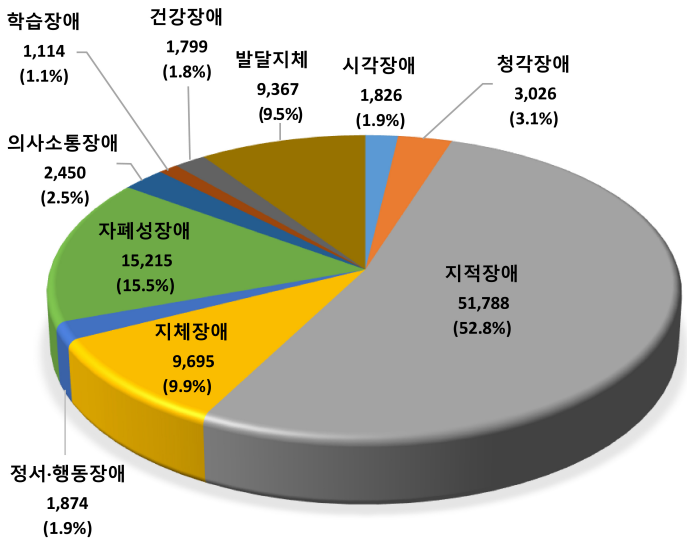

계: 98,154명

〈표 2 · 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1,826 (1.9)	3,026 (3.1)	51,788 (52.8)	9,695 (9.9)	1,874 (1.9)	15,215 (15.5)	2,450 (2.5)	1,114 (1.1)	1,799 (1.8)	9,367 (9.5)	**98,154 (100)**

2 특수학교 현황

〔특수학교 설립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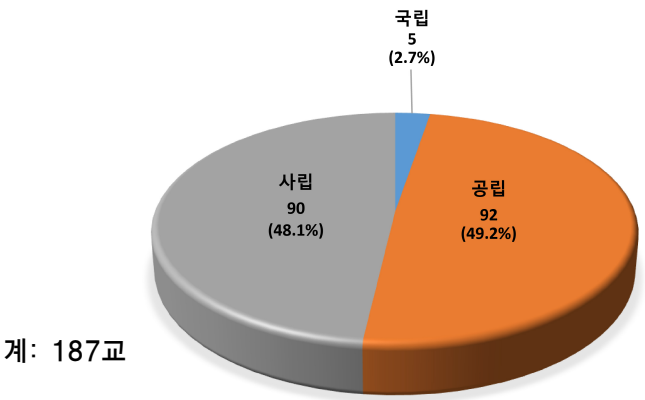

계: 187교

〈표 2 · 4〉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 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 립	5	165	838	317
공 립	92	2,975	15,740	5,550
사 립	90	1,974	10,449	3,634
계	**187**	**5,114**	**27,027**	**9,501**

〔특수학교 장애영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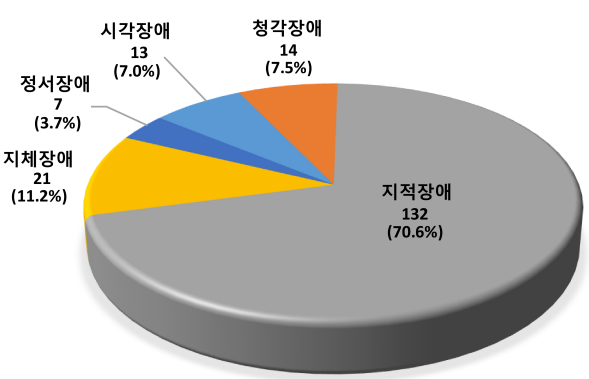

계: 187교

〈표 2 · 5〉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장애영역	장애영역별 학교 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수	13	14	132	21	7	**187**

〈표 2 · 6〉 시 · 도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시·도	설립별 학교 수				장애영역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11	18	32	3	4	16	6	3	32
부산	-	8	7	15	1	1	12	1	-	15
대구	-	4	6	10	1	1	5	2	1	10
인천	-	6	4	10	1	1	7	1	-	10
광주	-	3	2	5	1	-	3	1	-	5
대전	-	4	2	6	1	-	4	1	-	6
울산	-	2	2	4	-	1	3	-	-	4
세종	-	1	-	1	-	-	1	-	-	1
경기	2	14	22	38	-	2	32	3	1	38
강원	-	7	1	8	1	1	6	-	-	8
충북	-	3	7	10	2	1	4	2	1	10
충남	-	7	2	9	-	-	8	1	-	9
전북	-	6	4	10	1	1	6	2	-	10
전남	-	3	5	8	1	1	6	-	-	8
경북	-	3	5	8	-	-	7	-	1	8
경남	-	8	2	10	-	-	10	-	-	10
제주	-	2	1	3	-	-	2	1	-	3
총계	**5**	**92**	**90**	**187**	**13**	**14**	**132**	**21**	**7**	**187**

〈표 2 · 7〉 시 · 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단위: 교)

시 · 도	학교 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	32	8	24	28	28	28	26
부산	15	7	10	12	13	11	9
대구	10	-	4	10	10	10	9
인천	10	1	7	9	10	9	8
광주	5	3	4	5	5	5	4
대전	6	2	6	6	6	6	6
울산	4	-	3	4	4	4	4
세종	1	1	1	1	1	1	1
경기	38	3	32	33	35	35	28
강원	8	-	6	8	8	8	7
충북	10	2	10	10	10	10	10
충남	9	1	3	8	8	9	8
전북	10	1	5	9	9	9	9
전남	8	-	6	8	8	8	8
경북	8	-	5	8	8	8	8
경남	10	-	6	10	10	10	10
제주	3	-	3	3	3	3	3
총계	**187**	**29**	**135**	**172**	**176**	**174**	**158**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표 2 · 8〉 특수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 치 원	1,001	1,228	4,444	1,275
초등학교	4,642	6,330	28,484	6,547
중 학 교	1,955	2,518	10,755	2,565
고등학교	1,113	1,932	10,363	2,266
전 공 과	18	34	220	65
계	**8,729**	**12,042**	**54,266**	**12,718**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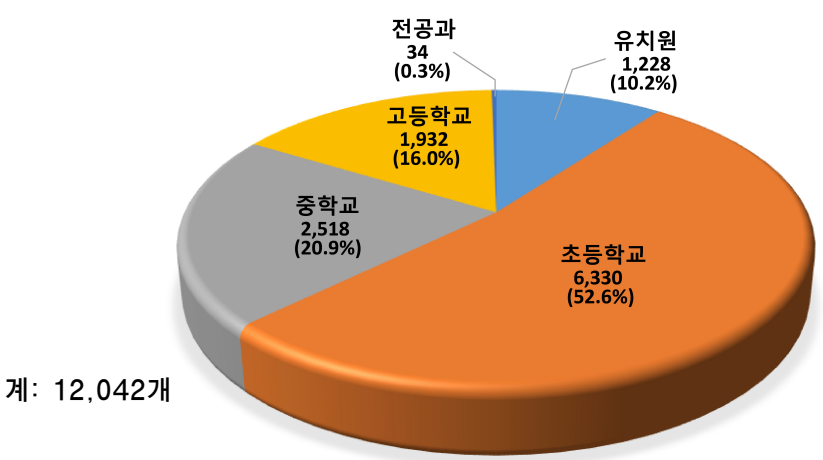

계: 12,042개

〈표 2 · 9〉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 치 원	1,298	1,641	1,826
초등학교	3,506	7,358	7,626
중 학 교	1,821	3,551	3,707
고등학교	1,361	3,222	3,441
계	**7,986**	**15,772**	**16,600**

4 순회교육 현황

〈표 2 · 10〉 순회교육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영아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 · 파견	717	204	38	-	959	169	364	202	224	959	289	294
특수학급에서 순회 · 파견 · 겸임	516	294	15	68	893	61	370	210	252	893	270	284
특수교육 지원센터	330	75	19	2,249	2,673	806	1,035	539	293	2,673	-	1,346*
계	**1,563**	**573**	**72**	**2,317**	**4,525**	**1,036**	**1,769**	**951**	**769**	**4,525**	**559**	**1,924**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등 104명 포함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표 2 · 1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학급 수	배치 인력 현황		
			교사	일반직공무원	기타 (치료사, 보조인력 등)
199	261	59	1,391	38	554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표 2 · 12〉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		취업		비진학 · 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전공과)	진학률 (%)	취업자 수	취업률 (%)	
고등학교	특수학교	2,108	1,235	58.6	61	7.0	812
	특수학급	3,614	1,789	49.5	617	33.8	1,208
	일반학급	1,105	696	63.0	54	13.2	355
	계	6,827	3,720	54.5	732	23.6	2,375
전공과	특수학교	2,378	31	1.3	1,009	43.0	1,338
	특수학급	103	-	-	85	82.5	18
	계	2,481	31	1.2	1,094	44.7	1,356
전체		**9,308**	**3,751**	**40.3**	**1,826**	**32.9**	**3,731**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2021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Ⅲ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33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64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 83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103
5.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 118
6.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20

Ⅲ 2021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

- 2021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1.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체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69,949	399,469	209,772	216,338	895,528	823	5,887	2,783	3,462	12,955	1.2	1.5	1.3	1.6	1.4
부산	38,650	153,917	75,351	75,679	343,597	582	2,979	1,272	1,551	6,384	1.5	1.9	1.7	2.0	1.9
대구	33,870	121,308	62,755	63,074	281,007	399	2,187	1,014	1,519	5,119	1.2	1.8	1.6	2.4	1.8
인천	36,201	154,839	77,764	73,578	342,382	563	3,132	1,346	1,500	6,541	1.6	2.0	1.7	2.0	1.9
광주	22,198	84,987	43,945	43,695	194,825	180	1,385	679	814	3,058	0.8	1.6	1.5	1.9	1.6
대전	22,132	77,727	41,512	41,761	183,132	285	1,305	671	1,012	3,273	1.3	1.7	1.6	2.4	1.8
울산	15,745	66,653	32,758	30,480	145,636	220	1,228	566	725	2,739	1.4	1.8	1.7	2.4	1.9
세종	6,858	30,911	13,910	10,892	62,571	137	353	108	151	749	2.0	1.1	0.8	1.4	1.2
경기	161,356	774,266	381,396	342,828	1,659,846	1,910	10,986	4,731	5,725	23,352	1.2	1.4	1.2	1.7	1.4
강원	13,684	72,377	37,887	38,374	162,322	186	1,300	619	850	2,955	1.4	1.8	1.6	2.2	1.8
충북	15,577	84,259	42,440	40,282	182,558	366	1,814	801	1,263	4,244	2.3	2.2	1.9	3.1	2.3
충남	24,508	118,484	59,440	56,586	259,018	438	2,316	950	1,204	4,908	1.8	2.0	1.6	2.1	1.9
전북	20,021	92,912	49,347	50,532	212,812	342	1,741	798	978	3,859	1.7	1.9	1.6	1.9	1.8
전남	17,316	91,401	47,017	46,879	202,613	208	1,866	851	1,082	4,007	1.2	2.0	1.8	2.3	2.0
경북	33,375	127,911	63,731	64,967	289,984	315	2,294	1,116	1,514	5,239	0.9	1.8	1.8	2.3	1.8
경남	45,066	189,661	94,453	86,700	415,880	456	3,203	1,561	1,819	7,039	1.0	1.7	1.7	2.1	1.7
제주	6,277	41,328	19,991	18,391	85,987	156	838	346	393	1,733	2.5	2.0	1.7	2.1	2.0
계	**582,783**	**2,682,410**	**1,353,469**	**1,301,036**	**5,919,698**	**7,566**	**44,814**	**20,212**	**25,562**	**98,154**	**1.3**	**1.7**	**1.5**	**2.0**	**1.7**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수는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을 포함

※ 연도별 비율: 2013(1.2%), 2014(1.2%), 2015(1.3%), 2016(1.3%), 2017(1.4%), 2018(1.4%), 2019(1.5%), 2020(1.6%), 2021(1.7%)

(2) 특수학교 학생

- 2021년 4월 기준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7,027명으로 2020년의 26,299명에 비해 728명이 증가함

〈표 3 · 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학생 수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 시 · 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설립 분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 · 3〉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 · 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소계
서울	319	263	1,648	907	11	1,123	7	-	-	195	4,473
부산	75	27	878	302	15	469	8	2	2	94	1,872
대구	55	43	959	266	2	329	12	1	-	71	1,738
인천	93	39	970	221	11	398	23	2	-	8	1,765
광주	94	11	532	175	1	209	4	-	-	10	1,036
대전	122	16	527	99	-	269	-	-	-	6	1,039
울산	16	31	473	69	4	161	1	2	-	2	759
세종	1	-	78	29	-	58	-	-	-	9	175
경기	38	34	2,921	607	1	1,449	34	2	-	67	5,153
강원	55	8	508	52	3	154	3	1	-	28	812
충북	139	86	681	164	7	190	5	-	-	14	1,286
충남	5	9	669	176	2	238	9	4	-	17	1,129
전북	50	9	676	140	2	159	21	-	-	28	1,085
전남	51	11	734	113	13	190	2	1	-	7	1,122
경북	-	5	1,002	106	3	280	19	-	5	13	1,433
경남	14	10	870	318	4	421	5	3	-	25	1,670
제주	3	3	230	82	-	150	6	1	-	5	480
계	**1,130**	**605**	**14,356**	**3,826**	**79**	**6,247**	**159**	**19**	**7**	**599**	**27,027**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838명(3.1%), 공립학교 15,740명(58.2%), 사립학교 10,449명(38.7%)임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3 · 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

시 · 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울	457	1,733	2,283	4,473	51.0
부산	-	1,327	545	1,872	29.1
대구	-	985	753	1,738	43.3
인천	-	1,357	408	1,765	23.1
광주	-	786	250	1,036	24.1
대전	-	746	293	1,039	28.2
울산	-	521	238	759	31.4
세종	-	175	-	175	-
경기	381	2,619	2,153	5,153	41.8
강원	-	735	77	812	9.5
충북	-	477	809	1,286	62.9
충남	-	911	218	1,129	19.3
전북	-	647	438	1,085	40.4
전남	-	546	576	1,122	51.3
경북	-	411	1,022	1,433	71.3
경남	-	1,451	219	1,670	13.1
제주	-	313	167	480	34.8
계	**838(3.1)**	**15,740(58.2)**	**10,449(38.7)**	**27,027(100)**	**38.7**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2021년 4월 기준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54,266명으로 2020년의 52,744명에 비해 1,522명이 증가함
  - 최근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비해 381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 · 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학생 수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4,444명, 초등학교 28,484명, 중학교 10,755명, 고등학교 10,583명(전공과 포함)임

〈표 3 · 6〉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421	-	421	12	3,331	-	3,343	13	1,335	4	1,352	24	1,059	159	1,242	49	6,146	163	6,358
부산	-	159	-	159	5	1,610	2	1,617	-	537	-	537	7	498	60	565	12	2,804	62	2,878
대구	-	146	-	146	13	1,039	-	1,052	6	407	-	413	10	461	3	474	29	2,053	3	2,085
인천	-	305	-	305	4	1,875	-	1,879	-	666	6	672	-	533	46	579	4	3,379	52	3,435
광주	-	87	-	87	6	787	-	793	6	270	3	279	13	217	46	276	25	1,361	49	1,435
대전	-	197	-	197	-	843	-	843	-	346	11	357	-	305	47	352	-	1,691	58	1,749
울산	-	144	-	144	-	767	-	767	-	307	-	307	-	244	-	244	-	1,462	-	1,462
세종	-	120	-	120	-	223	-	223	-	72	-	72	-	64	-	64	-	479	-	479
경기	-	1,370	7	1,377	-	7,438	16	7,454	-	2,758	113	2,871	-	2,994	140	3,134	-	14,560	276	14,836
강원	5	126	-	131	6	934	-	940	-	323	-	323	8	285	-	293	19	1,668	-	1,687
충북	3	250	-	253	9	1,106	-	1,115	9	395	3	407	23	452	17	492	44	2,203	20	2,267
충남	3	330	-	333	5	1,704	-	1,709	6	616	26	648	4	588	14	606	18	3,238	40	3,296
전북	-	181	-	181	8	1,071	-	1,079	-	367	16	383	3	299	23	325	11	1,918	39	1,968
전남	-	155	-	155	4	1,445	-	1,449	-	514	12	526	-	436	27	463	4	2,550	39	2,593
경북	-	110	-	110	3	1,515	12	1,530	-	497	70	567	-	402	166	568	3	2,524	248	2,775
경남	-	272	-	272	3	2,213	12	2,228	2	802	88	892	7	623	119	749	12	3,910	219	4,141
제주	-	53	-	53	4	459	-	463	7	142	-	149	17	123	17	157	28	777	17	822
계	**11**	**4,426**	**7**	**4,444**	**82**	**28,360**	**42**	**28,484**	**49**	**10,354**	**352**	**10,755**	**116**	**9,583**	**884**	**10,583**	**258**	**52,723**	**1,285**	**54,266**

*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20명(대구 22명, 인천 15명, 경기 149명, 충북 34명) 포함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2021년 4월 기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6,600명으로 2020년의 16,061명에 비해 539명이 증가함

〈표 3 · 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학생 수	12,006	13,746	15,930	15,648	15,622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16,600**

-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유치원 1,826명, 초등학교 7,626명, 중학교 3,707명, 고등학교 3,441명임

〈표 3 · 8〉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22	63	85	1	947	22	970	4	373	99	476	7	268	249	524	12	1,610	433	2,055
부산	-	79	204	283	3	709	-	712	-	269	47	316	8	239	76	323	11	1,296	327	1,634
대구	-	66	156	222	1	540	5	546	9	218	38	265	11	167	74	252	21	991	273	1,285
인천	-	65	148	213	3	609	3	615	-	286	14	300	-	191	19	210	3	1,151	184	1,338
광주	-	12	46	58	2	266	-	268	2	117	28	147	6	74	34	114	10	469	108	587
대전	-	27	20	47	-	194	2	196	-	117	8	125	-	73	38	111	-	411	68	479
울산	-	30	27	57	-	258	-	258	-	107	4	111	-	77	10	87	-	472	41	513
세종	-	7	-	7	-	58	-	58	-	14	-	14	-	16	-	16	-	95	-	95
경기	-	114	97	211	-	1,641	22	1,663	-	654	64	718	-	587	108	695	-	2,996	291	3,287
강원	-	30	8	38	1	169	-	170	-	109	15	124	6	94	18	118	7	402	41	450
충북	-	48	13	61	2	289	2	293	3	146	12	161	5	141	24	170	10	624	51	685
충남	-	38	26	64	1	263	-	264	-	59	22	81	-	62	10	72	1	422	58	481
전북	-	47	55	102	1	372	-	373	-	155	27	182	1	96	52	149	2	670	134	806
전남	-	27	8	35	-	118	2	120	-	60	16	76	-	45	15	60	-	250	41	291
경북	-	65	94	159	-	421	6	427	-	189	54	243	-	113	71	184	-	788	225	1,013
경남	-	78	64	142	1	483	8	492	2	229	57	288	4	199	89	292	7	989	218	1,214
제주	-	19	23	42	2	199	-	201	5	65	10	80	4	39	21	64	11	322	54	387
계	**-**	**774**	**1,052**	**1,826**	**18**	**7,536**	**72**	**7,626**	**25**	**3,167**	**515**	**3,707**	**52**	**2,481**	**908**	**3,441**	**95**	**13,958**	**2,547**	**16,600**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021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59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261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5명, 1세 73명, 2세 183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178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83명임

〈표 3 · 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학급, 명)

시·도	센터설치 장애영아 학급 수	연령별 지원영아 수				교육유형별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교육 영아 수	계
서울	11	1	18	50	69	69	-	69
부산	-	-	-	-	-	-	-	-
대구	6	-	5	6	11	11	-	11
인천	1	-	1	2	3	3	-	3
광주	-	-	-	-	-	-	-	-
대전	4	-	1	5	6	5	1	6
울산	-	-	3	2	5	-	5	5
세종	-	-	-	-	-	-	-	-
경기	22	2	19	55	76	22	54	76
강원	1	-	1	5	6	1	5	6
충북	2	-	3	3	6	2	4	6
충남	-	-	1	1	2	1	1	2
전북	-	-	-	-	-	-	-	-
전남	-	-	-	1	1	-	1	1
경북	7	2	9	7	18	16	2	18
경남	3	-	4	10	14	4	10	14
제주	2	-	8	36	44	44	-	44
계	**59**	**5**	**73**	**183**	**261**	**178**	**83**	**261**

2)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87개교로 2020년 대비 5개교 증가하였음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학교 수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 전국 187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개교, 공립 92개교, 사립 90개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48.1%임
- 전국 187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개교, 청각장애학교 14개교, 지적장애학교 132개교, 지체장애학교 21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0.6%임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3	80	6	1	92
사립	10	10	51	14	5	90
계	**13**	**14**	**132**	**21**	**7**	**187**

※ 장애영역별 구분은 주 장애영역을 말함

- 전국 187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에 38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32교, 부산 15교 등의 순임

〈표 3 · 1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 · 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4	16	6	3	32
부산	1	1	12	1	-	15
대구	1	1	5	2	1	10
인천	1	1	7	1	-	10
광주	1	-	3	1	-	5
대전	1	-	4	1	-	6
울산	-	1	3	-	-	4
세종	-	-	1	-	-	1
경기	-	2	32	3	1	38
강원	1	1	6	-	-	8
충북	2	1	4	2	1	10
충남	-	-	8	1	-	9
전북	1	1	6	2	-	10
전남	1	1	6	-	-	8
경북	-	-	7	-	1	8
경남	-	-	10	-	-	10
제주	-	-	2	1	-	3
계	**13**	**14**	**132**	**21**	**7**	**187**

-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그 외 시・도교육청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11	18	32
부산	-	8	7	15
대구	-	4	6	10
인천	-	6	4	10
광주	-	3	2	5
대전	-	4	2	6
울산	-	2	2	4
세종	-	1	-	1
경기	2	14	22	38
강원	-	7	1	8
충북	-	3	7	10
충남	-	7	2	9
전북	-	6	4	10
전남	-	3	5	8
경북	-	3	5	8
경남	-	8	2	10
제주	-	2	1	3
계	**5**	**92**	**90**	**187**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예술・체육 및 직업교육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 지원

(2) 특수학급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 4월 기준 전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12,042학급으로 2020년보다 381개 학급이 증가함

〈표 3·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학급 수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1,228학급, 초등학교 6,330학급, 중학교 2,518학급, 고등학교 1,966학급(전공과 포함)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52.6%를 차지함
-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6학급, 공립 11,725학급, 사립 271학급으로 총 12,042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7.7%를 차지함

〈표 3·15〉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126	-	126	2	772	-	774	2	299	1	302	3	233	30	266	7	1,430	31	1,468
부산	-	42	-	42	1	340	1	342	-	124	-	124	1	80	11	92	2	586	12	600
대구	-	38	-	38	2	254	-	256	1	93	-	94	1	74	2	77	4	459	2	465
인천	-	87	-	87	1	383	-	384	-	134	1	135	-	104	7	111	1	708	8	717
광주	-	21	-	21	1	165	-	166	1	62	1	64	2	39	9	50	4	287	10	301
대전	-	54	-	54	-	178	-	178	-	84	2	86	-	51	9	60	-	367	11	378
울산	-	37	-	37	-	156	-	156	-	64	-	64	-	47	-	47	-	304	-	304
세종	-	32	-	32	-	58	-	58	-	25	-	25	-	14	-	14	-	129	-	129
경기	-	394	2	396	-	1,575	3	1,578	-	645	35	680	-	548	22	570	-	3,162	62	3,224
강원	1	30	-	31	1	218	-	219	-	80	-	80	1	57	-	58	3	385	-	388
충북	1	63	-	64	2	259	-	261	2	99	1	102	3	76	3	82	8	497	4	509
충남	1	83	-	84	1	387	-	388	1	143	6	150	1	111	4	116	4	724	10	738
전북	-	51	-	51	2	257	-	259	-	84	5	89	1	58	4	63	3	450	9	462
전남	-	47	-	47	1	352	-	353	-	132	3	135	-	87	4	91	1	618	7	626
경북	-	31	-	31	1	383	2	386	-	126	23	149	-	81	29	110	1	621	54	676
경남	-	75	-	75	1	489	2	492	1	183	24	208	1	113	23	137	3	860	49	912
제주	-	12	-	12	1	79	-	80	2	29	-	31	2	18	2	22	5	138	2	145
계	**3**	**1,223**	**2**	**1,228**	**17**	**6,305**	**8**	**6,330**	**10**	**2,406**	**102**	**2,518**	**16**	**1,791**	**159**	**1,966**	**46**	**11,725**	**271**	**12,042**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4학급(대구 2학급, 인천 2학급, 경기 26학급, 충북 4학급) 포함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1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4명, 초등학교 4.5명, 중학교 4.6명, 고등학교 5.7명임

〈표 3·16〉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4	5.3	5.2	5.5	3.3	4.3	4.5	4.7	3.4	4.8	4.8	5.1
부산	3.3	5.1	5.2	6.1	3.8	4.7	4.3	5.5	3.5	4.9	4.8	5.8
대구	3.3	5.0	4.8	6.9	3.8	4.1	4.4	6.1	3.6	4.6	4.6	6.5
인천	3.8	4.9	5.1	6.5	3.5	4.9	5.0	5.0	3.7	4.9	5.1	5.8
광주	2.7	4.6	4.8	6.3	4.1	4.8	4.4	5.5	3.4	4.7	4.6	5.9
대전	2.3	4.9	5.1	6.9	3.6	4.7	4.2	5.5	3.0	4.8	4.6	6.2
울산	3.5	4.0	4.5	6.4	3.9	4.9	4.8	5.2	3.7	4.4	4.6	5.8
세종	3.3	4.5	5.5	6.5	3.8	3.8	2.9	1.0	3.5	4.2	4.2	3.7
경기	3.3	5.7	5.6	6.0	3.5	4.7	4.2	5.5	3.4	5.2	4.9	5.8
강원	1.8	3.3	4.2	5.9	4.2	4.3	4.0	4.7	3.0	3.8	4.1	5.3
충북	2.4	3.9	4.5	6.4	4.0	4.3	4.0	5.9	3.2	4.1	4.2	6.2
충남	3.5	4.4	4.6	5.9	4.0	4.4	4.3	5.1	3.8	4.4	4.5	5.5
전북	3.3	4.4	4.9	6.0	3.5	4.2	4.3	5.2	3.4	4.3	4.6	5.6
전남	2.8	4.7	5.5	7.3	3.3	4.1	3.9	5.0	3.1	4.4	4.7	6.1
경북	2.8	4.3	5.2	7.4	3.5	4.0	3.8	5.2	3.2	4.1	4.5	6.3
경남	2.8	4.1	4.8	6.1	3.6	4.5	4.3	5.3	3.2	4.3	4.5	5.7
제주	4.3	4.2	4.5	4.8	4.4	5.8	4.8	6.5	4.3	5.0	4.7	5.7
평균	**3.1**	**4.6**	**4.9**	**6.3**	**3.8**	**4.5**	**4.2**	**5.1**	**3.4**	**4.5**	**4.6**	**5.7**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향후 과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추진

3)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 4월 기준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35개교 288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개교 62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1,001개교 1,228학급으로 총 1,136개교 1,516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 · 17〉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교 수	135	10	1,001	**1,136**
학급 수	288	62	1,228	**1,516**

- 2021년 4월 기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927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243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4,444명, 유치원 일반학급에 1,826명으로 총 7,197명임

〈표 3 · 18〉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생 수	927	243	4,444	1,826	**7,197**

- 2021년 현재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비 지원은 공립유치원 5,200명, 사립유치원 1,059명으로 총 6,259명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 1인 월 교육비 최고지원액 평균은 공립유치원 155.2천 원, 사립유치원 418.6천 원임

〈표 3 · 19〉 공 · 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시 · 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서울	443	216	63	494
부산	238	130	204	381
대구	212	130	156	381
인천	370	110	148	361
광주	99	130	46	400
대전	224	130	20	381
울산	174	160	27	430
세종	127	290	-	-
경기	1,484	162	104	400
강원	156	160	8	401
충북	298	110	13	437
충남	368	130	26	488
전북	228	130	55	361
전남	182	230	8	480
경북	175	130	94	401
경남	350	160	64	471
제주	72	130	23	430
계	**5,200**	**155.2**	**1,059**	**418.6**

-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표 3 · 20〉 유치원 및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교육부('21.4.1.기준)				보건복지부('20.12.31.기준)				합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소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135	1,001	1,298	2,434	163	885	779	1,797	**4,231**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강화
- 유아단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일반 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4)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은 2021년 4월 기준 특수학교 39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59학급, 총 98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108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261명으로 총 369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10명, 1세 93명, 2세 266명으로 총 369명임

〈표 3 · 2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학급)

시·도	연령별 지원영아 수				배치기관별 지원영아 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합 계	
								지원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지원 영아 수	계	영아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서울	3	25	72	100	10	31	11	69	-	69	21	100
부산	-	5	21	26	11	26	-	-	-	-	11	26
대구	-	5	6	11	-	-	6	11	-	11	6	11
인천	-	1	4	5	1	2	1	3	-	3	2	5
광주	1	2	8	11	3	11	-	-	-	-	3	11
대전	-	4	8	12	2	6	4	5	1	6	6	12
울산	-	3	2	5	-	-	-	-	5	5	-	5
세종	-	-	2	2	1	2	-	-	-	-	1	2
경기	3	21	66	90	5	14	22	22	54	76	27	90
강원	-	1	5	6	-	-	1	1	5	6	1	6
충북	1	3	9	13	3	7	2	2	4	6	5	13
충남	-	2	4	6	1	4	-	1	1	2	1	6
전북	-	-	3	3	2	3	-	-	-	-	2	3
전남	-	-	2	2	-	1	-	-	1	1	-	2
경북	2	9	8	19	-	1	7	16	2	18	7	19
경남	-	4	10	14	-	-	3	4	10	14	3	14
제주	-	8	36	44	-	-	2	44	-	44	2	44
계	**10**	**93**	**266**	**369**	**39**	**108**	**59**	**178**	**83**	**261**	**98**	**369**

향후 과제

- 영 · 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관) 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장애영아 조기 중재를 위한 무상교육 홍보 및 지원 강화

5)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또는 일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됨

● 2021년 기준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7개교이고, 승인 인원은 1,507명임

〈표 3 · 22〉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18	18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남대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창원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국교원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9	9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계	**7**		**9**	**181**	**181**	
사립	가야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1	3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건양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경주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학과	7	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광주여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미술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극동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학과	14	1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학과	14	1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남부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국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과학대	직업재활학과	38	3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한의대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대전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상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백석대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신라대	체육계열	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15	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유원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용인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31	3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원광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7	2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부대	사범계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국국제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계	**30**		**47**	**1,379**	**1,326**	
총계	**37**		**56**	**1,560**	**1,507**	

- 2021년 기준 18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26개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23〉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 년도	수업 형태	'21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1986	계절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999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7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부산대	2001	야간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1999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9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서울대	1999	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창원대	1997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2013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1997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 계	**6**			**10**	
사립	광운대	2014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단국대	1998	야간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1984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 년도	수업 형태	'21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순천향대	1999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2011	야간	특수체육교육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아주대	2001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영남대	1999	계절·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용인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우석대	1986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996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이화여대	1993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인제대	1998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2000	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1999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사립 계	**12**			**16**	
총계	**18**			**26**	

- 2021년 기준 10개의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24〉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현황

(단위: 명)

교육대학명	형태	수업형태	'21학년도 입학정원	'21학년도 운영전공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총정원제 운영	초등특수교육
부산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총정원제 운영	
대구교육대학교		계절 · 야간	총정원제 운영	초등특수교육 및 뇌기반 특수체육
경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계절 · 야간	총정원제 운영	특수교육
광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총정원제 운영	초등특수교육
춘천교육대학교		계절 · 야간		
청주교육대학교		계절	총정원제 운영	초등특수교육 및 학습행동전문가
공주교육대학교		주간 · 계절	총정원제 운영	글로벌 특수교육 · 학습장애
전주교육대학교		야간		초등특수교육
진주교육대학교		야간		

향후 과제

- 특수교육 현장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 미래사회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특수교사 양성 및 지원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강화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산하기관인 시・도 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 특수교사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사 자격연수(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가 99.5%, 특수학급이 99.2%, 전체 99.4%로 나타남

〈표 3 · 25〉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단위: 명, %)

시 · 도	특수학교 (센터 포함)				특수학급				합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서울	1,598	1,587	11	99.3	1,488	1,487	1	99.9	3,086	3,074	12	99.6
부산	696	687	9	98.7	625	618	7	98.9	1,321	1,305	16	98.8
대구	675	671	4	99.4	539	511	28	94.8	1,214	1,182	32	97.4
인천	618	618	-	100.0	756	755	1	99.9	1,374	1,373	1	99.9
광주	399	397	2	99.5	316	316	-	100.0	715	713	2	99.7
대전	384	383	1	99.7	409	409	-	100.0	793	792	1	99.9
울산	284	284	-	100.0	313	313	-	100.0	597	597	-	100.0
세종	62	61	1	98.4	129	127	2	98.4	191	188	3	98.4
경기	2,115	2,111	4	99.8	3,615	3,599	16	99.6	5,730	5,710	20	99.7
강원	375	371	4	98.9	406	388	18	95.6	781	759	22	97.2
충북	535	532	3	99.4	515	511	4	99.2	1,050	1,043	7	99.3
충남	465	462	3	99.4	761	753	8	98.9	1,226	1,215	11	99.1
전북	456	456	-	100.0	462	457	5	98.9	918	913	5	99.5
전남	405	404	1	99.8	628	627	1	99.8	1,033	1,031	2	99.8
경북	474	471	3	99.4	676	670	6	99.1	1,150	1,141	9	99.2
경남	710	709	1	99.9	925	923	2	99.8	1,635	1,632	3	99.8
제주	186	185	1	99.5	155	155	-	100.0	341	340	1	99.7
총계	**10,437**	**10,389**	**48**	**99.5**	**12,718**	**12,619**	**99**	**99.2**	**23,155**	**23,008**	**147**	**99.4**

* 특수학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제외

- 2021년 현재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850개이며 11,734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표 3 · 26〉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천원)

시·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 수	지원 예산
서울	29	536	30,866
부산	87	722	65,930
대구	52	720	29,618
인천	82	1,016	79,060
광주	85	982	42,074
대전	61	790	30,896
울산	38	302	16,450
세종	5	180	6,800
경기	5	204	10,000
강원	68	798	78,893
충북	16	254	18,000
충남	101	1,764	89,200
전북	29	250	31,000
전남	37	702	77,000
경북	44	705	38,400
경남	101	1,496	108,400
제주	10	313	15,982
계	**850**	**11,734**	**768,569**

향후 과제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기회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과 연수 제공 확대
- 특수교육교원 연수과정의 질 제고 및 참여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다양화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관련 법규

- 각급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현황 및 추진실적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2020년 9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 학교는 총 12,174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2.7%임

〈표 3·27〉 전국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단위: 교, %)

시·도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1,361	95.2	98.5	93.5	88.4	71.2	83.8	91.8	96.5	73.9	64.1	69.2	84.2
부산	634	97.5	99.4	97.2	95.7	91.8	94.2	92.7	98.9	98.3	97.3	95.1	96.2
대구	460	100.0	99.8	99.8	99.8	98.7	97.8	97.6	99.3	98.7	95.2	96.7	98.5
인천	536	97.0	96.3	97.0	96.5	88.6	93.5	88.1	97.8	90.5	71.8	75.6	90.2
광주	323	96.6	99.4	97.5	92.9	82.0	84.2	94.1	98.8	95.0	96.6	79.9	92.5
대전	309	99.4	100.0	99.0	98.4	88.7	93.5	96.8	99.0	98.1	95.8	87.7	96.0
울산	248	96.8	100.0	97.6	96.8	97.6	94.4	94.0	100.0	100.0	99.2	96.0	97.5
세종	94	97.9	98.9	97.9	95.7	90.4	96.8	94.7	100.0	100.0	97.9	91.5	96.5
경기	2,493	97.5	98.5	97.6	95.1	89.9	91.3	92.1	98.1	94.5	92.3	89.5	94.2
강원	667	97.3	97.0	97.2	95.2	92.2	80.2	79.2	94.6	94.8	91.9	88.8	91.7
충북	494	98.0	98.0	97.4	96.4	95.5	88.3	92.1	98.2	95.1	89.3	87.2	94.1
충남	737	97.2	98.1	96.3	94.0	84.4	80.5	91.3	97.8	94.7	93.9	80.7	91.7
전북	777	96.3	98.1	95.9	92.4	85.5	74.4	95.9	96.9	96.1	96.5	91.0	92.6
전남	871	93.8	96.2	94.4	93.7	92.8	65.3	92.8	94.8	94.3	92.8	84.8	90.5
경북	978	96.0	97.5	96.4	93.6	95.2	88.2	94.5	95.3	94.9	94.4	89.6	94.1
경남	996	98.0	98.2	96.5	95.0	97.1	83.3	96.2	98.0	97.0	94.9	92.4	95.1
제주	196	99.5	99.0	99.5	100.0	96.4	99.0	96.4	99.5	99.0	93.9	98.5	98.2
계	**12,174**	**96.9**	**98.2**	**96.6**	**94.3**	**89.2**	**85.8**	**92.5**	**97.4**	**93.1**	**89.7**	**86.5**	**92.7**

※ 단순 설치율 현황

–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4.0%, 사립 학교는 85.5%의 평균 설치율을 보임

〈표 3 · 28〉 국 ·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국·공립	10,381	97.9	98.5	97.6	95.4	91.6	89.0	93.3	97.9	94.3	90.8	87.7	94.0
사립	1,793	91.4	96.4	90.8	88.1	75.0	67.7	87.7	94.0	86.3	83.1	79.5	85.5
계	**12,174**	**96.9**	**98.2**	**96.6**	**94.3**	**89.2**	**85.8**	**92.5**	**97.4**	**93.1**	**89.7**	**86.5**	**92.7**

–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93.4%, 중학교 92.4%, 고등학교 91.5%, 특수학교 99.0%, 각종 학교 79.0%의 평균 설치율을 보임

〈표 3 · 29〉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초등학교	6,287	97.3	97.7	96.9	94.9	91.6	87.2	93.7	97.2	93.6	90.1	87.0	93.4
중학교	3,242	96.9	98.9	96.9	94.4	87.5	84.3	91.6	97.9	93.0	89.4	85.5	92.4
고등학교	2,389	95.9	98.8	95.6	92.7	84.7	83.8	90.5	97.1	92.0	88.8	86.2	91.5
특수학교	182	99.5	97.8	100.0	100.0	100.0	97.8	98.9	99.5	96.7	98.9	99.5	99.0
각종학교	74	90.5	87.8	83.8	83.8	75.7	70.3	74.3	87.8	79.7	67.6	67.6	79.0
계	**12,174**	**96.9**	**98.2**	**96.6**	**94.3**	**89.2**	**85.8**	**92.5**	**97.4**	**93.1**	**89.7**	**86.5**	**92.7**

–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평균 95.7%, 미설치 학교는 평균 87.5%의 설치율을 보임

〈표 3 · 30〉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7,809	98.9	99.3	98.8	96.9	93.5	93.6	94.5	99.3	95.9	92.2	89.6	95.7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4,365	93.4	96.2	92.7	89.8	81.4	71.8	88.8	93.9	88.1	85.1	81.1	87.5
계	**12,174**	**96.9**	**98.2**	**96.6**	**94.3**	**89.2**	**85.8**	**92.5**	**97.4**	**93.1**	**89.7**	**86.5**	**92.7**

- 2020년 9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82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9.0%임

〈표 3 · 31〉 특수학교 시 · 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20)

(단위: 교, %)

시·도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32	100.0	93.8	100.0	100.0	100.0	96.9	96.9	96.9	93.8	96.9	100.0	97.7
부산	15	100.0	100.0	100.0	100.0	100.0	93.3	100.0	100.0	100.0	100.0	100.0	99.4
대구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천	10	9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1
광주	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	100.0	100.0	98.2
대전	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종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36	100.0	94.4	100.0	100.0	100.0	97.2	97.2	100.0	94.4	100.0	100.0	98.5
강원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7.5	87.5	87.5	96.6
충북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충남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북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남	8	100.0	100.0	100.0	100.0	100.0	87.5	100.0	100.0	100.0	100.0	100.0	98.9
경북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남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주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82**	**99.5**	**97.8**	**100.0**	**100.0**	**100.0**	**97.8**	**98.9**	**99.5**	**96.7**	**98.9**	**99.5**	**99.0**

※ 단순 설치율 현황

향후 과제

- 특수 ·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 · 관리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기준 유치원 648명, 초등학교 766명, 중학교 384명, 고등학교 156명 총 1,954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음

〈표 3 · 3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47	23	21	17	108
부산	89	17	15	3	124
대구	32	36	12	4	84
인천	-	1	3	2	6
광주	22	12	7	-	41
대전	14	2	-	-	16
울산	34	45	9	6	94
세종	1	1	-	1	3
경기	72	97	33	7	209
강원	17	46	33	9	105
충북	39	40	17	16	112
충남	44	71	22	5	142
전북	36	73	44	11	164
전남	32	66	41	20	159
경북	44	78	59	27	208
경남	96	109	62	23	290
제주	29	49	6	5	89
계	**648**	**766**	**384**	**156**	**1,954**

■ 향후 과제

-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교수 모형을 발굴・확산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유도
-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 교사 52,746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 및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을 위해 '정다운학교' 11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3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표 3·33〉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1~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계
서울	4,560	409	1,777	201	6,947
부산	58	523	450	1,381	2,412
대구	-	632	1,140	1,052	2,824
인천	958	737	479	1,582	3,756
광주	469	351	353	534	1,707
대전	8	63	137	1,420	1,628
울산	323	250	692	347	1,612
세종	139	60	104	135	438
경기	9,481	1,066	1,892	1,983	14,422
강원	186	200	205	163	754
충북	474	174	259	716	1,623
충남	1,921	181	511	326	2,939
전북	913	316	589	346	2,164
전남	318	266	557	246	1,387
경북	744	651	601	1,076	3,072
경남	1,187	1,000	761	1,530	4,478
제주	-	162	238	183	583
계	**21,739**	**7,041**	**10,745**	**13,221**	**52,746**

※ 2020학년도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표 3 · 34〉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정다운학교 운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	4	3	2	9
부산	-	2(1)	1(1)	-	3(2)
대구	3(1)	12(2)	5	2	22(3)
인천	2	2	1(1)	1	6(1)
광주	-	-	-	-	-
대전	1	2	1	-	4
울산	-	1(1)	-	-	1(1)
세종	-	2	2	2	6
경기	9	8	7	7	31
강원	-	5(1)	-	-	5(1)
충북	-	3	1	1	5
충남	1(1)	2(1)	-	1	4(2)
전북	1	4	2	-	7
전남	1	2(1)	-	-	3(1)
경북	1	2(1)	1	-	4(1)
경남	-	1(1)	-	-	1(1)
제주	1	2	-	-	3
계	**20(2)**	**54(9)**	**24(2)**	**16**	**114(13)**

※ 괄호 안의 학교 수는 연구학교 수임

향후 과제

- 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및 통합교육 지원 전문 인력 확대
- 정다운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장애 · 비장애학생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도 4월 기준, 전국에 199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은 1,391명의 교사, 일반직 38명, 치료사와 보조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 554명으로 모두 1,983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은 약 1,393억 원임

〈표 3 · 3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센터수	교사			일반직			기타 (전체 계약직임)				전체	연간 지원 예산 (총액)
		정규	계약	계	정규	계약	계	치료사	사회복무요원	기타	계		
서울	13	108	5	113	1	-	1	-	-	40	40	154	13,469
부산	6	55	10	65	8	-	8	-	2	4	6	79	7,248
대구	5	71	10	81	3	-	3	-	11	1	12	96	7,600
인천	6	91	3	94	-	-	-	5	-	2	7	101	6,143
광주	3	38	6	44	1	1	2	-	3	9	12	58	4,469
대전	5	42	-	42	6	-	6	3	1	3	7	55	5,860
울산	3	38	-	38	2	-	2	39	1	5	45	85	3,658
세종	1	10	-	10	1	-	1	6	-	4	10	21	3,031
경기	27	288	2	290	1	-	1	48	2	55	105	396	19,637
강원	18	39	11	50	1	-	1	33	9	3	45	96	5,174
충북	11	88	-	88	5	1	6	13	1	10	24	118	11,407
충남	15	75	-	75	3	-	3	40	1	22	63	141	13,928
전북	15	87	-	87	3	-	3	5	-	30	35	125	9,319
전남	23	60	21	81	-	-	-	25	-	2	27	108	7,053
경북	24	44	27	71	-	-	-	10	-	16	26	97	5,716
경남	21	126	6	132	1	-	1	74	3	7	84	217	13,626
제주	3	24	6	30	-	-	-	6	-	-	6	36	2,005
계	**199**	**1,284**	**107**	**1,391**	**36**	**2**	**38**	**307**	**34**	**213**	**554**	**1,983**	**139,343**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160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48개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 36〉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시·도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지원단 수	구성인원 수	센터 수	거점 영역
서울	11	113	5	지체중복(1), 시각(2), 청각(2)
부산	6	51	4	지체(1), 발달(1), 시각(1), 청각(1)
대구	5	73	3	시각(1), 청각(1), 정서(1)
인천	6	97	3	청각(1), 자폐성(1), 시각(1)
광주	3	30	1	시·청각(1)
대전	3	18	1	시·청각(1)
울산	3	25	2	시각(1), 청각 (1)
세종	1	7	-	-
경기	26	221	5	시각(1), 지체중복(1), 청각(1), 시·청각(1), 건강(1)
강원	18	66	2	시각(1), 청각(1)
충북	5	49	3	시각(2), 청각(1)
충남	5	33	1	시·청각(1)
전북	2	73	4	청각(1), 지체(1), 자폐성(1), 시각(1)
전남	22	94	3	시·청각(3)
경북	23	96	4	시·청각(4)
경남	19	90	5	시·청각·지체(3), 자폐성(1), 시·청각·자폐성(1)
제주	2	25	2	시·청각(2)
계	**160**	**1,161**	**48**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담당 교육전문직, 교사, 행정직원 및 상담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4)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 4월 기준 특수학교 289개 순회·파견학급에서 294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959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717명, 시설 204명, 병원 38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69명, 초등학교 364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224명임

〈표 3·37〉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717	204	38	-	959	169	364	202	224	959	289	294

- 2021년 4월 기준 일반학교 특수학급 270개의 순회·파견학급에서 284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893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516명, 시설 294명, 병원 15명, 일반학교 68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 61명, 초등학교 370명, 중학교 210명, 고등학교 252명임

〈표 3 · 38〉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 · 파견 · 겸임	516	294	15	68	893	61	370	210	252	893	270	284

- 2021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346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총 2,673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330명, 시설 75명, 병원 19명, 일반학교 2,249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806명, 초등학교 1,035명, 중학교 539명, 고등학교 293명임

〈표 3 · 39〉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교육지원센터	330	75	19	2,249	2,673	806	1,035	539	293	2,673	1,346*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등 104명 포함

향후 과제

- 가정 · 병원 ·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전담인력 확대 및 역량강화 연수 등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인력,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 현재 52,019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40〉 치료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예산
서울	8,989	12,097,480
부산	3,735	5,362,560
대구	5,098	5,602,320
인천	4,513	6,659,295
광주	2,452	3,319,560
대전	1,538	2,079,501
울산	1,209	3,005,009
세종	609	957,040
경기	3,003	5,444,178
강원	2,334	3,817,200
충북	3,140	4,781,706
충남	2,970	3,573,785
전북	3,659	4,433,364
전남	1,526	5,437,308
경북	3,960	7,781,217
경남	2,109	5,880,365
제주	1,175	1,668,428
계	**52,019**	**81,900,316**

-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2021년 4월 기준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과 사회복무요원 총 12,977명이 배치됨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8,600명으로 특수학교 2,803명, 특수학급 5,681명, 일반학급에 116명이 배치됨
- 사회복무요원은 4,377명으로 특수학교 1,653명, 특수학급 2,644명, 일반학급에 80명이 배치됨

〈표 3・41〉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급				사회복무	소계	유급				사회복무	소계	유급				사회복무	소계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서울	370	3	-	373	445	818	798	63	-	861	479	1,340	3	-	-	3	6	9	2,167
부산	308	-	-	308	59	367	301	17	-	318	53	371	4	2	-	6	1	7	745
대구	235	-	-	235	58	293	307	-	-	307	122	429	3	-	-	3	6	9	731
인천	221	-	-	221	22	243	433	5	8	446	25	471	-	-	-	-	-	-	714
광주	82	-	-	82	59	141	160	13	-	173	90	263	-	1	-	1	-	1	405
대전	182	-	-	182	63	245	319	3	-	322	119	441	-	-	-	-	-	-	686
울산	121	-	-	121	95	216	200	-	-	200	145	345	1	-	-	1	1	2	563
세종	33	-	-	33	4	37	88	-	-	88	7	95	-	-	-	-	-	-	132
경기	286	-	-	286	342	628	873	-	1	874	948	1,822	1	-	-	1	6	7	2,457
강원	60	-	-	60	55	115	233	-	-	233	5	238	24	-	-	24	-	24	377
충북	167	-	-	167	25	192	226	-	-	226	40	266	2	-	-	2	2	4	462
충남	132	-	11	143	30	173	389	-	-	389	42	431	5	-	-	5	3	8	612
전북	140	-	-	140	21	161	247	-	-	247	60	307	6	-	-	6	4	10	478
전남	65	-	-	65	96	161	200	3	-	203	135	338	23	1	-	24	3	27	526
경북	128	-	-	128	158	286	333	-	-	333	173	506	28	-	-	28	39	67	859
경남	195	-	-	195	92	287	360	-	-	360	164	524	6	-	-	6	6	12	823
제주	64	-	-	64	29	93	101	-	-	101	37	138	6	-	-	6	3	9	240
계	**2,789**	**3**	**11**	**2,803**	**1,653**	**4,456**	**5,568**	**104**	**9**	**5,681**	**2,644**	**8,325**	**112**	**4**	**-**	**116**	**80**	**196**	**12,977**

- 교통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7,288명 중 통학버스 이용 학생 15,896명을 제외한 11,39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포함하여 11,31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70,866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3,242명을 제외한 67,624명 중 30,261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359억 원임

〈표 3 · 42〉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서울	4,542	2,281	71	447	502	507	8,413	-	-	-	1,177	807
부산	1,872	1,209	-	321	392	173	4,512	-	-	727	512	305
대구	1,749	842	-	440	665	1,971	3,370	4	-	305	824	434
인천	1,768	992	13	128	366	2,350	4,773	175	92	43	686	570
광주	1,036	655	1	159	247	271	2,022	41	91	207	504	583
대전	1,045	613	23	71	154	1,061	2,228	-	125	137	424	499
울산	764	494	7	117	256	204	1,975	-	104	328	505	432
세종	175	100	8	26	24	91	574	44	24	12	46	44
경기	5,229	2,832	164	1,247	2,026	7,424	18,123	-	1,829	4,746	4,913	4,043
강원	818	562	3	81	118	230	2,137	236	114	850	663	864
충북	1,292	831	20	267	456	1,601	2,952	278	155	834	930	901
충남	1,131	889	21	67	52	2,522	3,777	595	161	191	668	400
전북	1,085	832	2	38	80	125	2,774	553	46	432	634	398
전남	1,123	712	2	75	228	879	2,884	393	88	530	945	986
경북	1,451	812	17	191	344	730	3,788	366	122	838	1,057	1,152
경남	1,684	977	16	394	764	1,162	5,355	535	166	725	991	1,195
제주	524	263	12	102	87	269	1,209	22	54	490	216	714
계	**27,288**	**15,896**	**380**	**4,171**	**6,761**	**21,570**	**70,866**	**3,242**	**3,171**	**11,395**	**15,695**	**14,327**

- 2021년 6월 기준 전국 187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780대를 운영하며, 특수학교 재학생 26,068명(순회교육 지원학생 959명 제외) 중 15,896명(61.0%)의 학생을 통학 지원하고 있음

〈표 3 · 43〉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단위: 명, 대, %)

시·도	학생 수			통학버스 수	이용학생 수	이용비율
	전체 학생 수(A)	순회교육 학생 수(B)	계(A-B)			
서울	4,473	220	4,253	110	2,281	53.6
부산	1,872	59	1,813	53	1,209	66.7
대구	1,738	68	1,670	45	842	50.4
인천	1,765	101	1,664	41	992	59.6
광주	1,036	54	982	37	655	66.7
대전	1,039	17	1,022	29	613	60.0
울산	759	60	699	26	494	70.7
세종	175	4	171	5	100	58.5
경기	5,153	43	5,110	148	2,832	55.4
강원	812	12	800	31	562	70.3
충북	1,286	76	1,210	55	831	68.7
충남	1,129	33	1,096	42	889	81.1
전북	1,085	19	1,066	46	832	78.0
전남	1,122	55	1,067	26	712	66.7
경북	1,433	3	1,430	38	812	56.8
경남	1,670	109	1,561	37	977	62.6
제주	480	26	454	11	263	57.9
계	**27,027**	**959**	**26,068**	**780**	**15,896**	**61.0**

- 특수학교 통학차량 총 780대 중 448대는 학교 소유, 332대는 임대 형태로 운영
- 안전교육은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보조인력 총 1,785명이 이수

〈표 3 · 44〉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교, 대, 명)

시·도	특수 학교 수	통학차량 현황						안전교육 이수		
		전체 통학 차량 수	운영 차종(대수)			운영 형태(대수)		운영자 (학교장)	운전자	통학보조 인력
			16인승 이하	17인~35인승 이하	36인승 이상	학교소유	임대			
서울	32	110	4	24	82	68	42	31	105	109
부산	15	53	-	29	24	53	-	15	53	79
대구	10	45	-	17	28	8	37	10	45	45
인천	10	41	-	8	33	7	34	9	37	38
광주	5	37	-	9	28	9	28	5	37	37
대전	6	29	1	2	26	13	16	6	28	31
울산	4	26	-	14	12	17	9	4	26	26
세종	1	5	-	-	5	4	1	1	5	5
경기	38	148	7	41	100	89	59	36	144	151
강원	8	31	2	10	19	26	5	8	29	29
충북	10	55	3	16	36	29	26	10	55	82
충남	9	42	-	14	28	18	24	9	42	42
전북	10	46	2	28	16	25	21	10	46	46
전남	8	26	-	6	20	19	7	8	26	26
경북	8	38	1	7	30	27	11	8	38	38
경남	10	37	-	15	22	27	10	10	37	37
제주	3	11	-	2	9	9	2	3	11	17
계	**187**	**780**	**20**	**242**	**518**	**448**	**332**	**183**	**764**	**838**

- 급식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7,288명 중 27,027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70,866명 중 70,866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754억 원임

〈표 3 · 45〉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원,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단위: 원)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단위: 원)			급식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서울	4,542	4,473	5,069	5,578	5,578	4,769	8,413	8,413	3,768	3,768	5,688	7,077
부산	1,872	1,872	3,720	3,720	3,720	1,349	4,512	4,512	3,580	3,160	4,115	2,965
대구	1,749	1,738	6,271	6,271	6,271	1,857	3,370	3,370	4,961	4,961	6,774	3,168
인천	1,768	1,765	4,110	4,110	4,110	1,379	4,773	4,773	2,520	2,770	3,460	2,713
광주	1,036	1,036	8,540	8,540	8,540	1,681	2,022	2,022	2,700	4,903	5,446	2,401
대전	1,045	1,039	3,700	3,700	3,700	1,020	2,228	2,228	3,300	3,300	4,400	1,546
울산	764	759	4,030	4,030	4,030	559	1,975	1,975	2,350	3,950	4,010	1,163
세종	175	175	5,620	5,620	5,620	187	574	574	5,880	4,630	5,070	549
경기	5,229	5,153	3,440	3,440	4,110	3,476	18,123	18,123	3,420	3,690	4,960	13,488
강원	818	812	3,860	3,860	3,860	598	2,137	2,137	1,900	2,680	6,500	1,142
충북	1,292	1,286	8,968	8,968	8,968	2,144	2,952	2,952	2,433	5,009	6,355	2,873
충남	1,131	1,129	2,300	3,340	4,340	851	3,777	3,777	1,870	3,310	4,130	2,485
전북	1,085	1,085	3,500	3,500	3,500	709	2,774	2,774	2,600	2,800	3,500	1,590
전남	1,123	1,122	6,410	6,410	6,410	1,360	2,884	2,884	5,795	5,795	6,191	3,008
경북	1,451	1,433	2,660	2,660	2,660	724	3,788	3,788	2,170	2,170	2,630	1,694
경남	1,684	1,670	3,130	3,130	3,740	1,088	5,355	5,355	2,960	2,900	3,440	2,689
제주	524	480	3,700	3,700	3,700	330	1,209	1,209	3,230	3,630	3,840	768
계*	**27,288**	**27,027***	**79,028**	**80,577**	**82,857**	**24,081**	**70,866**	**70,866**	**55,437**	**63,426**	**80,509**	**51,319**

* 급식을 하지 않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261명) 등은 미포함

■ 향후 과제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상자별 적합한 지원 영역, 치료지원 적정단가 산출 등 효율적 제공 방법 강구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다양화 및 역량 강화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교육 지원 추진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족지원,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학 지원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6)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 4월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1,799명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21년 33개교로, 44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월 평균 이용 건강장애학생 수는 363명임

〈표 3 · 46〉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명)

시 · 도	병원명 또는 병원학교명	월평균 이용 학생 수	담당 인력 수
서울(9)	국립정신건강센터 참다울학교	-	특수교사 3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원학교	8	사회복지사 1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52	일반교사 1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27	평생교육사 1, 일반교사 1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31	의료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1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16	의료사회복지사 1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41	일반교사 1, 심리상담사 1
	원자력병원 병원학교	4	사회복지사 1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4	일반교사 1
부산(3)	동아대학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학교	7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대구(4)	경북대학교 병원학교	8	특수교사 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대동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영남대학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인천(1)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34	특수교사 1
광주(1)	학마을병원학교	12	특수교사 1
대전(1)	충남대학교병원학교	9	특수교사 1
울산(1)	다솜병원학교	6	특수교사 3
경기(2)	국립암센터(밝은교실)	8	특수교사 2
	파주재활병원(한울빛교실)	6	특수교사 2
강원(1)	강릉아산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충북(1)	충북대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충남(3)	국립공주병원어울림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단국대학교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아람메디컬병원학교	9	특수교사 1
전북(1)	전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전남(2)	느티나무병원학교	7	특수교사 1
	여미사랑병원학교	15	특수교사 2
경남(2)	경상대학교병원어린이병원학교	7	특수교사 1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10	특수교사 2
제주(1)	제주대학교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계	**33**	**363**	**44**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서 원격수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은 1,482명이고, 월 평균 이용 학생 수는 1,879명임

〈표 3 · 47〉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 현황

(단위: 학급, 명, 일)

기관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개별학생 평균 이용일
			건강장애	기타	계		
꿀맛무지개교실(서울특별시교육청)	14	14	206	46	252	235.3	50.03
꿈사랑학교(경상남도교육청)	44	27	701	166	867	838	88
한국교육개발원	36	34	575	293	868	806	51.9
계	**94**	**75**	**1,482**	**505**	**1,987**	**1,879.3**	**189.93**

■ 향후 과제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 간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및 질 관리 강화
-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와 연계 및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7)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 현황 및 실적

-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국 845개 기관과 연계하여 1,639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3,15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429개 기관과 연계하여 7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18,07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3 · 48〉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활동 현황

(단위: 기관, 개, 명)

시 · 도 교육청	문화예술			체육		
	연계 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수	참여 학생 수	연계 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수	참여 학생 수
서울	125	139	3,284	24	54	962
부산	101	383	5,939	44	150	2,464
대구	125	338	3,345	70	113	1,876
인천	59	62	706	20	20	371
광주	21	25	1,116	8	20	1,410
대전	31	34	670	16	19	279
울산	14	27	842	4	13	625
세종	11	15	314	11	16	431
경기	65	64	1,140	6	20	1,449
강원	31	44	1,023	22	23	470
충북	26	45	1,104	11	27	273
충남	28	211	6,246	21	84	2,218
전북	14	22	2,009	14	16	2,009
전남	98	85	1,972	90	87	1,843
경북	47	63	1,896	58	51	886
경남	46	75	1,433	9	13	340
제주	3	7	116	1	2	173
계	**845**	**1,639**	**33,155**	**429**	**728**	**18,079**

향후 과제

- 장애학생 문화예술 · 맞춤형 체육활동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건강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증진을 위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시스템 도입 · 정착 필요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확대 및 발전

■ 관련 법규

-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함(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함(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 현황 및 추진실적

- '21년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 자유학기(년)제 및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한 학기)는 4교,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두 학기)는 171교로 운영함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 수는 30명,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 수는 2,024명으로 총 2,05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처 · 프로그램 6,442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진로체험활동 2,710회(누적수)를 운영함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 · 도교육청 교사연구회가 174개 조직 · 운영되고 있으며, 1,815명이 연수 이수함

〈표 3 · 49〉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운영 · 지원 현황

※ 기준일: 2021. 6. 1.(단위: 교, 명, 개)

시 · 도	중학교 과정 특수학교 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문성 향상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꿈길에 등록된 체험처	진로체험 활동 결과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현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수 이수 인원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서울	28	4	30	24	279	555	227	31	653
부산	13	-	-	13	142	549	179	14	33
대구	10	-	-	10	114	581	126	3	22
인천*	10	-	-	9	164	194	111	7	107
광주	5	-	-	5	87	334	129	4	134
대전	6	-	-	6	68	234	52	7	52
울산	4	-	-	4	51	554	277	13	46
세종	1	-	-	1	23	62	169	1	21
경기	35	-	-	35	376	671	312	35	387
강원	8	-	-	8	72	303	37	8	22
충북	10	-	-	10	79	310	299	12	45
충남	8	-	-	8	73	427	279	9	75
전북	9	-	-	9	80	286	101	9	36
전남	8	-	-	8	85	511	122	2	16
경북	8	-	-	8	167	364	155	6	75
경남	10	-	-	10	126	441	116	10	66
제주	3	-	-	3	38	66	19	3	25
계	**176**	**4**	**30**	**171**	**2,024**	**6,442**	**2,710**	**174**	**1,815**

* 인천의 중학교 과정 특수학교(10곳) 중 1개교(미추홀학교)는 현재 중학교 1학년 과정만 있고, 자유학기(년)제 미운영

향후 과제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활동 및 미래 진로 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확대 추진
- 장애유형 · 정도를 고려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혁신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담당 교원 역량 강화
- 지역단위 진로체험지원 협의체 운영 활성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강화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3항)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 실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31교) 내실화 지원

※ 교육부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 25개 운영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 6개 운영(경기도교육청 2개, 부산광역시교육청 1개, 대구광역시교육청 1개, 충청북도교육청 1개, 경상북도교육청 1개)

〈표 3 · 50〉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개관 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2010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 · 청각 · 지체 · 지적장애 ·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사무용지, 제과제빵, 세탁 등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천연비누, 직업체험 등
2011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예술, 스포츠 등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천연비누, 운동화 전문세탁 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천연비누, 조립임가공, 직업체험 등
2012	꽃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제과 · 제빵 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조명장치, 천연비누, 직업체험 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콩나물, 세탁 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비누, 도자기 등
2013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목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공예, 원예 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향초 등
	울산혜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 부품제조, 세차, 신발세탁 등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양파즙, 공예, 자동차 부품제조 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갑, 핸드페인팅, 직업체험 등
	태백미래학교	강원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공예, 건설 · 기계 재활용 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스팀세차, 허브재배, 천연비누 등
	부천혜림학교*	경기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가공, 소독, 직업체험 등
2014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 출판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 임가공업 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면장갑, 가구, 임가공 등
2015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보안문서파쇄, 운동화세탁, 직업체험 등
2016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직업체험 등
2017	한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버섯재배 · 유통, 임가공업, 직업체험 등
2018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건조식품, 위생용품 제조
	대구성보학교*	대구	공립	지체장애	문화 예술
	부산해마루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재배 · 원예, 도자기, 비누, 직업체험 등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2019	상희학교*	경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및 체험학습
	청주성신학교*	충북	사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1년 현재 교육부 지정 35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6교가 운영 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51〉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시·도	지정연도 및 운영학교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서울	상암고	경복고		(문현고) (서울문화고)	(경기고)			관악고				3(3)
부산	동래원예고*		부산 전자공업고									1
대구	대구과학 기술고					대구농업 마이스터고						2
인천			강남영상 미디어고			박문여고		인화여고				3
광주	광주전자공고											1
대전		동대전고										1
울산												-
세종												-
경기	성남테크노 과학고 이천제일고	안양공고 은행고 (포천일고) (안성고)	수원 정보과학고			(오산정보고)						5(3)
강원			영서고									1
충북	제천제일고		청주농업고				충북산업과학고					3
충남	공주생명 과학고	금산산업고 논산공업고	당진정보고 서천고	(온양용화고) (천안공업고)	(태안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청양고)	(서산중앙고)			6(6)
전북					(이리공업고)** (장계공업고)** (고창여고)**	(전주제일고)** (해리고)** (무주고)** (함열고)**	이리고			(전주생명 과학고)	(전북 유니텍고)	1(2)
전남	목포공고		전남 기술과학고				순천공업고					3
경북		김천생명 과학고						(인동고)				1(1)
경남		이림고 김해생명 과학고										2
제주	제주고	함덕고		(표선고)		(제주중앙 여고)**						2(1)
계	**9**	**10(2)**	**8**	**(5)**	**(2)**	**3(2)**	**3**	**2(2)**	**(1)**	**(1)**	**(1)**	**35(16)**

* 동래원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이관

**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로 한시적 운영

※ ( )안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는 '21년 48교가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64교 지정·운영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운영 및 장애학생 직업역량 강화 도모

〈표 3·52〉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지정연도	운영 학교	합계
2015	부산해마루학교, 대전원명학교, 원주청원학교, 청주혜원학교, 진주혜광학교	5
2016	울산행복학교, 다원학교, 다솜학교, 함평영화학교, 제주영송학교	5
2017	대구보명학교, 미추홀학교, 성은학교, 아산성심학교, 전주은화학교, 경산자인학교, 경남은혜학교	7
2018	부산솔빛학교, 대구덕희학교, 광주선광학교, 대전성세재활학교	4
2019	광주선명학교, 울산태연학교, 세종누리학교, 한길학교,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공주정명학교, 나사렛새꿈학교, 한울학교, 전북푸른학교, 목포인성학교, 경남은광학교	12
2020	서울정민학교, 부산솔빛학교, 대구덕희학교, 광주선광학교, 광주선명학교, 광주선우학교, 대전성세재활학교, 대전가원학교, 울산태연학교, 세종누리학교, 한길학교, 새얼학교,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청주성신학교, 숭덕학교, 공주정명학교, 나사렛새꿈학교, 보령정심학교, 성광온누리학교, 천안늘해랑학교, 한울학교, 전북푸른학교, 목포인성학교, 경희학교, 구미혜당학교, 경남은광학교, 김해은혜학교	28
2021	서울정민학교, 서울정진학교, 밀알학교, 성베드로학교, 부산혜원학교, 대구남양학교, 대구선명학교, 대구성보학교, 대구보명학교, 인천인혜학교, 광주선명학교, 광주선우학교, 대전가원학교, 대전해든학교,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세종누리학교, 의왕정음학교, 용인다움학교, 새얼학교, 한길학교,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숭덕학교, 청주성신학교, 꽃동네학교, 공주정명학교, 아산성심학교, 성광온누리학교, 천안늘해랑학교, 당진꿈나래학교, 나사렛새꿈학교, 서산성봉학교, 보령정심학교, 한울학교, 전북푸른학교, 나주이화학교, 순천선혜학교, 여수여명학교, 소림학교, 은광학교, 덕수학교, 목포인성학교, 함평영화학교, 경희학교, 구미혜당학교, 김해은혜학교, 의령은광학교	**48**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위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워크숍 개최 및 원스톱 취업 지원 체계 구축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확대 위해 장애인 고용 지원 설명회, 대학 내 및 지역사회 중심 일자리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장애인 고용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추진

- 2021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108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1명으로 취업률은 7.0%임

〈표 3 · 53〉 2021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349	270	2	3	-	1	9	-	-	1	-	-	3	-	1	20	25.3
부산	134	57	-	1	-	-	-	-	-	-	2	-	-	2	-	5	6.5
대구	133	82	-	-	-	-	-	-	-	-	-	-	-	-	-	-	-
인천	101	52	-	-	-	-	-	-	-	-	-	-	-	-	2	2	4.1
광주	88	26	-	-	-	-	-	1	-	-	-	-	-	-	-	1	1.6
대전	89	64	-	-	-	-	-	-	-	-	1	-	-	-	1	2	8.0
울산	59	36	-	-	-	-	-	-	-	-	1	-	-	-	-	1	4.3
세종	9	7	-	-	-	-	-	-	-	-	-	-	-	-	-	-	-
경기	364	118	1	8	-	-	1	-	-	4	1	-	-	-	5	20	8.1
강원	80	53	-	-	-	-	-	-	-	-	-	-	-	-	1	1	3.7
충북	114	85	1	-	-	-	-	-	-	1	-	-	-	-	-	2	6.9
충남	91	70	-	-	-	-	-	-	-	-	-	-	1	-	-	1	4.8
전북	110	48	-	-	-	-	-	-	-	-	-	1	2	-	-	3	4.8
전남	90	38	-	-	-	-	-	1	-	-	-	-	-	-	1	2	3.8
경북	125	99	-	-	-	-	-	-	-	-	-	-	-	-	-	-	-
경남	134	120	-	-	-	-	-	-	-	-	-	-	-	-	-	-	-
제주	38	10	-	1	-	-	-	-	-	-	-	-	-	-	-	1	3.6
계	**2,108**	**1,235**	**4**	**13**	**-**	**1**	**10**	**2**	**-**	**6**	**5**	**1**	**6**	**2**	**11**	**61**	**7.0**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1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614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17명으로 취업률은 33.8%임

〈표 3 · 54〉 2021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424	85	9	12	-	1	3	-	8	11	44	4	26	6	12	136	40.1
부산	209	96	3	5	-	-	4	-	-	1	3	1	4	3	4	28	24.8
대구	167	137	-	-	-	-	-	-	-	-	-	-	-	-	1	1	3.3
인천	212	121	-	14	-	-	1	-	1	2	2	1	-	1	5	27	29.7
광주	111	65	-	3	-	-	-	-	-	2	2	1	1	-	2	11	23.9
대전	131	80	-	1	1	-	2	-	-	2	-	-	-	1	3	10	19.6
울산	81	66	-	-	-	-	-	-	-	-	-	1	-	-	1	2	13.3
세종	14	5	-	1	-	-	-	-	-	-	-	-	-	3	1	5	55.6
경기	1,032	485	5	70	3	1	36	-	5	5	16	3	43	6	13	206	37.7
강원	96	51	-	3	-	-	1	-	-	3	2	-	3	-	3	15	33.3
충북	155	74	1	2	-	-	-	-	-	6	2	1	6	-	4	22	27.2
충남	221	106	1	13	-	-	7	-	1	3	3	-	9	4	7	48	41.7
전북	104	58	-	1	-	-	2	-	-	2	3	-	3	-	-	11	23.9
전남	172	96	1	-	1	-	4	-	-	13	-	1	3	2	3	28	36.8
경북	193	124	1	2	-	-	1	-	-	8	3	-	3	-	2	20	29.0
경남	252	116	4	19	-	-	1	-	-	1	5	-	8	-	4	42	30.9
제주	40	24	-	1	-	-	1	-	-	1	-	-	1	-	1	5	31.3
계	**3,614**	**1,789**	**25**	**147**	**5**	**2**	**63**	**-**	**15**	**60**	**85**	**13**	**110**	**26**	**66**	**617**	**33.8**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1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105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4명으로 취업률은 13.2%임

〈표 3 · 55〉 2021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 · 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 ·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 · 제과 제빵	이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184	108	-	1	-	2	1	-	2	-	-	-	-	-	5	11	14.5
부산	85	59	-	3	-	-	-	-	-	-	-	-	2	-	2	7	26.9
대구	96	70	-	-	-	-	-	-	-	-	-	-	-	-	1	1	3.8
인천	49	24	-	1	-	-	-	-	-	-	-	-	-	-	2	3	12.0
광주	48	33	-	-	-	-	-	-	-	-	-	-	-	-	-	-	-
대전	36	21	-	-	-	-	-	-	-	-	1	-	-	-	1	2	13.3
울산	33	21	-	-	-	-	-	-	-	-	-	-	-	-	2	2	16.7
세종	5	5	-	-	-	-	-	-	-	-	-	-	-	-	-	-	-
경기	228	138	-	4	-	-	1	-	-	-	-	1	1	-	3	10	11.1
강원	38	20	-	-	-	-	-	-	-	-	1	-	-	-	-	1	5.6
충북	58	33	-	1	-	-	-	-	-	-	1	-	-	-	3	5	20.0
충남	21	13	-	-	-	-	-	-	-	-	-	-	-	1	2	3	37.5
전북	51	33	-	-	-	-	-	-	-	-	-	-	-	-	2	2	11.1
전남	16	10	-	-	-	-	-	-	-	-	1	-	-	-	-	1	16.7
경북	56	40	-	-	-	-	-	-	-	-	-	-	1	-	-	1	6.3
경남	76	52	1	1	-	-	1	-	-	-	-	-	-	-	-	3	12.5
제주	25	16	1	-	-	-	-	-	-	-	-	-	-	-	1	2	22.2
계	**1,105**	**696**	**2**	**11**	**-**	**2**	**3**	**-**	**2**	**-**	**4**	**1**	**4**	**1**	**24**	**54**	**13.2**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 × 100

- 2021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378명 중 1,009명 취업으로 취업률은 43.0%임

〈표 3 · 56〉 2021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277	11	11	11	-	7	1	2	1	3	8	-	1	-	8	53	19.9
부산	108	1	10	13	-	-	4	2	-	4	13	-	4	1	12	63	58.9
대구	174	1	10	39	-	-	4	4	1	22	10	-	8	-	5	103	59.5
인천	137	-	2	15	-	-	-	2	-	4	18	-	-	2	6	49	35.8
광주	73	2	5	18	-	-	1	4	-	7	5	-	5	1	-	46	64.8
대전	143	8	-	2	-	-	-	11	-	14	4	-	1	-	1	33	24.4
울산	103	1	1	9	-	-	-	-	1	14	6	3	1	-	13	48	47.1
세종	13	1	-	3	-	-	-	-	-	-	3	-	-	2	-	8	66.7
경기	356	2	10	81	3	4	13	-	1	11	23	-	30	5	23	204	57.6
강원	109	-	-	11	-	-	-	-	-	4	10	1	7	-	8	41	37.6
충북	139	3	2	20	-	-	4	4	-	7	4	-	9	-	10	60	44.1
충남	140	-	-	16	1	-	1	-	-	14	4	-	5	1	5	47	33.6
전북	99	1	5	9	-	-	-	4	1	4	8	4	7	1	1	44	44.9
전남	114	-	4	4	-	-	2	3	1	16	2	-	10	3	10	55	48.2
경북	194	-	6	25	-	-	1	-	-	26	9	-	8	1	17	93	47.9
경남	168	-	2	11	-	-	6	-	-	6	2	-	1	-	14	42	25.0
제주	31	-	-	5	-	-	-	-	-	5	3	-	1	-	6	20	64.5
계	**2,378**	**31**	**68**	**292**	**4**	**11**	**37**	**36**	**6**	**161**	**132**	**8**	**98**	**17**	**139**	**1,009**	**43.0**

※ 취업률 = {취업자 수/(이수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1년 전국 158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 694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5,173명이 배치되어 있음
- 2021년 대구・인천・경기・충북 일반학교 18개교에 전공과 34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220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

〈표 3・57〉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교	158	694	5,173
일반학교	18	34	220
계	**176**	**728**	**5,393**

향후 과제

-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운영 강화
- '진로진학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을 통해 특수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의 체계성 및 연계성 강화
- 진로・직업 교육과정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직업역량 강화 도모
- 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직업인으로 양성・지원하는 기회 확대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보급, 성과관리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전문화 지원
- 범부처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연계 시스템을 통해 학령기와 학령기 이후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도모 및 효과성 확대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발달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 지원 강화

3)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6,827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58.6%, 특수학급 졸업생은 49.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은 63.0%이며 전체 진학률은 54.5%임

〈표 3 · 58〉 2021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서울	349	424	184	957	240	33	6	4	21	37	26	31	65	270	85	108	463	48.4
부산	134	209	85	428	50	59	-	1	23	22	6	14	37	57	96	59	212	49.5
대구	133	167	96	396	72	96	4	-	27	23	10	14	43	82	137	70	289	73.0
인천	101	212	49	362	50	101	2	1	9	7	1	11	15	52	121	24	197	54.4
광주	88	111	48	247	22	43	1	-	4	5	4	18	27	26	65	33	124	50.2
대전	89	131	36	256	61	57	2	1	6	4	2	17	15	64	80	21	165	64.5
울산	59	81	33	173	35	53	-	-	9	1	1	4	20	36	66	21	123	71.1
세종	9	14	5	28	7	5	-	-	-	2	-	-	3	7	5	5	17	60.7
경기	364	1,032	228	1,624	112	347	3	-	54	37	6	84	98	118	485	138	741	45.6
강원	80	96	38	214	50	34	2	-	10	6	3	7	12	53	51	20	124	57.9
충북	114	155	58	327	79	57	6	3	9	8	3	8	19	85	74	33	192	58.7
충남	91	221	21	333	70	88	2	-	5	2	-	13	9	70	106	13	189	56.8
전북	110	104	51	265	46	42	5	1	8	8	1	8	20	48	58	33	139	52.5
전남	90	172	16	278	38	65	5	-	15	1	-	16	4	38	96	10	144	51.8
경북	125	193	56	374	97	81	5	1	16	10	1	27	25	99	124	40	263	70.3
경남	134	252	76	462	120	58	1	-	40	17	-	18	34	120	116	52	288	62.3
제주	38	40	25	103	9	15	1	1	6	5	-	3	10	10	24	16	50	48.5
계	**2,108**	**3,614**	**1,105**	**6,827**	**1,158**	**1,234**	**45**	**13**	**262**	**195**	**64**	**293**	**456**	**1,235**	**1,789**	**696**	**3,720**	**54.5**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21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24개교 94명, 대학 107개교 797명으로 총 891명임

〈표 3 · 59〉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합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2010	19(12)	51	80(75)	601	99(87)	652
2011	14(14)	60	89(77)	574	103(91)	634
2012	16(16)	97	90(84)	566	106(100)	663
2013	25(17)	185	97(89)	649	122(106)	834
2014	23(16)	84	98(80)	637	121(96)	721
2015	23(18)	54	98(84)	753	121(102)	807
2016	24(15)	48	100(88)	768	124(103)	816
2017	(15)	46	(97)	832	(112)	878
2018	(16)	56	(100)	888	(116)	944
2019	(16)	50	(71)	905	(87)	955
2020	(25)	95	(93)	898	(118)	993
2021	**(24)**	**94**	**(107)**	**797**	**(131)**	**891**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 수, 대상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제외)
※ 출처: 대학정보공시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21. 6월 기준)

- 2021년 6월 기준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은 231개 대학에 2,092명임
- 교육지원인력 유형은 학내 이동 및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 속기, 점역 등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학습·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교육지원인력으로 나뉨

〈표 3·60〉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학교 수	교육지원인력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교육지원인력	대학(원)	167	62	-	1,536	1,598
	전문대학	69	1	-	237	238
	원격대학	3	-	-	11	11
	소계	**239**	**63**	**-**	**1,784**	**1,847**
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포함)	대학(원)	41	103	-	95	198
	전문대학	3	3	-	-	3
	원격대학	7	22	-	22	44
	소계	**51**	**128**	**-**	**117**	**245**
계		**231(중복제외)**	**191**	**-**	**1,901**	**2,092**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 지원 내실화 추진
-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현장 안착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관련 법규

-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2항)

현황 및 실적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하여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및 2021년 2월 결과 공표
- 평가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일반대학 323개 대학 403개 캠퍼스, 원격대학 20개 대학, 총 343개 대학 423개 캠퍼스 실시
- 평가분야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이며, 평가대상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3단계 과정으로 실시
-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등급별 현황은 '최우수' 등급이 39개(9.2%)이고, '우수' 93개(22.0%), '보통' 177개(41.8%), '개선요망' 114개(27.0%)로 나타남
- 2020년은 2017년에 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70.9점으로 안정적인 '보통' 등급으로 나타남

〈표 3 · 61〉 일반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4호, 6~7호)

영역	부문	항목 수	
		부문별	영역별
선발 (10%)	1.1 전형(4%) 1.2 정보제공(6%)	3 3	6
교수 · 학습 (50%)	2.1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및 체제(12%) 2.2 교수 · 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10%)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5%) 2.4 학습지원(12%) 2.5 평가지원(2%) 2.6 장학지원(2%) 2.7 상담 · 진로 및 취업지원(6%) 2.8 장애대학생 교수 · 학습 만족도(1%)	5 5 3 6 1 1 4 5	30
시설 · 설비 (40%)	3.1 매개시설(8%) 3.2 내부시설(12%) 3.3 위생시설(8%) 3.4 안내 및 기타시설(3%) 3.5 강의실(1%) 3.6 도서관(1%) 3.7 강당(1%) 3.8 식당(1%) 3.9 체육관(1%) 3.10 기숙사(1%) 3.11 무장애 교육환경 구축 실적(2%) 3.12 장애대학생 시설 · 설비 만족도(1%)	7 8 3 3 1 1 1 1 1 1 1 5	33
3개 영역	22개 부문	69개 항목	

〈표 3 · 62〉 원격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영역	부문	항목 수	
		부문별	영역별
선발 (10%)	1.1 전형(4%) 1.2 정보제공(6%)	3 2	5
교수 · 학습 (63%)	2.1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및 체제(12%) 2.2 교수 · 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10%) 2.3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4%) 2.4 학습지원(25%) 2.5 평가지원(3%) 2.6 장학지원(2%) 2.7 상담 · 진로 및 취업지원(5%) 2.8 장애대학생 교수 · 학습 만족도(2%)	5 4 2 9 1 1 4 5	31
시설 · 설비 (27%)	3.1 매개시설(8%) 3.2 내부시설(12%) 3.3 위생시설(6%) 3.4 안내 및 기타시설(1%)	7 8 3 1	19
3개 영역	14개 부문	55개 항목	

〈표 3 · 63〉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전체
캠퍼스 수(%)	39(9.2)	93(22.0)	177(41.8)	114(27.0)	423(100)

※ 등급(100점 만점):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90점 미만, 보통 65~80점 미만, 개선요망 65점 미만

■ 향후 과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회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현행화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평생교육법 제9조)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 · 지자체 · 교육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할 수 있음(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추진체제 구축 · 운영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과 광명시 간 업무협약('20. 10. 29.)체결
  -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환경 구축,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경기복지재단 업무협약식('21. 6. 2.)
- 평생교육-고용-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범정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 상설협의체 구성 · 운영('20.~)

- 지역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20. 1.~'21. 1.)
  - 5개 주제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의 22개 평생교육기관에 42개 프로그램 운영
  - 4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읍면 지역 등 이동이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교육생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8개 프로그램)
- 장애인 '초등・중등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제정 및 고시('20. 12. 30.)를 통해 저학력 장애인의 의무교육 학력인정 기회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조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 도시 현황 ('20년) 5개 운영→('21년) 15개 운영
  - '20년도에는 173개 기관에서 총 439개 프로그램(지역별 특화, 일자리 연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7,00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였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20. 5.~)하여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제15조의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설('21. 6. 8.신설, '21. 12. 9.시행)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방안 정책연구 추진('20. 12.~'21. 8. 22.)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일정수준 질 확보를 통해 장애성인에게 향상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매뉴얼' 수립
  - 시설기준, 시설 개・보수비, 임차료, 표준운영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교・강사, 행정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종사자 자격 기준 등

    ※ 지원 주체: 시・도 및 시・도교육청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인 교육*으로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 환경 구축

  * 전문인력 양성 연수(108명, 36시수), 종사자 평생교육 역량강화(65명, 16시수)
- 전국 1,296개 장애인평생교육 운영 시설에서 75,448명의 학습자가 20,198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표 3 · 6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개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77**	**1,060**	**2,498**
교육청 인가 · 등록	59	646	1,939
지자체 지정 · 위탁	18	414	559
일반 평생교육기관	**161**	**1,894**	**6,350**
대학(원)부설	22	504	380
원격형태	5	186	36
사업장부설	2	22	28
시민사회단체부설	15	81	287
언론기관부설	4	64	28
지식 · 인력개발형태	2	2	2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1	4	54
평생학습관	110	1,031	5,535
특수교육 기관	**12**	**-**	**208**
특수학교	12	-	208
특수교육지원센터	-	-	-
장애인복지시설	**1,046**	**17,244**	**66,392**
거주시설	119	1,264	2,694
지체장애인시설	3	79	225
시각장애인시설	1	8	29
청각장애인시설	2	10	25
지적장애인시설	39	466	1,23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4	284	843
단기거주시설	14	131	173
공동생활가정	36	286	162
지역사회재활시설	459	7,281	50,719
장애인복지관	201	3,824	44,914
주간보호시설	216	3,293	3,718
장애인체육관	3	24	400
수어통역센터	27	74	598
생활이동지원센터	7	32	149
점자도서관	5	34	940
직업재활시설	468	8,699	12,979
근로사업장	27	216	1,095
보호작업장	423	7,877	11,520
직업적응훈련시설	18	606	364
계	**1,296**	**20,198**	**75,448**

* 교육청에서 인가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출처: 2020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2019. 1. 1.~2019. 12. 31.기준)

■ 향후 과제

-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웹 접근성 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연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 개발・보급
-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을 위해 장애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강사 양성 등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1)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 현황 및 실적

-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배포하고,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유아 및 초・중등학생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자료 제작・배포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교육 특별방송(라디오, TV)을 송출하고, 각급학교에서 특별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수업을 실시함
  - 2020년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16,825교이고 실시 비율은 91.7%임

〈표 3 · 65〉 유 · 초 · 중 · 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단위: 교, %)

시 · 도	전체 유 · 초 · 중 · 고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실시 비율
서울	2,109	1,693	80.3
부산	1,004	962	95.8
대구	788	788	100.0
인천	916	792	86.5
광주	601	601	100.0
대전	545	533	97.8
울산	439	399	90.9
세종	156	156	100.0
경기	2,598	2,393	92.1
강원	1,024	860	84.0
충북	781	751	96.2
충남	1,223	1,222	99.9
전북	1,276	1,041	81.6
전남	1,352	1,307	96.7
경북	1,599	1,401	87.6
경남	1,629	1,615	99.1
제주	311	311	100.0
계	**18,351**	**16,825**	**91.7**

※ 2020. 12. 31. 기준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관련 법규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3항, 제4항 신설, 2019. 12. 10.)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 신설, 2019. 12. 10.)

■ 현황 및 실적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01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내외부 위원 2,468명을 구성함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등 총 2,925개교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어려움을 지원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접수를 위한 온라인 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임
- 통합교육 환경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용 교육자료(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사용 지도서 2종, 학교교육활동연계 동영상 20편)를 개발·보급함
-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을 공모하여, 총 176편(사진 144편, 홍보영상 32편)을 접수, 교육부장관상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상 20편을 시상하였으며, 작품집 배부, 대면전시회,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여 구축한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홍보함

〈표 3 · 6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단위: 개, 명)

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수
서울	11	165
부산	6	74
대구	5	97
인천	6	77
광주	3	44
대전	3	33
울산	3	41
세종	2	18
경기	32	363
강원	18	201
충북	11	158
충남	15	198
전북	15	185
전남	23	282
경북	24	272
경남	21	227
제주	3	33
계	**201**	**2,468**

※ 인권지원단 구성(최소 8명 이상): 센터장(담당과장) 1명, 장학사(연구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1명, 상담전문인력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표 3 · 67〉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20)

(단위: 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모니터링 학교 수	174	149	52	91	209	166	349	181	374	420	386	374	**2,925**

※ 현장지원은 전화점검으로 대체 불가하여, 코로나 관련 전년도 대비 1,063건 감소

- 2021년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강좌는 260개임
- 2021년 일반교육교원 대상 전체 연수과정 6,818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434개임

〈표 3 · 68〉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 ·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 수	22	5	10	9	4	3	2	29	40	19	15	18	18	22	19	25	-	**260**

〈표 3 · 69〉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 · 도	일반교육교원 대상 연수과정 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연수과정 수
서울	1,311	67
부산	423	24
대구	887	22
인천	10	6
광주	1,196	21
대전	434	19
울산	375	9
세종	30	30
경기	410	72
강원	281	20
충북	316	26
충남	325	23
전북	37	27
전남	37	27
경북	206	14
경남	489	21
제주	51	6
계	**6,818**	**434**

향후 과제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유 · 초 · 중 · 고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대상별(교직원, 학생 등)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권 핵심교원 및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 등 관련 연수 확대
-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추진에 따른 시 · 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

3) 장애발견 진단 · 배치 체계 구축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 ·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 · 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 · 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 · 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 · 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현황 및 추진실적

- 2021년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40,203명의 신청을 받아 37,705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93.8%의 배치율을 보임

〈표 3・7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배치 비율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서울	1,546	1,427	2,396	2,170	982	921	130	107	5,054	4,625	91.5
부산	654	650	1179	1091	1063	853	-	-	2896	2594	89.6
대구	526	525	974	922	772	715	15	15	2,287	2,177	95.2
인천	422	422	1,285	1,242	806	730	9	9	2,522	2,403	95.3
광주	218	217	400	399	411	392	-	-	1,029	1,008	98.0
대전	323	323	802	781	309	283	18	18	1452	1405	96.8
울산	165	161	633	553	315	271	5	5	1,118	990	88.6
세종	48	48	250	233	69	69	-	-	367	350	95.4
경기	1,864	1,633	6,299	6,064	1,983	1,825	106	99	10,252	9,621	93.8
강원	172	171	644	621	296	268	3	2	1115	1062	95.2
충북	346	346	953	945	373	361	25	24	1,697	1,676	98.8
충남	286	285	1538	1444	232	201	2	2	2058	1932	93.9
전북	299	292	876	811	437	414	2	1	1,614	1,518	94.1
전남	308	303	972	928	211	192	-	-	1491	1423	95.4
경북	268	268	936	890	504	474	15	15	1,723	1,647	95.6
경남	391	388	1771	1621	665	587	38	37	2865	2633	91.9
제주	168	166	292	283	151	140	52	52	663	641	96.7
계	**8,004**	**7,625**	**22,200**	**20,998**	**9,579**	**8,696**	**420**	**386**	**40,203**	**37,705**	**93.8**
영아	148	145	-	-	-	-	420	386	568	531	93.5
유	807	784	3,854	3,552	2,130	1,832	-	-	6,791	6,168	90.8
초	2,535	2,328	10,090	9,374	3,852	3,450	-	-	16,477	15,152	92.0
중	2,323	2,184	4,663	4,507	2,053	1,911	-	-	9,039	8,602	95.2
고	2,191	2,184	3,593	3,565	1,544	1,503	-	-	7,328	7,252	99.0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04명이며, 이 중 만 6세는 215명, 만 7세는 81명, 만 8세 이상은 108명으로 나타남

〈표 3 · 71〉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명, %)

시 · 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만 6세		만 7세		만 8세 이상		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42	7	16	10	20	7	78	24
부산	29	10	12	4	22	8	63	22
대구	77	29	27	11	37	17	141	57
인천	-	-	-	-	4	1	4	1
광주	2	-	-	-	2	-	4	-
대전	5	1	5	2	1	1	11	4
울산	1	1	-	-	-	-	1	1
세종	2	1	-	-	-	-	2	1
경기	21	6	5	2	2	1	28	9
강원	5	-	1	1	2	2	8	3
충북	1	-	-	-	-	-	1	-
충남	9	1	1	1	1	-	11	2
전북	9	3	4	2	10	5	23	10
전남	1	1	-	-	2	-	3	1
경북	5	-	5	3	2	1	12	4
경남	5	1	5	2	3	2	13	5
제주	1	1	-	-	-	-	1	1
계	**215**	**62**	**81**	**38**	**108**	**45**	**404**	**145**

- 2021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3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24.0%로 나타남

〈표 3 · 72〉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 명, %)

시 · 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계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타	
서울	2	6	32	11	15	12	78
부산	2	8	37	3	9	4	63
대구	-	17	20	63	40	1	141
인천	-	3	-	-	-	1	4
광주	-	-	2	1	1	-	4
대전	-	4	5	-	1	1	11
울산	-	1	-	-	-	-	1
세종	-	1	-	1	-	-	2
경기	-	3	8	2	5	10	28
강원	-	1	5	-	-	2	8
충북	-	-	1	-	-	-	1
충남	-	1	4	2	2	2	11
전북	2	-	10	6	-	5	23
전남	-	1	1	1	-	-	3
경북	-	1	5	6	-	-	12
경남	-	1	8	1	-	3	13
제주	-	-	1	-	-	-	1
계	**6 (1.5)**	**48 (11.9)**	**139 (34.4)**	**97 (24.0)**	**73 (18.1)**	**41 (10.1)**	**404 (100)**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특수학교 27,027명 중 26,381명(97.6%), 특수학급 54,266명 중 34,102명(62.8%), 일반학급 16,600명 중 7,322명(44.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261명 중 127명(48.7%)임

〈표 3 · 73〉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장애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체장애	814	994	1,010	15	2,833
뇌병변장애	3,246	2,541	1,319	89	7,195
시각장애	1,047	210	376	2	1,635
청각장애	607	647	1,584	9	2,847
언어장애	202	1,548	421	-	2,171
지적장애	13,948	20,489	1,878	5	36,320
자폐성장애	6,459	7,575	637	3	14,674
정신장애	25	14	1	-	40
신장장애	3	10	22	-	35
심장장애	3	15	20	-	38
호흡기장애	1	5	9	2	17
간장애	1	8	17	1	27
안면장애	1	3	3	-	7
장루 · 요루장애	1	3	13	-	17
뇌전증장애	23	40	12	1	76
계	**26,381 (97.6)**	**34,102 (62.8)**	**7,322 (44.1)**	**127 (48.7)**	**67,932 (69.2)**

- 전국에 193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726명의 운영위원이 1,818회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함

〈표 3 · 7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회)

시·도	위원회 수	구성원									운영실적 ('20. 6.~ '21. 5.)
		교장 (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계	
서울	12	16	40	1	35	1	11	-	7	111	153
부산	6	12	10	5	22	2	2	4	6	63	52
대구	5	8	7	4	15	3	5	-	1	43	51
인천	6	9	17	-	18	-	6	2	4	56	80
광주	3	3	3	3	14	3	2	-	1	29	102
대전	3	4	8	1	12	1	2	-	8	36	36
울산	3	3	8	-	7	1	5	-	6	30	35
세종	1	1	1	1	8	1	1	-	-	13	11
경기	26	47	63	3	42	4	20	6	13	198	325
강원	18	25	57	4	21	-	15	3	12	137	164
충북	11	13	21	6	25	5	13	7	5	95	121
충남	15	24	40	8	52	5	16	5	4	154	155
전북	15	27	51	4	34	8	16	3	7	150	85
전남	23	39	101	6	22	10	13	7	15	213	144
경북	24	35	62	8	36	12	22	7	21	203	136
경남	19	27	44	5	36	11	17	7	10	157	128
제주	3	12	7	2	4	3	4	-	6	38	40
계	**193**	**305**	**540**	**61**	**403**	**70**	**170**	**51**	**126**	**1,726**	**1,818**

향후 과제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조기진단 연계체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현황 및 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37,956천 원, 초등학교 29,032천 원, 중학교 29,529천 원, 고등학교 35,808천 원임
- 신설 특수학급의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58,638천 원, 초등학교 52,894천 원, 중학교 51,989천 원, 고등학교 49,865천 원임

〈표 3 · 7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천 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38,022	43,825	20,984	60,984	23,116	63,116	27,456	67,456
부산	40,264	65,338	23,807	53,807	26,832	54,332	36,093	66,093
대구	32,925	56,675	25,225	48,975	29,862	53,612	33,901	57,651
인천	29,494	35,843	16,370	57,989	18,656	46,630	22,100	26,498
광주	44,838	74,838	31,186	71,186	27,862	67,862	35,636	-
대전	34,864	54,864	24,564	44,564	26,278	46,278	30,509	50,509
울산	32,250	53,082	26,464	44,284	28,086	43,084	46,307	61,310
세종	40,280	50,280	43,372	53,372	44,687	54,687	52,838	62,838
경기	33,126	52,410	45,576	64,859	41,608	60,891	52,957	72,240
강원	21,299	47,710	23,283	48,283	24,095	49,095	29,825	54,825
충북	20,938	70,938	19,849	69,849	20,359	69,359	29,714	77,714
충남	44,229	49,229	38,456	43,456	39,311	44,311	40,158	45,158
전북	43,192	73,192	34,600	59,600	39,600	69,600	44,600	69,600
전남	38,448	53,448	31,028	46,028	29,306	49,306	33,650	53,650
경북	38,128	58,210	39,881	43,059	33,851	33,168	27,570	33,089
경남	67,556	87,556	22,772	42,772	24,043	44,043	29,068	49,068
제주	45,404	69,404	26,124	46,124	24,442	34,442	36,349	-
평균	**37,956**	**58,638**	**29,032**	**52,894**	**29,529**	**51,989**	**35,808**	**49,865**

※ 특수학급 운영비: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 보조인력(인건비 제외),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3조 1,221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4.2%의 비율을 나타냄

〈표 3·76〉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비율
				전체(A)	전체(A) 중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서울	9,741,993,876	310,068,547	99,084,983	12,160,692	12,160,692	1,368,290	450,513	247,580	423,380,605	4.3
부산	4,589,854,058	126,280,808	52,395,884	7,209,724	1,619,898	231,412	242,808	206,000	186,566,636	4.1
대구	3,633,794,769	90,561,475	36,201,912	89,182,354	1,883,265	197,665	76,551	431,004	216,650,961	6.0
인천	4,328,000,000	100,237,000	69,938,614	5,035,560	3,524,000	355,000	86,492	1,030,374	176,683,040	4.1
광주	2,419,256,000	50,564,626	34,292,712	5,432,071	5,000	332,600	240,044	1,776,598	92,638,651	3.8
대전	2,183,511,986	86,258,469	25,069,033	848,388	124,498	160,000	88,478	1,096,288	113,520,656	5.2
울산	1,850,568,197	48,188,173	27,569,350	2,822,338	800,109	231,465	71,132	820,000	79,702,458	4.3
세종	956,013,344	18,364,404	8,846,617	16,628,830	2,573,775	60,370	26,300	593,000	44,519,521	4.7
경기	17,046,923,504	389,007,239	145,884,195	11,142,601	8,126,000	72,758,000	328,052	13,200	619,133,287	3.6
강원	3,181,970,000	63,315,470	24,785,268	28,429,820	2,853,625	233,320	183,202	115,000	117,062,080	3.7
충북	2,868,022,053	71,557,496	61,404,951	12,106,443	305,446	476,940	289,074	369,803	146,204,707	5.1
충남	3,554,800,486	107,809,691	57,874,922	7,783,835	50,000	1,121,816	884,756	2,716,300	178,191,320	5.0
전북	3,587,896,270	94,118,063	44,848,136	23,048,004	3,516,475	672,927	159,643	87,667	162,934,440	4.5
전남	3,646,300,000	69,169,688	50,270,886	13,381,065	1,619,500	1,562,000	162,860	9,223,918	143,770,417	3.9
경북	4,405,600,000	86,068,329	31,601,181	2,070,932	263,044	5,686,700	1,716,950	15,013,177	142,157,269	3.2
경남	5,556,096,263	135,146,247	80,508,237	16,318,908	1,263,600	2,637,546	569,964	803,840	235,984,742	4.2
제주	1,225,590,390	24,731,744	15,031,950	653,790	200,000	24,700	54,744	2,508,210	43,005,138	3.5
계	**74,776,191,196**	**1,871,447,469**	**865,608,831**	**254,255,355**	**40,888,927**	**88,110,751**	**5,631,563**	**37,051,959**	**3,122,105,928**	**4.2**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2021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 3조 1,221억, 국립 특수학교 예산 614억, 국립 특수학급 예산 52억을 합하여 총 3조 1,887억 원임

〈표 3 · 77〉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천 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1,871,447,469	865,608,831	254,255,355	88,110,751	5,631,563	37,051,959	3,122,105,928
국립	특수학교	36,828,929	13,841,670	9,924,700	670,781	110,938	44,886	61,421,904
	특수학급	2,414,114	1,826,607	956,640	2,050	1,030	3,000	5,203,441
계		**1,910,690,512**	**881,277,108**	**265,136,695**	**88,783,582**	**5,743,531**	**37,099,845**	**3,188,731,273**

- 2021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2,487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58천 원 감소함

〈표 3 · 7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 원)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01	406,310,075	51,330	7,916
2002	443,073,183	54,470	8,134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9	2,984,447,992	92,958	32,105
2020	3,134,043,528	95,420	32,845
2021	**3,188,731,273**	**98,154**	**32,487**

- 2021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3조 2,487억 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약 740억 원 증가된 금액이며, 2021년 6월 기준 교육 예산의 4.6%를 차지함

〈표 3 · 79〉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단위: 천원)

연도	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2010	38,595,975,000	1,667,641,925	4.3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2018	63,872,934,485	2,783,412,270	4.4
2019	70,743,520,000	3,039,704,368	4.3
2020	72,097,627,000	3,174,800,528	4.4
2021	**70,429,061,000**	**3,248,756,273**	**4.6**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 시 · 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5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1) 학사 및 학습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전면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에서 2.5단계까지 전면등교 추진하여 특수학교는 100% 특수학급은 98.3%의 학교가 등교수업 실천(6.15. 기준)
- (지원인력) 특수학급의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활성화 위해 한시적 기간제 교원(259명)과 예비특수교사 등(31개 대학 579명) 추가 배치(6.15. 기준)
- (통합교육) 특수학급 등교수업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탄력적 학사운영 우수사례(16개) 발굴・안내(1학기)

  ※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시도교육청 탄력적 학사운영 컨설팅단(30명) 구성・지원
- (정서・행동지원)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행동중재 지원 위해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지정・운영(5곳)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특수교사 150명) 및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학생 600명) 추진(1학기)
- (미래교육) 장애유형별 웹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플랫폼과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학생・학부모용 80여종) 등을 개발 추진

  * 콘텐츠 개발 내용: 발달장애 기본 교육과정 콘텐츠(18종), 지체·발달장애 실감형 콘텐츠(30종), 청각장애 음성인식 자막지원 프로그램(1종),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30교) 및 체험버스(2대), 장애학생 부모교육 콘텐츠(30종)

2) 방역관리

■ 현황 및 추진실적

- (확진현황) '21년 3월 개학부터 7월말까지 특수학교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3명(학생 40명, 교직원 13명)으로 학생 확진자 중 가족 등에 의한 감염이 55%(22명)
- (백신접종) 특수학교(급) 안전한 등교 환경 조성 위해 특수교육 관련자(교원, 지원인력 등) 및 고3, 전공과 학생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 특수교육·보건교사 등 96.2%, 고3 및 고교 교직원 94.4% 1차 접종 완료(7.30. 기준)

- (방역인력) 특수학교당 방역 전담인력(3~5명) 및 방역 등 보조인력 추가 배치(2,052명)로 학교 방역 집중 지원(7.30. 기준)
- (기숙사・학교버스) 특수학교의 안전한 기숙사・학교버스 운영을 위해 밀집도 완화 및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 특수학교 기숙사(33개교 운영) 평균 밀집도는 2.9:1, 특수학교 학교버스(187교, 782대 운행) 중 661대(84.5%) 밀집도 조정 운영

■ 향후 과제

- '2학기 학사 운영 계획' 발표(8.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리 4단계까지 철저한 학교 방역을 통해 특수학교(급) 안전한 전면등교 유지
- 장애학생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가족 지원 강화

6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특수교육 교원의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결과 공표를 통해 특수교육의 성과 분석,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고 조사 품질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학술포럼, 종단조사 패널관리 및 졸업 후 생활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시대・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자폐성장애 검사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검사도구 및 검사요강을 개발하고 있음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종료에 따라 사회 환경 변화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장애학생 교육격차 심화 방지를 위한 장애유형 및 교육환경별 맞춤형 교육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학생 학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특수교육의 질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를 위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양육・교육정보 제공 및 활용 자료 개발을 위하여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 운영(온맘 사이트) 및 장애학생 부모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한 '2021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발간'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및 인력,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2021년 5월, '코로나 이후 시대, 장애학생 미래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0월, '코로나 이후 시대, 장애학생 미래교육의 국제동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2021년 5월, 특수교육 교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의욕 고취 및 우수 논문 발굴 확산을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28권 제1호를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518개 기관)에 배부함
- 2021년 3월과 6월, 현장 사례 및 정책 홍보를 통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현장특수교육 제28권 제1호, 제2호'를 발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유・초・중・고 특수학급 등(12,000개 기관)에 배부함
- 국내외 특수교육 관련 기관 및 방문자에게 우리원 안내, 역점 사업 및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국・영문) 발간 및 SNS(유튜브, 팬밴드 등)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 80〉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실태조사	•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후속조치) • 국립특수교육원 자폐성장애 검사도구 개발(1/2년차)	469
특수교육 정책연구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기초 연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체제 연구 •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40
특수교육 기초자료 발간	• 2021 특수교육통계 발간 •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25
특수교육 학술교류 및 홍보	• 제28회 국내세미나 • 「특수교육연구」 제28권 발간(연 3회) • 「현장특수교육」 제28권 발간(연 4회) • 국내외 교류 협력 • 국립특수교육원 홍보(리플릿 발간 및 SNS 운영 등)	304
사업관리 및 대외업무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협의회 운영, 2020 회계연도 특수교육 성과분석	36
계	**조사 2건, 연구 3건, 사업 4건, 행사 2건**	**974**

향후 과제

-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Ⅴ) 공표에 따른 개선 과제의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Ⅵ) 예비조사 및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Ⅵ) 반영 및 관리
- 국립특수교육원 자폐성장애 검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으로 현장 적용도 높은 검사도구 및 검사요강 제작, 온라인 채점시스템 구축
- 코로나 시대 이후 특수교육 현장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특수교육 기초연구 수행
- 장애자녀 부모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온맘 사이트) 운영의 내실화와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실시간 온라인 방식의 국내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제3호' 및 '현장특수교육 제28권 제3호, 제4호' 발간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최신 정보 제공
- 유관기관과 교육 현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강화를 통해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현장성 강화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발, 교과용도서 개선 방안 마련,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 지원 등을 위해 6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개발,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시각장애 학생용 대체교과서 제작 지침 및 적용 방안,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적용 분석 및 개선 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장애학생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방안,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및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도서(교과서, 지도서) 보완 및 장애 유형・특성 등을 고려한 보조 교재*를 개발하고 있음

  * 청각장애학생・시각장애학생・중도중복장애학생(청각중복장애) 보조교과서

- 특수학급 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특성 등을 고려한 학생 및 교사용 수업 지원자료(중학교・고등학교 음악・미술)를 개발하고 있음

- 특수학교(급) 학생의 교육과정 교과 연계를 위한 학생 및 교사용 보완자료(교육과정 재구성)를 개발하고 있음

- 시각장애학생 및 교사에게 우수한 품질의 대체교과서, EBS 방송교재, 학습 참고자료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대체자료(점자, 확대, 음성) 제작, 품질 관리 등 대체자료 발행・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보급된 특수교육 교과용도서(203책 전자저작물 71종)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현장 교사 중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항을 검토하는 등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고 있음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하여 자유학기(년)제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3 · 81〉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 교과서 관련 사업

구분	과제명	종수(부수)
교육과정 · 교과서 기초 연구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	1종(150부)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1종(150부)
	• 시각장애학생용 대체교과서 제작 지침 및 적용 방안 연구	1종(100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적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1종(600부)
	• 포스트코로나 대비 장애학생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	1종(450부)
	• 시청각장애학생(Deaf-Blind)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종(100부)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개발(3/4년)	6종(650세트)
	• 청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1/3년)	4종(각 550세트)
	•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4/4년)	5종(각 640부)
	•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청각중복장애)	5종(500세트)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 · 학습자료 개발(중 · 고 음악 · 미술)	8종(각 500부)
	•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교수 · 학습 보완자료 개발(교육과정 재구성)	9종(각 840부)
현장 지원 업무	• EBS 방송교재 대체자료 제작	-
	• 시각장애학생용 대체자료 제작	-
	• 시각장애학생용 대체교과서 발행 · 공급 지원	-
	• 교육과정교과용도서 현장 안착화 지원 1) 개별화교육 및 나이스(PAPS-D 포함) 운영 지원 2)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운영 지원 3) 교과용도서 수정 · 보완 및 모니터링단 운영	-
합계	**43종 개발, 19,660부 제작 · 보급**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를 통해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차기 교육과정 개정 방향, 주요내용 제시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 지원 방안 및 기초자료 제시
- 장애유형 · 특성 등을 반영한 보조교과서, 교수학습자료, 보완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관련 연구, 개발 자료에 대한 현장 설명회, 활용 세미나, 홍보 등을 통한 현장 활용도 제고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 · 직업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 지원 및 학교(급)별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종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 조사 필요에 따라 시・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현황, 인프라, 지원 내용 등을 파악하여 장애학생 사회참여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있음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 학교급 등을 고려한 진로상담 내용, 장애학생 대학 진학 정보 등을 포함한 진로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과 직업 기초 지식・기술 습득을 위한 교과 연계 학습자료 요구에 따라 '직업과 자립' 영역의 시각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하고자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도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상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진로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및 기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고용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확대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 주최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소프트웨어교육 제공을 위한 '장애학생 TOMOROAD School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지원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학부모용 '진로레터'를 국립특수교육원 '현장특수교육'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음
–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전공과 담당자의 요구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있음

〈표 3·82〉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2/3년)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조사 도구 개발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용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정책연구)	230
자료 개발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직업과 자립)	129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확대 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 사업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학부모용 '진로레터' 발간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 점검	120
계	**연구 3건, 자료 개발 1건, 현장지원 사업 7건**	**479**

향후 과제

-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직무내용에 따른 장애학생의 미래사회 적응 역량 강화 및 학교급별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연계를 위해 초등학교용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과 다양한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 지역 및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지원 사업 확대 추진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 조사용 교육자료(영상)를 개발하고 있음
-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치원 대상 학부모 안내자료・교사용 안내자료・장애공감활동 지원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201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점검 결과 수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교육 실태 분석 시 자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매뉴얼을 보급함
- 장애학생의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 관련 언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은폐 및 축소 방지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관련 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수상작은 학교, 장애인권 유관기관의 장애인식개선 자료로 활용 및 전시회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표 3 · 83〉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인권보호 관련 연구 · 자료 개발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 조사용 교육자료 개발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유치원용)	298
인권보호 현장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컨설팅, 워크숍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인권지원 관련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안 접수 등)	17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 장애공감문화 조성 관련 사업	20
연구 · 교육자료 개발 2건, 현장지원 사업 4건		**335**

향후 과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21년부터 실시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원활한 지원
- 범국민 대상 및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의 내실화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 현행화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개의 연구와 2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의 대학 교육여건 개선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통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 연구'를 실시함
-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개선 요망' 등급의 대학과 '평가 미참여' 대학의 차기 평가 준비 역량 및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을 실시함
- 장애학생 고등교육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 협의회 등)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장애학생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음

〈표 3 · 84〉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 연구	50
협력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 • 장애학생 고등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50
계	**연구 1건, 협력 2건**	**100**

■ 향후 과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요망' 대학 및 희망대학 컨설팅 지원 확대
-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실시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학교(급) 교원, 일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등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42개 과정 2,149명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원격연수는 연중 54개 과정을 상시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7월 말 기준 직무연수, 전문교육 등 집합(온라인 비대면 포함) 20개 과정에 7,439명이 이수하였으며, 원격연수는 54개 과정에서 15,157명이 이수함

〈표 3・85〉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 인원	대상
직무 연수	특수교사의 원격수업 실행 역량 강화(1기)	474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교사의 원격수업 실행 역량 강화(2기)	493	특수학교(급) 교사
	2015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평가 방안 활용	296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상담역량 강화(기초)	15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상담역량 강화(심화)	50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특수학교 관리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238	특수학교 관리자
	유치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	400	유치원 원장(감)
	유치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2기)	290	유치원 원장(감)
	초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	1,417	초등학교 교장(감)
	초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2기)	703	초등학교 교장(감)
	중・고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	1,021	중・고등학교 교장(감)
	중・고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2기)	515	중・고등학교 교장(감)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기본)	12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심화)	16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운영 지원 방안	572	유치원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 역량 강화	231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장애학생 인권교육 핵심교원 역량 강화	384	장애학생 인권보호 담당자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시스템 이해 및 활용	21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온라인 교사
전문 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장애공감 문화 조성(기초)	89	인권지원단 경찰위원(신규)
	특수학교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공감 문화조성	63	일반직 공무원
계		7,439	-

〈표 3 · 86〉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단위: 명)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연수	(신규) 장애학생 국어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59	교원 등
	(신규) 장애학생 수학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48	
	(신규) 모두를 위한 통합학급 운영 기본	46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기초	245	
	교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도 역량 입문	909	
	특수교육 수업전문성 향상	104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기초	347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심화	75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207	
	장애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첫 걸음	72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	141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유치원)	525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초등학교)	1,022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중학교)	608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고등학교)	369	
	NEW! 장애학생의 인권과 성교육	1,769	공통
	한국수어 이해와 활용(기초)	128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116	교원 등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52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39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10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전문성 강화	95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304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107	공통
	(신규)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의 실제	23	교원
	(신규)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실제	43	
	관리자를 위한 통합교육 역량 강화	1,243	관리자
	영상의 시대! 교육 크리에이터를 꿈꾼다	37	교원
	당신을 빛나게 할 스피치 전략	84	
	영화로 보는 교사의 삶	112	교원 및 전문직
	그림책으로 마음 열기	189	
	쉼있는 행복놀이	36	
	교육과정 속에 퐁당 빠진 SW교육	34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1년을 알차게! 학급행사 길라잡이	96	교원 및 전문직
	초등저학년을 위한 한글과 셈하기, 쉽게 제대로 가르치기	103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 혁신하기	18	
	15色 보석같은 수업 레시피	175	
	도란도란 생태놀이 왁자지껄 우리 학급	53	
	놀이로 즐거운 수학	87	
자율 연수	(신규) 특수교육 보조인력 전문성 강화 기본	1,759	공통
	(신규)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전문성 강화	730	
	(신규) 슬기로운 장애인식개선 생활	59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고급	1,355	
	2018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 실시방법의 이해	135	
	보조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61	
	(학부모)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85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97	
	시각장애학생 보행지도	84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이해	79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46	대학담당자
	부모의 자존감	55	공통
자격 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전환 연수	11	해당 교원
	특수교육 희소교과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연수	67	
	특수학교(중등) 이료부전공 자격 연수	51	
계		15,157	-

* 대상 구분: 교원 등(교원, 교육전문직, 보조인력), 공통(학부모 등 일반국민 포함)

향후 과제

- 특수교육 정책 추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관계자 연수 강화
- 특수·일반교육 교원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 지원 인력 다양화에 따른 지원 범주별 맞춤형 연수 확대
- 수요자의 연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비정형 연수 등 연수 방법 다양화

7)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조공학 연구,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3개의 내역사업에 대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2020년 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78.7점(목표 78점)과 접속 횟수 2,662,838회(목표 1,000,000회)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

〈표 3·87〉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사이트 명	지원 내용	주 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자료 – 장애학생 클립형 동영상 수업자료 제공 – 수업지원 콘텐츠 및 수업 자료 제공 •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탑재, 관련 정보제공 – 대한민국 1교시, UCC 탑재 및 홍보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EBS 등) 제공 – EBS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 학습참고서 대제자료 제공 •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 장애유형별 온라인 학습 자료 – 기본 교육과정 및 공통·선택 교육과정 운영 자료 –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외부기관의 교육활동 지원 자료 공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는 학교 및 가정이나 병원 등 학교가 아닌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로 국어, 수학 멀티미디어 콘텐츠 8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인 에듀에이블(eduable.net)을 통해 지원 예정

- 장애학생이 코딩(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PBL(Project Based Learning)기반 SW코딩 및 AI 교육자료 2종을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학생 교수·학습 및 학교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1종 개발 및 특수교육현장에서의 특수교육 정보화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예정
- 코로나 19 관련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관·기업 협력 사업으로, 장애 청소년 소트프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복코딩스쿨 운영 지원(SK텔레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3·88〉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 장애학생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개발 • 장애학생 교육용 보조공학 적용 수업사례 연구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1,266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 발달장애학생 기본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 지체 및 발달장애 실감형 자료 개발 • AI 기술기반 음성인식 자막지원 프로그램 개발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운영 •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구축·운영	7,500
기타	• 학술정보관, 전산실 운영 •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운영 지원	503
유관기관 협업	• 장애 청소년 행복코딩스쿨 지원(SK텔레콤)	-
계	**연구 2건, 개발 9건, 사업 3건, 행사 1건, 협력 1건**	**9,269**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순회교육, 가정이나 병원 등 학교가 아닌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지속 확대 필요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여가생활 기회 제공, 교원, 대학생, 일반인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전국 규모 대회 운영 지속 필요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제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교육환경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영역별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개발
  -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장애학생 원격교육 등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플랫폼 및 다양한 과목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의2)
> - 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 - 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 - 연구・개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도구 개발
> - 교육: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

● 장애인의 학습능력 및 장애 수준을 고려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4종 및 교재・교구 2종, 온라인 콘텐츠 1종,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개발 36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우수사례 각 1종 개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과 장애인 보호자 지원 체계 구축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제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2.30.)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저학력 장애성인의 학력 인정 기회 확대를 위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4회)'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력 향상 및 직무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3회)'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단위의 기초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통해 15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15개 기초지자체(연합 팀)〉

경기 김포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이천시, 대구광역시 연합(수성구, 달서구), 부산광역시 연합(동구, 동래구), 부산광역시 연합(서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연합(연제구, 수영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충북 충주시

〈표 3 · 89〉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 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교재 · 교구 개발 • 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개발 • 장애인 보호자 지원 체계 구축 기초 연구 • 지역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연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집 발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2,860
교육 · 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20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39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150
협력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 운영	6
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500
센터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및 물품 구입 등	43
계	**연구 · 개발 9종, 연수 2건, 조사 1건, 협의회 1건, 현장 지원 1개 등**	**4,618**

향후 과제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 개발 보급 확대
-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개발에 따른 장애인 문해교육 강사 양성 교육 실시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평생학습 자원(장애인 지원 기관,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등)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시 · 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부록 I

- 서울특별시교육청 / 141
- 부산광역시교육청 / 151
- 대구광역시교육청 / 165
- 인천광역시교육청 / 174
- 광주광역시교육청 / 185
- 대전광역시교육청 / 198
- 울산광역시교육청 / 21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31
- 경기도교육청 / 248
- 강원도교육청 / 262
- 충청북도교육청 / 274
- 충청남도교육청 / 287
- 전라북도교육청 / 301
- 전라남도교육청 / 308
- 경상북도교육청 / 324
- 경상남도교육청 / 33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47

서울특별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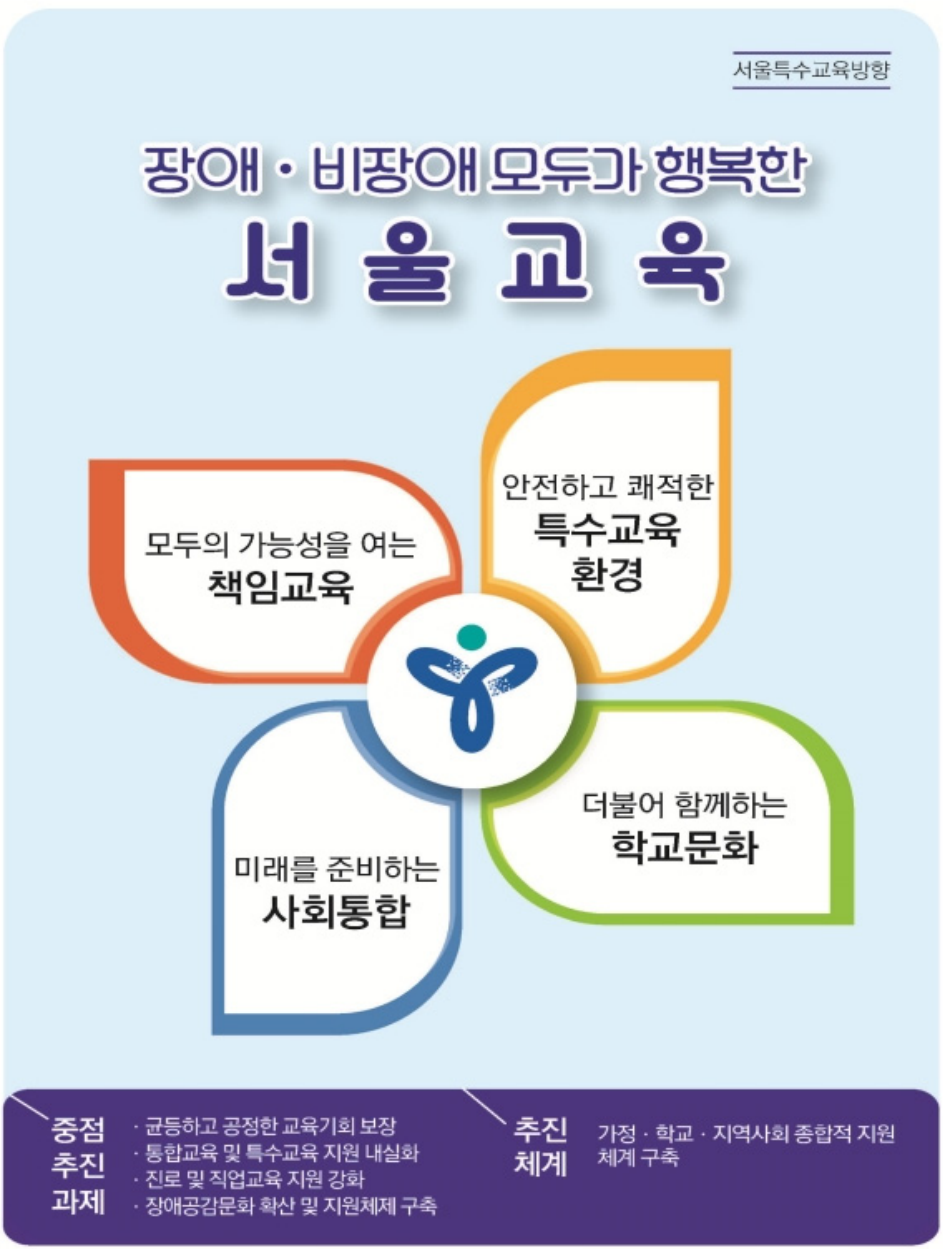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2021 특수학급 설치 현황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20	104	110	456	761	204	297	92	259	856	1,427
2021	117	126	464	774	207	302	95	266	883	1,468
증감	**↑13**	**↑16**	**↑8**	**↑13**	**↑3**	**↑5**	**↑3**	**↑7**	**↑27**	**↑41**

2)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 장애유형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수학교 설립・운영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 다양화 추진

3)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안교육 위탁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핵심영역 역량 강화 연수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조직・운영

2)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3)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심리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3)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점검

나)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 중점 운영학교: 초·중·고 11교
다)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센터 운영: 6교
라)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총 11단

2) 장애유형 및 지역 중심의 통합교육 지원 확대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더불어통합공동체
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원 지원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3)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5) 특수학교(급) 장학 지원 내실화

라.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2)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학생 방문 순회교육
가) 복지시설 내 파견학급 설치 운영 학교: 서울정민(영락애니아의 집)
나) 가정, 복지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 방문순회교육 운영 학교: 서울경운, 서울나래, 서울다원, 서울서진, 서울정문, 서울정민, 서울정애, 서울정진, 서울새롬, 연세대재활, 한국우진
2)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3)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2)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
   가) 신규 채용 특수교육실무사 대상 30시간 원격 직무연수 의무 실시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확대
3)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4)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5)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
   가) 학교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 편성 권장
   나) 교육지원청별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2)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2) 병원학교 운영 지원
   ○ 연세암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원자력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3)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 지원
4)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5)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1센터
2)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 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통합교육지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5) 지역 중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6)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가)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중부, 강서양천)

나)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동부, 동작관악)

다) 지체중복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북부)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2) 가족지원

○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3)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장애특성에 따른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나) 기기 특성에 따라 교육(지원)청 공동구매 또는 학교별 구입 후 대여

4) 통학지원

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학교 지원

나) 특수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2) 특수학교 체육활동 지원 강화

3)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2)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체계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3)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활성화

가)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나) 지역사회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현장실습 실시 및 취업 지원

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학교

연번	관할청	학교명	운영 프로그램	지정연도
1	서부	상암고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운동화빨래방	2010
2	중부	경복고	대인서비스, 바리스타, 제과・제빵, 디저트과정, 가죽공예	2011
3	강동송파	문현고	제과・제빵, 플로리스트, 진로설계, 도예	2013
4	북부	서울문화고	바리스타, 전환교육(면접 및 이미지메이킹), 제과・제빵, 캘리그래피	2013
5	강남서초	경기고	바리스타, 사무보조, 진로직업프로그램, 귀금속공예	2014
6	남부	관악고	바리스타자격증, 목공, 자전거정비, 랩아카데미	2017

4)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업하여 설립・운영하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체험관

나)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공과 발달장애학생에게 개별요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체험과 직업훈련 실시

다)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모델 제시 및 기업이 참여한 리얼세팅 직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지원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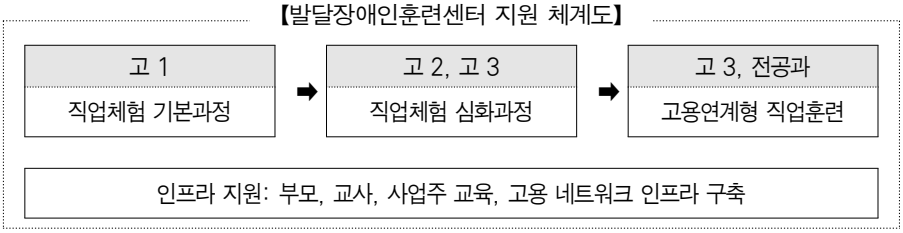

5)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

가) 대상: 특수학교(급) 고 3・전공과 대상

나) 희망일자리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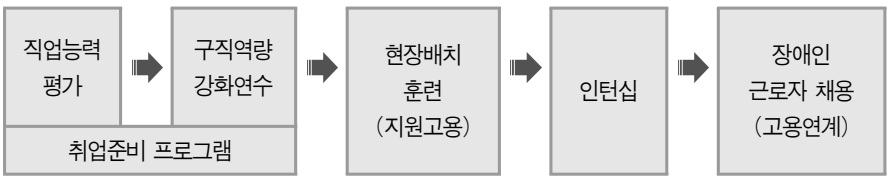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2)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이해교육 강사풀 구축·활용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11청
   다)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 배포·활용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4) 장애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5)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6)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7) 행동중재특별지원단 운영
8)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 확산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특수학교(급)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계획 수립 시 안전계획 포함
4)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5)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

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배치

마.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급)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비 차등 지원(급당 2,000천 원~3,000천 원)
2)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및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20학급 운영, 공・사립 특수학교: 29개교 92학급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원 확충 및 역량 강화
2)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 지원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운영비: 유치원(학급당 4,000천 원), 초・중・고(정액분 학급당 3,000천 원, 차액분 차등 교부)
   나. 특수학급 신・증설비 지원(유치원 20,000천 원, 초・중・고 40,000천 원)
   다. 특수학급 이전비: 학급당 20,000천 원 내외(유・초・중・고)
   라.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학급당 6,000천 원~20,000천 원
   마.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직업교육비
      ○ 지원기준: 학급당 2,000천 원 내외(학급 수, 학생 수 대비 차등 지원)
4)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학교명(가칭)	예정지	장애영역	개교 예정
서울동진학교(가칭)	중랑구 신내동 일원	지적장애	2024. 9월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조공학기기 활용 역량 강화 연수	물량	250	명	50	50	50	50	50
	예산	2,000	천원	400	400	400	400	400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축 및 운영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학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2019	2020	2021	2022
통합교육지원단	11	단	5	11	11	11

나.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 내실화 지원

1) 유아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긍정적 행동지원 안착 등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2) 유아특수학교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 연구

3.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 강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물량	200	명	40	40	40	40	40	인턴십
	예산	625	백만원	85	105	125	145	165	-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학교로 찾아가는 다양한 장애이해교실 운영

세부사업명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물량	217	교	33	38	43	48	55
	예산	150	백만원	20	33	30	35	40

부산광역시교육청

Ⅰ 부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방향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4)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6)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7)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8) 치료지원
9) 통학지원
10)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12)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지원
14)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충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3)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4)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5)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6)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7) 특수교육 연구 활동
8)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9)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10)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지원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프로젝트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1) 장애공감문화 조성 '뻐울림' 교육활동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운영
2)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특수교사 배치 (20명)
3)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 순회교육 및 보조인력 지원
4)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구축・운영: 유치원 9개원
5)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점유치원 5개원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홍보: 연중
2)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연중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실시: 연중
4) 특수교육대상 영아학급 운영: 특수학교 6교(12학급)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1) 전문적 진단·평가 지원체제 구축: 6개 팀(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2) 진단·평가 지원체제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 진단·평가위원 전문가 연수(연 1회)
3)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 '21. 7월~9월
4)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수요조사(6월),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9월)

라.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관리(평가조정, 수행평가, 원격수업 등) 안내
3)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4)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부서와의 협업 강화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배치
   가) 인력현황: 총 87명(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8명, 순회교사 65명, 행정직 8명, 사회복무요원 2명, 기타인력 4명)
   나) 거점지원센터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발달장애),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시각장애),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청각장애)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순회교사 근무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가) 근무 여건: 행정기관 복무 준수, 학생 방학 기간 활용 개인 연찬 기회 확대
   나) 인센티브 부여
      (1) 전보 시 급지점(최고점) 부여 및 전보가산점 부여
      (2) 업무겸임 순회교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가산점 및 교육전문직 전형 시 별도 가산점 추가 부여
      (3) 순회교육 유공교원 표창: 매년 7명
3)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과 정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과 통합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센터명	부산특수교육 지원센터	서부특수교육 지원센터	남부특수교육 지원센터	북부특수교육 지원센터	동래특수교육 지원센터	해운대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색사업	진로·직업교육	장애영유아교육	지체장애교육	발달장애교육	시각장애교육	청각장애교육

4)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 실시: 치료기관(279기관)

나)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복지관 등(24기관)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8기관(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 등 유형별 2기관) 및 인형극 공연 단체 1기관

라) 지역사회 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원: 고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대상학생 학교생활기록 유의사항 안내: '21. 1월

2) 교육지원청 순회교육 교사 충원: 3명(유치 3명-북부 1명, 해운대 2명)

3)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상반기 교육(지원)청별 자체 연수(3월), 하반기 '21. 8월

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병원학교(3교, 월평균 15명) 및 원격수업 지원(월평균 115명)

2) 건강장애학생 지원 담당교사 연수 실시: 상반기(계획 및 가이드북 안내), 하반기 '21. 9월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5교(초 4, 중 1), 컨설팅(연중)

아. 치료지원

1)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기타 관련서비스 등 11개 영역 지원

2) 지원방법(대상자 수): 치료지원카드시스템(마중물카드)을 통한 지원(3,724명)

3) 치료지원기관 현장점검 및 지원 강화: 치료지원 전담팀 운영(6팀, 총 16명)

자. 통학지원: 학생, 학부모 1일 최대 2회 지원

차.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745명(교육청 지원 613명, 자활센터 지원 19명, 사회복무요원 113명)

카.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1)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품목별 보조공학실 운영(총 3실)

2)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와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리, 세척, 소독 연계

3)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 비치

4) 장애유형별 거점 보조공학기기 대여시스템 구축(홈페이지)

타.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안내: 국립특수교육원(이얍, 에듀에이블), 교육청 홈페이지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자료지원시스템(http://bsesc.pen.go.kr)

파.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기관연계 찾아가는 가족 지원(20가족), 장애학생 가족상담(30가족)

하.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확충

1) '21 특수학급 신(증)설: 11학급(유치원 5학급, 초 3학급, 중 2학급, 고 1학급)

2) '22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 '21. 6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가) 교육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1)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

(2) 지역여건,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 반영 노력

※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와 관련한 학사운영 방안 마련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과군(별) 50% 범위 내 시수 감축,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2교)

(2)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1팀

라)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1)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1교, 진로 집중학년제 운영 1교

(2) 현장 및 실습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운영

(가) 직업교육 특성화 지원: 특수학교 2교(부산해마루학교, 부산혜원학교)

(나) 현장중심 전공과 실습 지원: 특수학교 9교(38학급)

마) 교육활동 전반에서의 인성교육

(1) 1학교 1인성 브랜드 실천 학교별 인성교육계획 수립·운영

(2) 인성교육중심 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3) 전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연 4시간 이상 이수

바) 학생자치 활동 강화 및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1) 교육과정에 학생 자치활동 시간 확보 권장(월 1회 이상)

(2)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 교육

사) 문화·예술·체육활동 내실화

(1)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정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 문화·예술·체육 중심의 1인 1기 및 동아리 활동(특수학교(급) 43교 지원)

(3)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함양하는 '예술 체험의 날' 운영

(4) 단위학교 자율체육프로그램 추진 권장

(5) 1인 1종목 연간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통합교육 지원 체제 강화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1) 단위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일반학교 교육과정 포함 편성·운영

(2) 2021 특수학급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관내 전체 특수학급(600학급)

(3)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고(46지구)

(4)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통합교육 내실화 노력

(가) 학생 수준에 알맞은 통합교육 수업 참여 계획 수립·운영

(나) 장애인식개선 교육활동: 학기별 1회 이상

(다) 개별화교육지원팀 및 통합교육 협의회 구성·운영: 학기별 1회 이상

(5)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

(가) 교재·교구 구입비: 급당 800천 원

(나) 특수학급 운영비: 유(1,997천 원), 초(2,358천 원), 중(2,918천 원), 고(3,495천 원)

나)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1) 학생 수준에 맞는 통합교육계획 수립: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학교(632교)

(2)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전담부서 지정 및 통합교육 협의회 운영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 5개원

(나) 정다운학교 운영: 연구학교 2교(문현초, 엄궁중), 선도학교 1교(민안초)

(다)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6개 지원단 57명

(4) 통합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학기별 1회 이상(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과 병행 가능)

(5)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우선 배정 노력

(6)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적정 배치 및 학생 수 감축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안내: '21. 1월

나)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포함하여 작성

2) 개별화교육 운영

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편성·운영

나) 국정 교과용 도서 및 학교(급)별·교과별 프로그램 자료 활용

다) 개별화교육지원 컨설팅: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활용

3)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수립·운영

가) 개별화교육지원팀과 병행하여 긍정적 행동지원팀 구성

나)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및 가이드 북 활용: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작(2014)

다)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1)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 15교, 교당 2,500천 원

(2) 특수학급 긍정적 행동지원: 현장지원단(20명), 외부 자문단(10명)

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운영 지원
   가) 자유학년제 운영: 13교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지원단' 구성·운영(16명)
   다)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계획 단계 컨설팅 ('21. 2월, 13교)
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가) 자유학년제 활동 운영 내실화
   나)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교과연구회 운영(13팀)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나)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다) 학교별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라. 특수교육 수업 개선

1) 학생참여중심의 수업 설계-실천-나눔
   가) 학생의 삶이 연계되는 수업 설계
   나) 학생의 장애특성과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수업 실천 및 평가
      (1)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참여 중심 수업
      (2) 수업활동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다)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수업 나눔
      (1) 학기별 1회 이상 교내 수업공개
      (2) 동료와 협업하는 자발적 수업 나눔 확산
      (3) 수업중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2)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혁신
   가)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 및 활성화
   나) 블렌디드 러닝 학생참여중심 수업 운영
3) 특수교육 연구대회 참여: 전국 특수교육 연구대회 참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주관)

마.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1) 특수학교 컨설팅 장학
   가) 학년 초 현장지원장학: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 협의('21. 4월, 15교)
   나) 학기 중 현장지원장학: 교육실습,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운영, 학교 현안 등 협의
   다) 학년 말 현장지원장학: 외부 전문가 참여 학교교육 성과관리, 자체자율장학 평가 등
   라) 특수학교 지구자율장학협의회 운영: 연 2회(수업공개 및 주제·사례 발표)
   마) 특수학교 내 자율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2) 특수학급 컨설팅 장학
   가) 특수학급 현장지원장학: 60교(본청 및 교육지원청별 각 10교)
      ※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노후 환경 개선 등 현안 협의 등
   나)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46개 지구
      (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수업공개, 사례발표 등 자율적 운영
      (2)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동료장학 컨설팅: 연 4회 이상
3) 학교컨설팅지원센터(http://consulting.pen.go.kr) 활용 컨설팅 장학
   가) 영역: 수업, 교육과정, 생활교육, 평가, 학교생활기록, 긍정적 행동지원 등
   나)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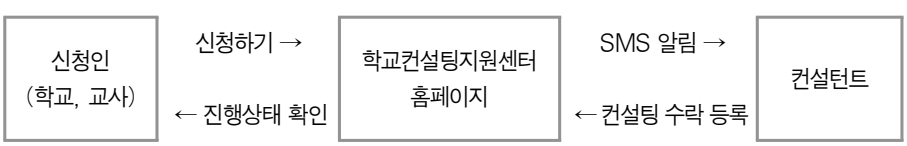

바. 특수(일반)교육 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 자체 연수 계획·운영
2)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통합) 교육 역량강화 연수
   나)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독려
   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확대

사. 특수교육 연구 활동

1) 특수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엄궁중(2년차), 문현초(1년차), 민안초(1년차)
2) 특수(통합)교육 연구활동 지원

가) 특수학교별 자유학년제 연구회 운영: 13교(13팀)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1팀
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연구회 운영: 1팀

3) 특수학교 교내 교육연구회 조직・운영
가) 과정별, 과목별 교사 자율연구회 조직, 운영
나)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등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

아.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1) 등교수업 이후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2) 특수학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질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27기관
3)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예・체 중심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장애특성을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수업공개를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6) 특수학급 학기 중, 방학 중 마중물 동아리 운영

자. 문화・예술・체육 강화

1)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체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특수학교 1인 1기 문예체 교육 및 특수학교(급)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지원
3)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등 1인 1기 배양

차.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지원

1)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27교 29학급)
2)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실환경개선비 지원(16교 20학급)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희망찬 내일을 여는 My JOB 프로젝트

1) 직업 역량강화 My JOB 프로젝트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부산혜성학교 학교기업 '꿈이룸', 부산해마루학교 학교기업 '에코해마루' 운영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프로그램: 기초작업기술, 직업직무기능, 11교 85명)
다) 직업교육 거점센터(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프로그램: 식품가공, 제과・제빵, 바리스타, 28교 185명)
라) 진로・직업 지원 연수 및 진로 상담

2) 기관연계 지원 My JOB프로젝트

가)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배치 2, 3학년(36교 132명)대상,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등 19개 기관, 25개 프로그램 운영

나)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일반고 3학년(3교 4명) 대상, 부산직업능력개발원(특화실무훈련(외식서비스 분야))위탁 교육

다) 기관연계 직업평가 운영: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40교 302명) 대상,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팀 연계

라)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급) 중, 고, 전공과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35교 423명), 에어부산 등 10개 직종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취업역량 강화 My JOB프로젝트

가)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24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현장실습 운영

나)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특수학교(급) 교원, 학부모(100여명)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취업 정보지원 연수 운영

다)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부산광역시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0개 기관(위원 13명) 참여

라)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취업연계) 및 취업지원 사업 운영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世울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

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계획 포함 안내

나) 학교·교육청 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다)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초·중·고 교과서 장애이해교육 내용 지도 자료 활용

라)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연 2회 이상(학기별 1회, 학년 초 권장) 의무 실시

마)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비 지원: 151교

2) '뿌울림' 교육활동

가) 찾아가는 '뿌울림' 장애이해교실 운영: 초, 중, 고 300학급

나) '뿌울림' 인형극 공연: 유치원 100개원

다) '뿌울림' 공모전 운영: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비장애학생(52명 교육감 시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실시: 60교

나) 교사, 학부모 대상 인권 및 성교육 연수: 연 2회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교육의 내실화: 인권보호 예방상담프로그램(36교), 비장애학생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60교), 찾아가는 인권보호 인형극(25개 유치원)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가) 인권지원단: 총 6단(시교육청 1단, 교육지원청 5단, 74명)

나)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실시: 연중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실천프로그램 운영: 3교(광일초, 덕문중, 부산중앙고)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급) 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수립: '21. 2월

나) 장애학생 학교 담당자(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운영

다) 장애학생 등·하교 시 보호자와 학생 안전 사항 인수인계 철저

라)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및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마) 장애학생 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가) 초등 1, 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

나) 7개 안전교육 표준안(33차시)에 따른 체험 중심의 안전한 교육 실시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필수 반영)등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

(1) 신고의무자(교직원, 강사 등) 교육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2)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 19.)과 예방주간 운영

(3) 매뉴얼에 따른 미인정 결석 학생(유아) 관리

3) 특수학교 안심 알리미 사업 지원

가) 특수학교 재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 알림

나) 위치추적 단말기 및 이용료 지원: 특수학교 13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홍보: '21. 11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21. 12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현장지원

1)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리단계 현장지원: '21. 11월

2) 특수학급 현장지원

가) 유·초·중·고 특수학급 현장지원: 학교급별 5교 지원, 고(10학급)

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6지구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 자유학년제 교실수업개선 수업나눔 축제: '21. 12월

2) 진로체험처 검증: '21. 11월

다. 특수교육 교실수업 개선 지원

1) 전국 특수교육연구대회 보고서 제출: '21. 10월

2) 특수학교(급) 수업컨설팅 지원

가)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수업컨설팅 지원: 수시

나) 수업컨설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결과 분석: '21. 12월

라. 특수교육 연구활동 지원

1) 연구학교(정다운학교) 운영 지원: 계획-실천-정리단계 협의회 운영

2) 교육연구회, 정책연구 등 연구 성과 제출 및 일반화: '21. 12월

3)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 발표회: '21. 12월

마. 특수(일반)교육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21. 10월

2)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21. 8월

3) 진단・평가위원 전문가 연수: ′21. 7월

4) 건강장애학생 지원 담당교사 연수: ′21. 9월

5) 특수교육교사 수업역량 강화 연수: ′21. 10월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연수 및 운영 지원: ′21. 9월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컨설팅 지원: ′21. 11월

다. My JOB 프로젝트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21. 12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찾아가는 '뿐울림' 장애이해교실 운영: ′21. 6. ~ 11.(초, 중, 고 300학급)

나. '뿐울림' 인형극 실시: ′21. 6. ~ 11.(유치원 100개원)

다. '뿐울림' 공모전 운영: ′21. 6. ~ 9.(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비장애학생)

라. 교사, 학부모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실시: ′21. 9월

대구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목표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추진 중점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현장친화형 '대구특수교육원' 개원 추진

가)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수직 증축 및 명칭 변경을 통한 대구특수교육원 개원 추진(2021. 12. 1. 개원 예정, 소속: 유아특수교육과)

나) 특수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 종합체험환경 구축·운영, 특수교육 토털 에듀케어 역할 수행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가) 문화예술중점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 교명: 대구예아람학교
- 규모: 23학급(학생 수용 인원: 154명)
- 개교: 2021. 3. 1.

나) 2021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운영

- 신설: 12학급(유 3, 초 6, 중 1, 고 2*)

  * 대구 최초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설(청구고, 오성고)

- 증설: 7학급(초 3, 중 1, 고 3)

다) 맘껏 놀이 중점 완전통합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 교명: (가칭) '대구인지유치원'
- 규모: 12학급(일반학급 6, 특수학급 6)
- 개원: 2022. 3. 1. 예정

라) 직업교육중점 특수학교 신설 추진(고등학교 30학급)

- 교명: 가칭 '대구이룸고등학교'
- 규모: 30학급(학생 수용 인원: 210명)
- 개교: 2022. 3. 1. 예정

나.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교육교원 연차적 증원

가) 2021년 공립 특수교원 74명 증원 배치

나) 사서 및 상담 전담인력,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다) 장애교원 지원,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업무 지원

가)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라)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1명 추가 배치

마) 문화예술 등 중점 운영학교에 관련 전공 특수교사 우선 배치

바) 장애교원 지원 보조공학기기 8명, 60,000천 원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 평가 안내

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및 기타 편의시설 지속설치로 Barrier Free 구축

2) 특수교육환경 개선

가) 특수학급 급당 신(증)설비 증액 지원: 급당 2,375만 원

나) 특수교육환경 리노베이션을 통한 교실 환경 개선
- 특수학교(급) 노후 직업관 환경개선 공사: 2교 3,954,376천 원
- 특수학급 리노베이션: 4교 272,000천 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30명)를 통한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 통합교육 지원, 문제행동 중재, 장애이해교육 등 실시

나) 교수,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특수교육지원센터별 5팀)을 구성하여 기본·정기 현장지원 강화

다) 통합교육지원실(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통합교육 전담실) 10개교 운영

라)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더불어 행복한 통합학급 만들기 208교 운영,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30교 운영

2) 대학 연계 특수학급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운영

가) 사업 기간: 2021. 4. ~ 2021. 12.

나) 사업 내용: 대구교육청-대구대학교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봉사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비특수교사 실습 운영비(교통비, 식비) 지원 등

* 특수교사 수업 보조,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원격수업 지원, 교수·학습자료 및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학습꾸러미 제작 지원 등

다) 지원학교: (1학기)** 17교(유 1, 초 13, 중 2, 고 1), 대학생 20명

** 2학기 특수학급 수요조사 후 지속적으로 예비특수교사 지원 예정

라) 지원예산: 90,000천 원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7개원 운영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22개교 운영

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3개소)
- 대구광명학교(시각장애), 대구영화학교(청각장애), 대구덕희학교(정서장애)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집합연수 3시간 이상 이수)
2)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 운영
3)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연구회 5개 운영
4) 통합학급 담당교사 10년 이내 15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참여
5)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교육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운영(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5호)
2) 특수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교당 2,000천 원 지원)
3) 특수교육 협력학습 지원단 교육과정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6시간)
4)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법적 이수 시간 적용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 재택 순회 및 병원학교 운영
2) 자료 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 지원 방법 등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운영 2교(성보, 보건)
   -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100,000천 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인력 지원 현황: 총 735명(실무원 556명, 사회복무요원 179명)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가) 원격연수 연 30시간 이상(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내 90시간)
   나) 자체연수 강화: 지원 대상학생 맞춤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다) 집합연수: 1, 8월 중 실시 예정(연 2회)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학기 초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원격수업 관련 내용 포함 작성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강화
   가) 병원학교 4학급(영남대학교병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운영
   나)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배치
   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지도를 위한 교과 전담교사 지원 및 특기·적성 교육 실시
   라) 병원학교별 건강장애 담당교원 연수회 실시 및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건강장애이해 증진
   마) 병원학교별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를 통한 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1:1 맞춤형 찾아가는 학교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운영
   나) 교과 선택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등 교육내용 다양화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시 선교육지원 등 교육 공백 최소화
   라) 스쿨포유 초등과정 화상강의시스템 구축·운영(교육청 내 위치)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5개소(교육지원청별 4개소,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노력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정원을 60명에서 81명으로 증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마) 감염병 상황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찾아가는 직업·체육프로그램 운영

바)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기능 강화(총 97명)

-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인권지원단 구성

※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23명, 내부위원-6명, 외부위원-17명)
대구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17명, 내부위원-6명, 외부위원-11명)
대구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16명, 내부위원-6명, 외부위원-10명)
대구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18명,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14명)
대구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23명,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19명)

- 더봄학생 중심으로 관할경찰서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활동
-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특별 지원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지원 강화

1) 학교기업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 운영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 확대(랜선 음악회 및 관공서 · 학교 등 전국단위 공연,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방안 모색)
2) 특수교육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분야 진로직업교육 지원
3) 고교 특수학급 연합 '빛솔합창단', 보명학교 '소리나무합창단' 등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4) 지역대학 연계 특수학교(급) 특수교사 문화예술교육 직무연수(실기)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도 역량 강화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 학년제 확대 · 발전

1) 자유학기(년)제 특수교사 교수 · 학습지도 역량강화 연수(10교, 학교별 운영)
2)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컨설팅 실시(자유학기제 1회, 자유학년제 1회)
3) 특수교사 자유학기(년)제 운영 역량강화 연수(2회, 전반기, 후반기)
4)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교원 연수 실시(1회, 후반기)
5)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0개 특수학교 전체
6) 진로체험버스 운영: 2교(예아람, 보건)
7)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지원: 6개 특수학교(남양, 성보, 예아람, 광명, 보건, 선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정착

가)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2교(남양, 선명)

나) 학교 간 진로·직업교육 중점 운영 2교(성보, 보명)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1교(보건)

라) 특수학교 2개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 5교 연합 학교기업 운영
- 대구성보학교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 취업 모색

마) 특수학교(급) 전공과 연구회 운영(중심교: 대구선명학교)

바) 진로·직업 업무 전담 지정

- 진로전담교사 특수학교 교당 1명 배치
- 현장실습 전담교사 배치(본청 센터 1명, 특수학교 교당 1명)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

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지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구)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나)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등 직업평가 협업

다) '학교 내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내실화

- 3개 공립특수학교 39명,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10명 적용
- 취업 전 직장 적응훈련, 사회 적응훈련 강화, 추후 사업체 취업으로 연계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총괄 위탁, 2개 복지관 수행기관 지정 운영

나) 고3,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현장 맞춤형 일자리 적용(연 24명)

4)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가) 중등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실기 직무연수 과정 개설(하계 방학 중, 10개 과정 예정)

나) 특수교사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실기 직무연수(전반기 7개 과정)

다)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수시 실시)

5)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운영 활성화

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 및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1학기 2,598명)

– 진로・직업, 제과・제빵 외 10과정, 특수체육 줄넘기 외 9과정 운영

나) 학교 내 장애학생 일자리 운영 협업(10명)

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양성과정 대상자 모집 및 취업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1) 유・초・중・고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

2) 교직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고용노동부), 장애인식개선 교육(보건복지부) 1회 의무 실시

3) 유・초・중・고 전체 학교 장애인식개선 교육 예산 운영(학교별 50만 원)

나.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공연활동 활성화

1) 대구교육의 자랑 특수학교(급) 연주단 및 합창단 홍보 강화(3개 팀)

– 맑은소리하모니카앙상블(대구성보학교),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빛솔합창단

– 그 외 특수학교별 특화 연주, 합창, 밴드 등 팀 운영 지원

2)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 대구학생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출연 기회 마련

3) 신문 및 뉴스 보도, 방송 출연을 통한 장애 공감 메시지 확대

4)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취업 도전 및 현장 인식개선 노력

5) 대구교육박물관 내 특수교육관 지속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1) 직업교육중점 특수학교 학교 설립 및 개교 준비(개교 겸임교원 구성・운영)

2) 맘껏 놀이 중점 완전통합 단설유치원 설립 및 개교 준비(개교 겸임교원 구성・운영)

3) 진로・직업 전문교사 양성 직무연수 실시(2018~), 문화예술 역량 강화 교원 직무연수(2019~),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직무연수 실시

4)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5)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설립 추진 노력

나.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 통합교육 업무 지원 교사 배치 추진
2) 중등특수교사 진로·직업 연수 과정 개설 및 만족도 조사
3)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의 계속적 배치를 통한 찾아가는 통합교육 실시
2) 행동분석가, 교수, 대학연계 등을 통한 '행동중재지원센터' 구축·운영
3)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 학교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협력 모델 개발 및 특수·일반교사의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관리자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 추진
2) 특수교육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수평가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나. 관련 기관 협업, 4차 산업 관련 분야 접목 추진

다. 특수학교(급) 전공과 연구회 자체 컨설팅 및 협업 강화, 안전한 현장실습 강화

라. 진로전담교사, 현장실습 전담교사 운영 활성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나.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다.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연주회 및 정기연주회 개최, '빛솔합창단'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방향

1. 기본 방향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현

2. 추진방향

가. 장애유형별 특성·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다. 예방중심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라.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특수교육 배움중심 수업지원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나. 통합교육 지원 체제 강화

1) 무장애학교 조성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2) 장애이해교육 강화
3)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4)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2) 장애학생 인권존중 교육
3) 더봄학생 및 위기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4)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강화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2) 순회 특수교육 지원
3) 장애학생 직업전환 프로그램 운영
4)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유형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8)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

마.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2) 진로·직업교육 특성화·전문화
3)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
4) 현장실습 및 일자리 사업 운영 확대
5) 교사 및 학부모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4)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가) 특수학급 신증설(43개): 유치 13학급, 초등 23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1학급
   나) 특수학급 노후화 환경개선(31교): 유 2원, 초 20교, 중 5교, 고 4교
   다) 특수학교 전공과 증설: 1교(인천서희학교) 2개

2) 특수학교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가) 예술특화직업교육 운영: 1교

나) 공립 특수학교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4교, 8학급

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향상

가) 특수교육교원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 특수교육 배움중심 수업지원단 활동: 특수학교(급) 특수교사 69명
- 특수교육교원 교과지도, 자유학년제,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 특수교육 수업컨설팅: 멘토-멘티가 만나는 특수교육 수업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 공립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6교 6명, 5시간
- 공립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컨설팅: 컨설팅 교당 각 1회
- 장애학생 행동지원 직무연수: 1회, 30명(6시간)

다) 특수교육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교간형 35개, 642명

2) 특수교육교원 심리상담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돋움터 연계 지원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2) 장애영역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청각・시각) 중심 지원: 61교 69명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 지원(순회) 특수교사 확대 배치: 6개 센터 36명 증원

2) 대학연계 장애학생 교육지원: 총 17명(교육봉사 5명, 근로장학 12명)

3) 통합교육지원 협의체 구성: 학교 관리자 및 교원, 유관 외부 전문가 등 6개청 137명

4) 다름다운 통합교육 거점 학교: 5교(유 2, 초 2, 고 1)

5) 통합교육 활성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1교(동인천중)
6)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교육(지원)청별 1개단, 총 6개 지원단 운영
7)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상담 실시: 3교 5명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찾아가는 청각장애 이해교육: 45교
2) 장애이해(인권) 감수성 up 톡톡 북콘서트: 45명
3) 통합체육(디스크골프지도자과정) 직무연수: 30명
4) 일반학교 교원대상 연수실시: 10과정 888명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코로나19 대응 탄력적 학사운영 컨설팅 위원 위촉(2명)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안내
2)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교사 1명 지원센터 배치
   - 중도중복장애학급 거점학교(1교)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및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도모
   -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수업나눔행사(1회), 수업지원단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2시간)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지원 확대
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확대: 특수학급 미설치교 지원 방안 다양화, 특수학급 설치교 지원 강화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도모: 교과 학습 및 정서행동 지원 자료 개발
4) 특수학급 전면등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순회수업 지원: 총 121교(유 50, 초 38, 중 21, 고 12)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설치 확대: 초 7학급, 중 3학급, 고 5학급, 특수학교 8학급
2)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거점학교 운영: 연수초 1교
3)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전문 보조인력(간호사): 7교 10명 지원
4) 특수교육-치료(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13명

5)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지원: 5교 10명, 병원 1기관 연계(20,000천 원)
6)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북 개발 연구용역: 1건 (30,000천 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606명
2) 특수교육 원격연수 지원: 2시간(예정)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내실화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강화

아. 건강장애학생 지원 강화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나) 전문인력 지원: 병원학교 파견 특수교사 1명, 초등 원격수업 특수교사 3명
   다) 원격수업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초·중·고 81명
2) 건강장애학생 적응 지원
   가)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지원(8명), 학습지원(11명), 공예프로그램 (22명), 원격 악기교육(3명)
   나) 병원학교 교사 및 일반학교 담임교사 대상 컨설팅: 3회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완료: 2개 센터(남부, 동부)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 특수교사 36명 증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월 1회
3)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개(자폐, 청각, 시각, 장애 영·유아)
4)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5개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초·중·고 대상 82개 운영
2)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9교 585명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1) 인천 중학교 과정 설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운영: 9교
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온라인 컨설팅 운영: 9교
3) 자유학년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 조직: 7팀
4) 자유학년제 운영 가이드 개발·보급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특성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가)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4교
   나) 진로인식·탐색·설계의 단계별 진로 성장을 위한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 1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자립생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4교
   라) 예술 분야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예술 특화교육과정 운영: 3교(미추홀학교: 발달장애, 음악,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 음악, 인천인혜학교: 발달장애, 미술)
   마) 특수학교 학교기업 마을연계 직업교육을 통한 운영 내실화: 1교(미추홀학교)
   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내실화: 3교(티마이스터 자격증반 외 13개 직종 직무교육, 학부모·교사 진로·직업역량 강화 교육)
   사) 전공과 설치 확대 및 개별 맞춤형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교육과정 운영(특수학교 전공과: 8교 41학급, 일반학교 전공과: 2교 2학급)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일자리사업 활성화
   가)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체도제교육형현장실습' 확대 운영: 상반기 115명
   나)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4개 수행기관, 상반기 24명
   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및 학교 내 일자리 참여 강화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CJ로지스틱스 연계 물류산업 현장실습 운영: 5명
3)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가) 인천 교육·고용·복지 진로·직업지원 협의체 구축(13기관) 및 협의회 개최(4회)
   나) 물류산업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교육청－공단－CJ택배－SL로지스틱스

다) 진로・직업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찾아가는 진로・직업 교실 운영(노동인권교육: 60학급, 정리수납교육: 40학급, 경제교육: 40학급, CS취업컨설팅: 23학급, 목공수업: 12학급, 코딩교육: 19학급), 2021 인천 장애학생 전환지원을 위한 진로정보지 개발・보급, 진로・직업소식지 내일ON 발행(계간지)

라) 인천 교육・고용・복지 진로・직업지원 협의체 진로・직업지원 역량강화 공동 워크숍 개최(특수교사, 특수취업지원관 90명, 6시간)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일반학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3) 각급학교, 교육기관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6개
   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정기 현장지원: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지원 실시
   나) 일반학급 대상 인권존중 교육 실시
   다) 특수학급 대상 자기주장 및 자기결정 교육 실시
2) 장애학생 인권(성)교육 강화
   가) 초, 중, 고등학교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나) 찾아가는 특수학급 성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
   다) 찾아가는 개별 성인지 교육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10교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강조: 1회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현장 점검 1회(10교)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 협의체 운영: 6개 센터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및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매뉴얼 제작 보급(1회)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1)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개인별, 학교별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학교별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5,138명, 3,608백만 원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62학급, 종일제강사 62명 배치(사립 12학급, 공립 50학급)
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4,171명, 5,760백만 원
4)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328명, 511백만 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운영 예산 지원 확보
   - 특수교육진로·직업(730백만 원), 특수교육운영(각종 교육지원사업, 970백만 원), 특수교육전문성제고(46백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434백만 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10,226백만 원), 특수교육환경개선(1,750백만 원)
2) 지역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청각장애, 시각장애, 자폐성장애, 장애 영·유아 등 4개 운영, 40백만 원)
3) 특수학교 시설·설비 확충 지원: 특수학교 1교 전공과 증설(2개)
4) 특수학급 신·증설 및 환경개선비 지원: 신증설 43교, 환경개선 31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일반학교(원) 설립 계획 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 포함 조치
2) 특수학급 정원 확보와 특수학급 신·증설 연계 추진
3) 특수학교 진학 수요 파악 후 특수학교 학급 증설 추진

나.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교원 전문성 강화

1) 신규특수교사 역량강화 및 통합학급 통합교육 직무연수 실시
2) 특수교육 행복 수업나눔을 통한 협력수업 우수사례 공유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현장 활용 지원

2) 무장애학교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통합교육지원 요구 수렴 및 지원 형태 다양화
2) '다름다운 통합교육' 거점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3) 대학연계 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초·중·고등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
2) 유치원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협력교수 사례 공유
3)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 강화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 연수 과정 참여 적극 홍보
   나)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적용을 위한 연수 지원
2)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과밀학급 순회교육 강화
2) 특수교육 핵심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축 연수를 통한 순회교사 역량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특수학급 전문가팀 컨설팅 지원(의료 및 보조공학기기)
2)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지원 보조인력 대상 연수 지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2) 특수교육실무사 집합연수 기회 확대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안내
2) 특수교육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한국교육개발원 원격수업 운영: 초·중·고등학생 지원

2)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3) 원격수업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6월~12월)

4) 병원학교 교사 및 일반학교 담임교사 대상 컨설팅: 4회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6월~12월)

2) 장애영·유아 내방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6월~12월)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1) 일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평가(12월)

2)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평가(12월)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1) 학생 참여중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교사 직무연수(9월)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4교, 8월~11월)

3) 자유학년제 학습공동체 교사 수업 나눔과 공유(11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특성화

1)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학교기업, 및 예술특화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 진로전담교사 학습공동체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실 수업 활용 자료 개발(12월)

3) '대학형 전공과' 운영 가이드 개발, 홍보 및 2022 신입생 선발(7~10월)

4) 교육·고용·복지 진로직업 협의체 학부모대상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9월)

5)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24명, 9월~12월)

6) 산업체도제교육형 및 물류산업 학습중심 현장실습 하반기 사업 운영(9월~12월)

7) 직무위탁교육 및 진로직업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반기 사업 운영(8월~12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유, 초, 중, 고등학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확대

2) 고등학교 찾아가는 인권존중 교육 확대

3)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2)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대상 인권(성)교육 및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지원
3) 특수학교 교육감소속 근로자 및 보호자 인권교육 지원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 공유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안전 계획 수립 및 점검: 2학기 1회
2) 학교 실정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훈련 실시
3)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 요소 사전 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정비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협의회 운영(6월~12월)
2)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8~12월)
3) 상급학교 진학 학부모 상담 및 설명회(8~12월)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활동비 및 통학비 지속적 지원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확대
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 사용자 중복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2) 특성화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유형별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현장 지원
4) 통합교육지원단 구축에 따른 맞춤형 통합교육 운영 확대

광주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방향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구 분	세부 추진 내용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1-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3.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2-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2-5.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2-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2-7.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2-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2-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3-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및 지원 강화 3-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3.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4-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4-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4-3. 장애학생 안전 강화 4-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4-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4-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교(급) 수용을 고려한 학급 신·증설 실시

배치 유형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총계
	유	초	중	고	소계	공립	사립	소계	
신설	2	4	1	-	7	-	-	-	**7**
증설	-	7	1	-	8	8	-	8	**16**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2교 2학급)
- 지역 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가)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나) 장애학생, 가족 등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다)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라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점진적으로 배치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나)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를 통해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 운영 관련 정보 공유 등 교실 수업 개선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다.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 평가 방안 마련

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및 보조인력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2)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2원 운영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공립유치원 의무교육비 지원: 1인당 월 13만 원 범위 내 실제 경비 지원
- 사립유치원 의무교육비 지원: 1인당 월 40만 원 범위 내 실제 경비 지원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각 및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특수·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공유, 협력 교수 등 협업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나) 예비 특수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적극 권장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권장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나)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특수교육 현장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 실천사례연구 사례집 보급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순회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영・유아 순회학급 11학급 운영
2)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안정실 등 특수학교 교실 환경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 지원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나) 학교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수립·운영 및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실무사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라)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실시

2)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학교별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이해·인권 교육 등 연수 계획 수립·운영

3)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자원봉사제 운영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라)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병원학교 운영: 학마을 병원학교 1학급 운영
다) 병원학교 위탁 운영: 여미사랑 병원학교(화순), 느티나무 병원학교(나주)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 및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등 교육지원 강화

나) 원격수업 위탁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꿈사랑학교

3)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전문상담 및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 진로・직업교육, 시・청각장애교육,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장애영・유아교육 등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치료지원비(월 120천 원 범위 내) 지원, 학생 및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사업체 직무체험 등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무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및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및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운영을 위해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에 따라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진로설계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1교: 광주선광학교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2교: 광주선명학교, 광주선우학교

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자유학년제 지원 체계 확립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보급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학교 주관 체험처 활용 결과의 누적·통계 관리로 현장 업무부담 경감 및 질 관리 효율화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가)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2교(2년차 1교, 3년차 1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보호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3)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가)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다)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한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 협의체' 구성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안정적 배치 지원

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치 및 운영 지침 마련 안내

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특수학교 5교

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 및 정기 협의 실시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 진로 설계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

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1)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 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2017. 7. 1.)

2)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기관 포함)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등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다) 교육청(직속기관) 및 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가) 유·초·중·고등학생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안내

나) 관내 기관 및 학교 대상 장애 인권 주간 운영(2021. 4. 19.-4. 30. 2주간)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연계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교육청 전문직,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장애인권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4)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과 연계한 행동지원 전문가단 운영

나) 가족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교육 현장 특성을 고려한 재난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 훈련 실시

3)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홍보

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나)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라)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나)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21학급, 급당 운영비 2,000천 원 지원

다)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11학급, 급당 운영비 2,000천 원 지원

2)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자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학생・학부모의 요구, 학교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 지원

나) 특수학교(급) 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월 550천 원 지원

다) 학교 밖 특기적성교육비 개별지원: 월 100천 원 내 실비지원

3) 방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나) 학교,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에 의한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적정 배치

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의 연수 등 역량 강화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신・증설 시 교육 환경구축 운영비 지원: 급당 40,000천 원 지원

나)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특수학급 운영비,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다)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비 편성(학교표준교육비의 1% 내외 권장)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2)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추진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2)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추진

다. 정당한 교육편의제공 강화

1)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2)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현장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4)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참여
2) 통합학교 교(원)장의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실시: 3시간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2)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및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 및 순회교육 실시

2)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컨설팅 실시 및 협력 지원

마.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대상으로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바.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지원

2) 건강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생애주기별 전환교육프로그램 장학자료 개발·보급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및 지원 강화

1) 자유학년제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부모지원단 연수 실시

2)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성과보고회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실시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실시

2)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실시

2)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진학을 위한 부모, 교사 대상 설명회 및 진단·평가 실시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2)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및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방향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역량 강화

가. 추진방향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2)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3) 가정, 학교,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나. 중점 추진 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직속기관 '대전특수교육원'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행정력 강화
   나)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대전해든학교 개교('21. 3., 21학급 운영)
      ◦ 특수학교 186학급 운영(대전맹 22, 대전혜광 39, 대전가원 48, 대전해든 21, 대전성세재활 16, 대전원명 40)
      ◦ 특수학급 378학급 운영(9학급 확대)
2)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가)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3학급)
   나) 장애학생 통학 편의제공 및 거주지 인근 배치를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9학급)

3) 특수학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고려

가) 병원학교, 병원파견학급 등 병원 내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6학급 설립('22. 9. 예정)

나)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어울림유치원)' 설치

◦특수·일반학급 공동 운영하는 통합 단설유치원 개원('22. 3. 예정)

다) 지역 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급 운영(1교)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2학급 이상 설치교 진로·직업교육 중심교사 배치(26명)

다)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담당교사 배치(1명)

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 증원('20. 4명 → '21. 6명)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사의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 지원

나)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확대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 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지원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한 특수교사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 연수 및 전달 연수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 대처 역량 강화 연수(5시간 이상)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과목 1개 이상 개설

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확대

마)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조직・운영 활성화 지원

◦ 교사학습공동체 조직을 통해 수업과 교육과정 연구 및 교실 수업 개선 권장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자생적 특수학급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

3) 특수교육교원 심리상담 지원 노력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에듀힐링센터 프로그램 연계 강화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 평가 방안 마련

◦ 학교 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 조정 적용

◦ 관리자, 담당교사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조정 현장 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 지원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원(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특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보조공학기기 검색・대여시스템 구축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강화와 청각장애학생 수어 통역 및 문자(원격)속기 지원(8명)

◦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 대상 보조공학기기 활용 연수 등 현장 지원 강화

다) 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제정 및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라) 개정 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지원(15학급)

마)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통학비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권장

라.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조기 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및 유아 의무교육 적극 홍보(라디오 1회, 신문보도 6회)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 운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지원실 편성·운영

2) 무상(의무)교육 및 취학 홍보

가) 국가시책 '특수교육 지원 강화' 사업 언론보도 및 매체 활용 홍보

◦홈페이지, 전광판, 라디오 캠페인 등 특수교육 홍보 및 콘텐츠 게재

나)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안내

◦특수교육기관 홍보지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 배부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학교급별 진단·평가팀 구성·운영으로 전문성 확보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운영

5) 취학의무 면제(유예)자에 대한 학교 배치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나)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를 놓친 과연령 장애인의 생활연령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 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마. 특수학교(급) 운영 개선

1)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특수학교 운영 개선

가) 학교시설 개방으로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보 및 인식개선 도모

다) 장애영・유아상담, 진단・평가,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상담지원 등 지역의 장애인 지원 확대

2)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학급 운영 개선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형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다) 비장애학생 및 일반교사의 장애인식개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교육, 직원연수 및 지원 활동 강화

라) 관리자, 특수・통합학급 담당교사,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협의회 등 학기별 1회 이상 운영(개별화교육지원팀과 병행 가능)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거점형 통합교육지원실 운영(5교)

◦ 통합교육 지원 교사 배치를 통해 정기 상담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 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관계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원(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3팀)

나) 장애유형별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중심 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대학생 멘토링 등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특수·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나) 특수·일반교사 협력수업 등 다양한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4) 통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비장애학생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한 통합학급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권장

나) 장애인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 모범학생 학교장 및 교육감(장) 표창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유치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원) 관리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6월 원격 예정)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직무연수(60/30/15시간)

다) 일반학교 교원(유·초·중)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포함 운영

2)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참여

가)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등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통합교육 연수 참여 권장

나) 유·초·중·고교 교원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원격연수 참여 권장

3)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가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관련 연수 지원 강화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교사, 직무연수 이수자(60시간 이상)를 통합학급 담당교사로 우선 배치 권장, 전보 가산점 부여

나) 특수·일반교육교원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연구회 등 다양한 교사학습 공동체 운영 권장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학교 특성, 학생·교사·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라)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와 관련하여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 마련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활용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다)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라) 원격수업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가) 시·청각장애,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나) 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조치 지원

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나)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연수

다)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사례 발굴

라)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라.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지원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

다) 매 학기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

라)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정 기한 준수(지원팀 구성, IEP 작성, 전출학교 송부)

마) 통합교육지원실 교사가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과정 연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 개선 방안 모색

마.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나)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다)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 지도 등 소속학교 교원, 관계자 및 보호자 교육 실시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충남대학교 병원학교(대신초 협력) 및 원격수업 운영

나)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비치하여 활용

3)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를 최소화하여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4)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가)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적 및 평가 처리

나) 소속 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5)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 방법 강구 및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등 교육지원 강화

나) 위탁교육은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다)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 및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등 교육지원 강화

3.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전문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지원 기능 강화

가) 전문인력 및 순회교사 배치 연차적 확대

나)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확대

다) 근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가) 지역 여건 및 기능을 고려한 특성화 운영

나) 일반학교(유치원) 배치(가정, 시설 포함)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 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 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가족 상담 등) 운영

3) 특수교육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나)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및 지역 내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다) Wee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

4) 장애영아 순회교육 지원

영아교육지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련서비스 제공

나.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가)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내실화

가)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학습, 출석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하며 주 3회 수업 지원

나)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근거로 구성하되, 장애정도와 능력, 특성,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수정·운영

다)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감축 운영

3) 순회교육 지원 확대

일반학교 순회학급(17학급), 시설파견 순회학급(4학급), 거점형 통합교육지원실(5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42명)

4) 병원파견학급 운영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유치원 3학급 운영)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안정실 운영

2)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병원의 간호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활동 시간에 개별 맞춤형 의료적 지원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라.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운영에 따른 현장 확산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 발굴·보급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설계 지원 강화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교사연구회, 교수·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나)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 활용 지원
다)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교육청 및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나)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마.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가) 진로·직업교육 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확대 및 취업 역량 강화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 가상현실(VR) 진로체험 프로그램, 대학 연계 진로·직업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다) 중·고등학교 2학급 이상 특수학급에 '진로·직업중심교사' 배치(26명)
라) 중증장애학생 지원 자립(여가)생활 프로그램 운영

마)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2)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자격교사 1명 이상 배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4)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가)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나)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처 발굴·지원 전문인력 배치(3명)

5)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학교기업체험센터의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현장실습 지원(특 2교)

6)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교내·외 수업을 균형 있게 실시하되, 지역사회 사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에 중점

7)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자립생활·직업재활 및 현장실습 중심의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38학급)

8)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학생보호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의 현장실습 전환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등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9) 다양한 진로 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 역량 강화

가) 고등학교 과정의 장애학생을 위한 관련 대학 정보 제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나)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 및 진로기관 탐방 운영

바.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문화예술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관계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 체험 기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체육교육 강화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

나)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 특수교육실무원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나)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 내용 안내 및 특수교육실무원 업무 평가 실시

2)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원격·집합연수, 495명)

나) 신규 채용인력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내용 포함된 직무연수 의무 실시 (30시간 이상)

3)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

가)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장애이해, 인권교육 포함) 실시

아. 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유치원 방과후학급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

2) 특수학교별 학급 수 규모에 따라 배정 및 학교 자체 계획에 따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보건복지부 주관)한 돌봄 지원 활성화

5) 장애영역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연수, 가정통신문,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 체험, 봉사활동 시간 등 활용

다) 일반학교(유치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라)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마) 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인력풀 구축

2)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범국민 대상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교육·홍보 콘텐츠 전파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가) 특수학교(급) 내 신고함 등을 활용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상시 감지체계 운영

나)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 시행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나) 정기 현장지원, 특별지원, 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다) 일반·특수학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및 결과 보고(매월 1회 이상)

라)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로 더봄학생 대상 방문·수시상담 및 거주지 순찰 등 지원 확대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유·초·중·고등학교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인권교육) 실시(연 2회 이상)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 관리자, 교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내실화
   라)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및 1교 1특화 프로그램 운영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가) 유치원 및 일반·특수학교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실시(매 학기 1회 이상)
   나)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철저
5) 관할 경찰서 협력을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6)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를 위한 행동지원중재팀 운영 및 컨설팅 제공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2) 관련 기관과 연계한 재난 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 훈련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학교별 감염병 예방·관리 수립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취약지역 CCTV 설치 권장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장애유형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운영 지도 내실화
2)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실시 및 수요자 중심 요청장학 강화
3) 특수교육 교구·설비 기준에 따른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4) 특수교육 관련 교재·교구 구입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특수교육기관 확충

- 어울림유치원 개원('22. 3., 6학급)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22. 9., 6학급)

2.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안정적 배치를 위한 추가 자격연수대상자 선발(2명)

3.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특수학교에 행동지원, 인권보호 등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상담교사(상담사) 배치

울산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슬로건

공존과 통합의 울산 특수교육

2. 교육비전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3. 교육목표

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4. 추진방향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5. 중점추진과제

가.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및 안전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 의무교육 적극 홍보

2)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과정 운영
   가) 연령별(만 3~5세)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운영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38명
   나) 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144명
   다) 특수교육실무사 및 보조인력 배치: 실무사 35명, 복무요원 19명
   라) 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홍보: 1회(유치원 188개원)
   마) 의무교육 지원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부장)
4) 특수교육대상 유아 담당교원 및 관리자 전문성 신장
5)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2개 유치원
6)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정보교육 및 의견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나)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필수 프로그램 운영
      – 입학 전 학교 견학(체험) 프로그램: 학교 시설 이용 체험
      – 입학 초기 학교적응 지원 프로그램: 장애유형 및 특성 고려
      – 입학 전후 초등학교 입학적응 관련 학부모 교육: 간담회 등 집합 교육
7)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160천 원, 사립 월 430천 원 이내

나.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지원

1)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가) 구청,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부모 동의하에 실태 파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아 수 파악
   다) 특수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부모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한 무상교육 홍보
2) 특수교육대상 영아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가) 강북·남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영아 담당 인력 배치
   나)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다)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실 운영 및 장애영아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5명
3)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가) 일반 교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영아 담당자 연수 및 부모교육 실시

나) 장애영아교육에 대한 홍보 실시: 홍보 리플릿 보급

다) 유관기관 연계 및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아동 실태파악 및 홍보

4) 특수교육대상 영아 조기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신·증설: 16학급(유치원 7학급, 초등학교 13학급, 중학교 2학급, 특수학교 -6학급)

2) 특수학급 설치 현황: 설치율 63.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31	37	102	157	48	64	34	47	215	305

라.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1)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연수 이수 강화: 월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안내

2)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실기연수

3) 특수교원대상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강화 연수

4) 학교별 직원 연수 시 특수교육 관련 연수: 학기별 1회 이상

5)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인권 연수 강화: 연 5시간

6)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순회, 병원학급 제외) 특수교육 부장교사 증치: 11명

마.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022년 예산 확보

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2) 특수교육대상자 차량 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비장애학생 및 일반교사의 장애인식·장애학생 인권보호·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연 2회 이상 학생교육·직원연수 실시 및 지원활동 강화

2)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관리자, 특수학급 담당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최소 학기별 1회 이상 운영

3)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을 우선 확보

4)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집행

- 유치원: 400만 원 이상
- 초·중·고등학교: 500만 원 이상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관련서비스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 확대
-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와 학기별 1회 이상 협의 실시
- 통합학급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수 배치

2) 통합학급 운영·관리 역량 강화

- 통합학급 관리자(교장) 연 3시간 이상 비대면 집합연수 실시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이수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통합교육 실시 학교 관리자, 교원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

3)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4) 통합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

5)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급당 150천 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학교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2)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면 실시 및 운영 강화

3) 문화예술활동 지원

가) 미술작품 전시회: 강북·남 특수교육지원센터별 1회씩 실시

나) 문화예술 공연단 지원: 장애학생 문화예술단 '차이'

다) 특수학급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지원

4)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종목	볼링	역도	육상	수영, 역도, 스키

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특수학교 4교, 77,000천원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

(2021. 4. 1. 기준)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사회복무요원
2021년	298	30	280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실시

가) 특수교육실무사

(1) 신규 채용자: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2) 직무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실시

(3) 원격연수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위탁원격연수

(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학교 자체 연수(연 2회) 실시

나) 사회복무요원

(1) 신규 사회복무요원 교육 실시: 연 2회 이상 실시

(2) 기존 사회복무요원 교육 실시: 연 2회 이상 실시

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1학기)

가)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초등 6명, 중 2명, 고등 6명)

나)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3명, 유치원 16명, 초등 16명, 중 4명)

다)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 2명, 유치원 18명, 초등 25명, 중 2명)

라) 총 100명(영아 5명, 유치원 34명, 초등 47명, 중 8명, 고등 6명) 순회교육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배 치	자격 구분			소 속
	유치원	초등	중 등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2	7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7	6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7	5	2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2)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원격수업(화상강의 포함) 이용 학생 지원: 총 이용자 36명(2021. 4. 1. 기준)
2) 병원학교 운영

병원학교명	위치	인력 현황		이용학생
		교사	센터 순회교사	
다솜병원학교 (설치년도: 2007년)	울산대학병원 내	1명	2명	7명

3)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부모자조모임 운영(연간 프로그램 운영)
4)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8교 8명 지원
5) 학년말 병원학교 행사: 다솜병원학교 학예발표회 및 송년의 밤
6) '즐거운 병원학교' 운영: 단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인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2)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3) 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육감 승인 후 적용
4)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으로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6)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7)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컨설팅단 운영
8) 특수교육자료개발팀 구성을 통한 특수교육 도움 자료 개발·보급

자.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및 개별교육계획서 작성 관련 현황 점검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 지원 및 관리 강화

다) 개별화교육계획 및 지원팀 구성·운영에 대한 연수·컨설팅 실시

라)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실시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설치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상담전화	역할	특성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55-6601	○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지원	자유학년제, 인권교육 시각장애, 진로·직업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219-5790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지체장애, 청각장애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227-6604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영·유아

2)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진단 평가실	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	학부 모실	조기 교육실	기타	계
			센터내	거점	센터내	거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	6	-	2	-	-	6	16
울산강북특수교육 지원센터	1	1	-	10	-	4	1	1	-	-	18
울산강남특수교육 지원센터	2	1	5	3	2	-	1	1	1	-	16

3) 인력 배치

구분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임상 심리사	직업 재활사	치료사		행정 일반	기타	계
							재활	심리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2	9	-	1	1	4	-	2	2	22
울산강북특수교육 지원센터	-	1	15	-	-	-	17	3	-	1	37
울산강남특수교육 지원센터	-	1	14	-	-	-	13	2	-	1	31
계	**1**	**4**	**38**	**-**	**1**	**1**	**39**		**2**	**4**	**90**

4)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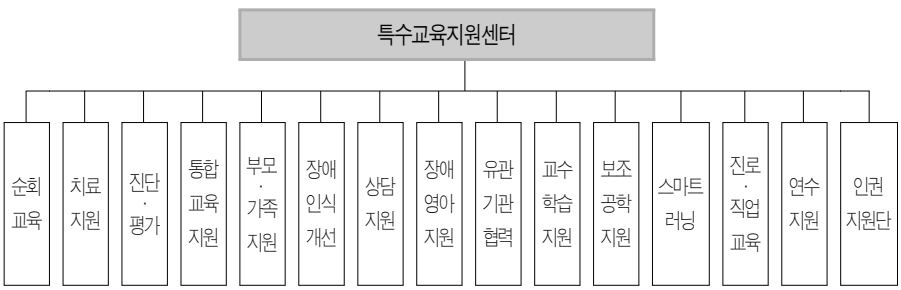

카.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1) 가족지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가)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울산시센터)

- 4월~11월, 9교 25명, 의뢰 사유별 전문가 연계 개인, 가족, 집단상담 지원

나) 부모상담 WITH PLUS 프로그램 운영(강남)

- 4월~11월, 1~3기 신청 접수 및 개인별 10회 실시, 매회 50분 지원
- 1기 8명, 2·3기 각 6명씩 상담 예정

다) '함께 걸음'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강북)

- 6월~12월, 1~3기 신청 접수 및 개인별 8회 실시, 매회 50분 지원
- 1·2·3기 총 24명 상담 예정

2)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기기명	강북센터 보유 수량	강남센터 보유 수량	시센터 보유 수량
보조공학기기 (시각, 지체, 청각, 의사소통장애)	28종 271개	101종 258개	98종 352개
진단·평가 도구	18종 120개	48종 150개	36종 42개
교재·교구	19종 3,157개	200종 205개	283종 432개
도서	7종 2,870권	25종 790권	25종 8,792권
직업훈련교구	1종 9개	3종 15개	20종 42개
성교육자료	1종 57개	1종 11개	2종 2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 12개	1종 34개	12종 182개
신체운동활동자료	14종 26개	20종 25개	54종 386개
컴퓨터활용 CD자료	76종 157개	0종 0개	21종 691개

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1) 치료사 현황

(단위: 명)

구분 \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북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교				계
				울산 행복 학교	울산 혜인 학교	태연 학교	메아리 학교	
치료사	4	20	15	4	5	4	4	56

2)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실(거점치료실 포함) 현황

(단위: 개)

구분	운동 재활실	일상생활 재활실	언어 재활실	청능센터	감각,운동 훈련실	상담실	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센터	-	1	-	-	-	1	2
울산강북특수교육센터	-	-	9	-	6	2	17
울산강남특수교육센터	-	-	2	-	2	1	5
울산혜인학교	1	3	3	-	1	-	8
울산행복학교	1	2	2	-	1	-	6
태 연 학 교	1	1	2	-	1	-	5
메아리학교	1	-	2	1	-	-	4
계	**4**	**7**	**20**	**1**	**11**	**4**	**47**

3) 치료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치료지원 학생	192	519	131	116	958

파.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1인 10회기 지원,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또는 그룹지원

하.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컨설팅: 1회

2) 특수학교, 특수학급 컨설팅(교육과정, 개별화교육): 8회

3) 초・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강남・북 2개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4) 특수학교(급) 자율장학 지원 활성화: 단위학교 자체 계획 및 추진

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 교육 장소 제공(여가문화체험실, 교육정보실 운영)
   - 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내 1개소 2실
   - 활용: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 장애학생 e스포츠 활동, 현장학습 등
2) 홈페이지 배너로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홍보(에듀에이블, 이얍)
3) 특수교육대상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정보기기 지원
4) 2021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울산예선 실시, 13교 24명 참가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능력평가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직업적 소양, 직업기능 평가 등
2)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지원
      • 대상: 중·고 특수학급
      • 내용: 제과·제빵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운영 지원
      •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실, 거점학교 직업교육실 활용,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활용
   나)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 내용: 직업교육·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 및 지원인력 여비, 진로·직업교육 운영비등 지원
      • 지원액: 급당 3,000천 원 지원(공립 - 65학급, 사립 - 8학급)
   다)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별실 대관 운영
      • 대상: 울산 관내 특수학급 및 유관기관
      • 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실, 여가체험실 등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 울산혜인학교(2011년 선정) 학교기업 설치·운영
   • 특수학교(급)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업체)과의 협약, 연계 운영, 민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형태 운영

4)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가)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 내용: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일자리, 특수학교 내 일자리, 기타

나) 교육청 카페 '청마실' 운영

• 대상: 전공과

• 내용: 카페 '청마실' 실습을 통한 바리스타 등 서비스업 현장실습

다)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장 운영(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이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일반사업장 일자리 현장실습

라)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

5) 장애학생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가) 지원고용 사업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실질적 취업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재활사의 업체 개발 내실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사후지도 강화

6) 장애극복활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나) 프로그램 내용: 현장학습, 문화유적 탐방, 환경보존 활동, 내고장 걷기, 타지역 견학, 단체활동 등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다) 특수학교 교당 4,000천 원 지원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 자유학년제 운영학교(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메아리학교, 태연학교)

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컨설팅단' 구성・운영

3)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4) 진로체험자원 확충 및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진로체험처 '꿈길' 등록 안내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문자해독 등 교육비 지원: 2개 기관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2) 2021학년도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6~8월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 예방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개 특수센터, 다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실시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피해 최소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및 학교 주변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강화
3)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가)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상황별 대피훈련 실시
   다)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Buddy System) 운영
4)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영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 시설 개선, 재난위험 시설 해소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

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연 2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3)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개선 연수: 유・초・중・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교사
4) 장애인식개선 행사: 미술공모전(2021. 10월 예정)

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1)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가) 외부기관 개설 강좌 참여
나) 개인교육비 지원
다) 1인 월 120,000원 이내 실비 지급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립 48학급 72,000천 원, 사립 24학급 36,000천 원
3) 계절학교 지원: 설명회 학생 간식비 및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과정 운영

1) 특수학교 및 유치원
2)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사.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공립 특수학교 2교, 총 4실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의무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순회교육 강화
3)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나.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지원

1) 지원방식: 1시간(40분 수업, 20분 상담)씩 주 2회 수업, 센터 내방 또는 가정 방문
2)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수립 및 시행
3) 부모상담 및 형제・자매 지원(상담), 교재교구 대여 등

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특수학급 수	265	288	304	310

라.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1) 지구별 역량강화 협의회 운영(7월~12월)

2)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실시 연수(2기, 7월, 2022년 1월)

3)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원격연수 및 직무연수

마.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022년 예산 확보

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2) 특수교육대상자 차량 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 경영평가를 통한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통합교육 '정다운학교' 컨설팅 지원

2) 통합교육지원단 맞춤형 1대1 지원 현장지원

3)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개별 맞춤형 지원

4)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활동 강화

2) 장애학생 1인 1기(技) 지원 강화

3) 학교별 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 및 영화·연극 관람 등 기회 제공 확대

4)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 장애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미술대회 및 전시회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장애학생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학기별 1회 실시
2) 특수교육 보조인력 근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
3)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성교육 및 안전교육, 장애학생 지원 교육 등): 신규 사회복무요원 및 기존 대상 직무교육 실시

마.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2)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및 상담 전문성 강화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사.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자.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활성화
2) 다양한 학생 집단, 교사 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2)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카.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대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기기 구입 및 대여
2) 가족지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수시 운영

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치료사 학교재활 및 병·의원, 사설 치료기관 치료비 지원

파.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1인 10회기 지원,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또는 그룹 지원

하.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1) 특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연 30회
2)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학교 컨설팅 장학 지원: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 추진
3) 특수학교(급) 자율장학 지원 활성화: 단위학교 자체 계획 및 추진

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2021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울산 예선(6월) 실시 및 전국대회(9월) 참가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직업평가를 통한 직업교육의 기초선 제공
2)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강화
3)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지원고용 실시
   나)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연계: 바리스타 및 공공기관 내 일자리 직무훈련
   다) 학부모와 함께 장애인 채용 기업체 현장 견학 연수 실시
   라) 장애학생 취업기관 방문 지도를 통한 취업 후 사후관리
4)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 구축 및 직업교육 실무팀 운영
   가)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훈련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체제 구축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협의체 구성·운영
   다)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사업체 개발
   라) 정보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연구회 운영 강화
5) 진로 및 직업교육 현장지원 강화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참가(10월)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

1)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2)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3) 자유학년제 워크숍 및 컨설팅 확대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제공 강화

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 상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 진학 상담 업무 담당자 역할 강화

2)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가)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방송통신고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지원

나) 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인 참여 확대 및 홍보

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

라) 지역사회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2)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연수 실시(6월)

3) 2022학년도 진학 희망학생 진단·평가 실시: 6~8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장애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피해 예방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개 특수센터, 다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 실시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피해 최소화

4)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2)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 추진 및 학교별 안전계획 점검

라. 장애공감문화 조성

장애인식개선 미술공모전 운영(2021. 10월 예정)

마.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1) 연중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4교, 여름 및 겨울방학 운영비 지원

3) 달팽이학교(여름 및 겨울 방학학교): 사회복무요원 100명 내외 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 철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의 추진방향

가. 비전: 꿈 찾고 행복 키우는 세종 특수교육

나. 방향

1)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수교육지원 확대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

2. 세부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21년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세종시 관내 특수학급 수요를 고려한 '21년 신·증설 추진(4. 1.자 기준)
  특수학급(총 7학급 확충): ('20) 122학급 → ('21) 129학급
- 세종시 관내 신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건축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

※신설학교 24학급당 특수학급 시설 1학급, 36학급 이상 특수학급 2학급 배치내용 포함

나) 학생친화적 특수학급 교실 환경 구축(공간혁신) 지원

다)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라)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마) 특수학급 신·증설시, 교재교구비 지원

2) 특수학교 설립 계획 추진

- 세종시 관내 제2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공간혁신 적용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2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세종시 학생 배치 관련 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 세종누리학교, 세종시청 등과 학생 배치 관련 기관 협력체제 구축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시·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능력평가·인증교원 포함), 점역·교정사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 소지 교원의 해당 학교 우선전보 및 전보유예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현직교사 중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점역·교정사, 수어통역사, 한국수어능력인증자 등) 소지 교원에 대한 관련 학교 우선 전보 적용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적극 권장

3) 학교 현장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 지원 방안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운영계획안 수립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및 점검

4)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교사 공동체 모임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 제도 활성화 및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력 향상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 평가 방안 마련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세종누리학교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연수 실시

2) 각급 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세종시 관내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의무 준수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인력 확대: ('20) 6명 → ('21) 8명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통합교육거점유치원 지정 운영)

라) '2021 전국 장애 영·유아교육 운영 워크숍' 개최

※ 교육부 주최, 세종시교육청 주관의 영유아 담당교원 대상 워크숍 실시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지역 기반 정보지원 시스템 운영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연수 실시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교장)는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 이수 의무연수 실시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권장 이수시간 60시간(누적치 인정) 이상

- 통합교육 및 장애공감문화 관련 연수 과정 운영
-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교사연구회: 교과연구회, 개별화교육연구회, 행동지원 연구회 등
※ 통합학급 담당교사 인센티브: 전보가산점, 성과급 등

3) 통합학급 지원 강화

- 교육지원 강화: 학생자율동아리 구성, 또래도우미 선정, 모범상 및 선행상 추천 시 우선 추천, 봉사활동 시간 확보 등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지원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 확대

4)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5) 원격수업 전환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활동 지원

가) (수업형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등교·원격 수업 형태 결정

나) (원격수업)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콘텐츠 확충 및 기능개선을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수업(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및 과제 수행 중심 등) 지원

다) (대면교육) 원격 수업 시, 지역 및 학교 여건·학생 요구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한 1:1 또는 1:2의 학교 또는 가정방문으로의 대면교육 가능

라) (학습꾸러미) 학습꾸러미, 학교(급)별 특색 활동 등 학교·학생 실정에 맞는 지원 병행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이 필요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안내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지원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강화 등
-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 행동중재 전문가, 관련 교수, 현장 교사 등으로 행동 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 심각한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위기관리계획 수립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업무 명확화(특수교육운영계획 연수 시 전달)
- 특수교육실무사 순환근무제 적용(교육공무직 인사원칙 반영)

2)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 신규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
-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실시(연 2회)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치
-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의무화

※ 신규배치 3개월 이내에 특수교육관련 직무연수(장애이해 관련 내용 포함) 반드시 실시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자원봉사 영역 및 지원 인력 확대 노력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학교별 개별화지원팀 협의회 IEP 나이스 등재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중재방안 포함 작성
   - 순회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참여한 개별화지원팀 구성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 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건강장애 및 요보호대상자 17명 원격수업지원
     ※ 충남 꿈빛나래학교(초등) 및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원격수업 지원
2) 병원학교 운영 지원
   - 타시도 기관에 위탁운영(충남대학교 병원, 공주국립병원 어울림학교 등)
   - 세종시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시 병원학교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4)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5)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6)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운영
     ※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소속 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23명)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2명, 유·초·중 급별에 맞는 순회교사 8명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직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취업지원 실무사 등 배치

나) 진단·평가 관련 연수 및 언어재활, 전문상담, 취업지원 관련 공무직원 직무연수 지원

2)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 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행동중재 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북부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 지원팀 배치를 위한 기반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종합특수교육지원센터로의 직제 개편 및 운영 수립 기반 마련

※ 복합업무센터 내 구축('25년 예정)

- 종합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개편 추진 및 운영기반 구축

※ 단층교육청 구조를 반영하여 장애학생 지원 및 특수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

- 세종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다양한 근거 자료 수집

4)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세종YWCA, 세종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장애학생 성인권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권 교육 등 협업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4개) 지원
-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체험 활동 지원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운동부 5팀 지원(역도, 육상, 슐런, 배드민턴, 보치아)

- 특수교육 방과후 수영교실, 재활승마 위탁 운영
- 세종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특수체육교실 운영
- 장애학생 신체적·심리적 재활을 위한 재활 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방과후 수영프로그램을 세종시 특화사업으로 추진 및 타시도 홍보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대·연계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교원연수(연 2회), 학부모 홍보연수(연 2회) 실시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교과협의회, 교사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교육청 단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단위학교 당 연 2회 이상 컨설팅 지원)
   -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자유학기 활동 운영 등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진로인식 및 탐색 프로그램 적용·확대
   -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 제2 특수학교 개교 전까지 세종누리학교 전공과 1학급 한시적 증설 운영(총 3학급)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진로직업교육연구회 1팀 운영)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 산업체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특수학교 1교, 관내 특수학급 포함)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 학교·공공기관 내 일자리 사업 → 교육청 교육복지과 주관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원(교육공무직)"으로 전환(22명 채용), 2025년까지 42명 채용 예정
- 기관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 2021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자 중 14명 취업(56%), 전공과 졸업자 중 8명 취업(67%)

4)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훈련센터 내 직업체험관, 직업훈련관 설치·운영
- 교육청 내 장애인 일자리의 교육공무직화 전환에 따른 협력 및 지원

5)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지원관 배치 및 운영

6)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계획' 수립('21. 3월)
-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3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학생대상 55개교, 교직원대상 44개교, 학부모 4개교

2)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사회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유·초 1단, 중·고 1단으로 조직하여 운영
- 매월 1회 이상 관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연 2회)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결과 보고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5)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6)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지원
  ※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단 8명 구성 운영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세종교육청 재난대응 안전 매뉴얼에 장애학생 안전분야 탑재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4)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가) 특수학교(급)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조치 방안 강구

5)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세종시청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장애영아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 안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지원

2) 특수학교(급) 돌봄 지원

- 특수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맞벌이,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담당 유아특수교사 배치(23명)

3) 지역사회 방학후 프로그램 운영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단위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수영,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2)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학충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21. 8월 정기진단평가 이후 특수학급 신증설

2) 특수학교 시공 관리 및 학생 배치 계획 기초 자료 수집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방학을 이용한 연구회 중심 교사연수 추진(진로・직업교육, 수업탐구동아리)
- 행동중재 직무연수 추진(긍정학급훈육 ABA)

3) 학교 현장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 지원 방안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운영계획안 수립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및 점검

4)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교육과정 워크숍과 연계한 특수교사 힐링연수 추진(11월 예정)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지원 수요조사 후 지원
-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후 보조공학기기 제공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정원 내 포함(유치원 및 중, 고 배정 시 정원 산정)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지정 운영)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연수 시 통합교육관련 내용 포함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학급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실시

3) 통합학급 지원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실시(10월 중)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 확대

4)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조치 지원

5) 원격수업 전환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활동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지원 지원 대상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택교육대상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8명 지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방과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2)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직무교육 실시(연 2회)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학교별, 권역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9월~10월)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중재 방안 포함 작성
- 순회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참여한 개별화지원팀 구성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2) 병원학교 운영 지원
3)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4)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5)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6)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2명, 순회교사 8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직(행정),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취업지원사 등
   - 진단·평가 관련 연수 및 언어재활, 전문상담, 취업지원 관련 공무직원 직무연수 지원
2)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정기 진단 평가 실시('21. 8.)
3) 종합특수교육지원센터로의 직제 개편 및 운영 수립 기반 마련
   - 종합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개편 추진 및 운영기반 구축
   - 세종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다양한 근거 자료 수집
4)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세종YWCA, 세종장애인부모회,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세종 학생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발표회 실시(11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대·연계 운영 지원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졸업생 직업유치 및 취업현황 조사(10월)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4)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연중)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진로직업교육연구회 1팀 운영)
5)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6)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학교·공공기관 내 일자리 홍보(22년도 참가 희망교 현황 조사)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2)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 교육청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유·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사회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유·초 1단, 중·고 1단으로 조직하여 운영
   - 매월 1회 이상 관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연 2회)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결과 보고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유·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5)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6)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4)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5)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세종시청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장애영아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 평가 실시(8월 예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법정 기간 준수)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대상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12월)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2학기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8월)

2) 특수학교(급) 돌봄 지원
- 특수학교 돌봄전담사 배치(4명)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4시간 기간제교사 운영 지속

3) 지역사회 방학프로그램 운영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단위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수영, 재활승마,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방학프로그램 운영(7월~8월, 초·중등반 운영)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2)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점검(10월)

경기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추 진 목 표〕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 강화
-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추진 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편의 제공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지원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3 진로 지원 및 직업교육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발전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 학교공동체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 장애학생 폭력예방교육 및 활동 강화 ▪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강화 ▪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1) 특수학교 신설·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특수학교 원거리 통학 해소,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 시 공립특수학교 부지 확보 노력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 수요 충족
   특수학교(급)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 특수학교(급) 신·증설 수요 조사
3) 복합 특수학급 구축·운영 확대
   가)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교육 필요 학생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복합특수학급 2021년 7개교로 확대 운영 예정
   나) 예술, 체육, 진로·직업 등 특정 분야의 교육수요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고려한 특성화된 특수학급 설치(예 진로와 직업 중점 특수학급: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추진
   가) 유·초·중·고교에 병설형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나) 중도중복장애 및 건강장애학생의 집중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기 위한 병원학교 설립 추진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가) 일정 규모 이상 유·초·중·고 통합 과정 운영 특수학교에 복수교감 배치 추진
   나) 복합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가) 교실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나)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협력체 구성 운영 권장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장・교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별로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교장・교감 대상 특수(통합)교육 워크숍, 연수 등 실시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강화

통합교육연구회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장애정도와 장애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편성·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가) 혁신학교의 확대·발전으로 특수학교의 혁신학교 모델 구현

나) 중점과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움, 삶, 일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구축

다) 지원 및 평가: 운영 및 사례 공유,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특수학교 혁신 자료로 활용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각급학교, 의료기관, 복지시설 및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가)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권장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전일제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급당 4명 배치)

2)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특별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바.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지원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을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관련 연수 및 담임 장학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활용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3)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의 연계성 강화 방안 강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에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나)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先) 교육 지원 가능

라)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장 책무 강화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3)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 기회 확대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운영

다) 특수교육대상 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단체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및 조치 강화

마) 학교·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 활용 강화

나) 지자체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과의 연계 및 지역 내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 인력 확보

라)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체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 스포츠클럽(스포츠 동아리,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운영 확대

3. 진로 지원 및 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운영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
– 특수학교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2·3학년 연계 자유학년제,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과 연계 강화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나)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도입을 통한 진로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라) 개인별 진로·직업계획 및 진로설계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 직업평가 확대

마)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진로·직업교육 효과성 확대

바)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가)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안전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현장실습을 조기 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 전환

다) 관계부처(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 배치

- '21년 3월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1명씩 배치 (33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학교공동체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3) 특수학교 행사 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권장 예능발표회 및 체육행사 등에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통해 특수학교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교육 및 활동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 및 보호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홍보 및 상시 보호체계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학폭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지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성교육 강화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나)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 각급학교에 학칙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 등 신설·강화

라) 특수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가) 교육현장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실제적인 안전교육 실시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나)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다)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

라)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의 간이체육시설, 옥외체육관 등 설치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1) 긍정적 행동지원 지원체제 구축

가) 긍정적 행동지원의 연계성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지원 시스템 구축

나)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집단(대학 교수,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등)의 자문위원 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2) 교육지원청별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급)에 행동중재 방법 및 컨설팅 제공

나)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3) 학교와 긍정적 행동지원단 협력을 통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특수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여건 마련 및 지원,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마.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3)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과연령자 및 초등학교 입학연기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4)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바.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9만 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 교내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방과후 자유수강권(꿈e든카드) 운영

2)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및 교육,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늘해랑학교(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방학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

4) 코로나19 단계에 따른 방역 및 운영

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연 2회) 철저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가) 신규 채용된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반드시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

나) 특수교육지도사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확대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사회복무요원의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장애이해・인권 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 의무 실시

4)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추진

가)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으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다양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특수교육 전공 설치 대학(5교)과 업무협약 체결 및 상호・협력하여 추진

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강화

1) 장애인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강화

가)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인증 의무 준수

나)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포함) 확충

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미설치 승강기 설치 지원

가) 도내 모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향상 노력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담당자 교육 실시 (연 1회)

나) 교육지원청별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다) 각급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 수립

라) 장애인용 승강기 지원 확대: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및 추가 설치, 노후 교체 지원(85억 원)

자.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운영 관련 지원

가)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유치원 1학급당 3,000천 원, 초·중·고 1학급당 2,000천 원(목적사업비)

나) 특수학급 급당 경비: 특수학급지원을 위해 지원되므로 직접적인 특수학급 운영·학습에 우선 편성

다) 특수학교(급) 순회학급 여비: 가정·시설 등에 설치된 순회학급의 교육을 위한 교사 여비 지원

라) 신(증)설 특수학교(급) 교재교구비 지원: 특수교육의 내실화 도모 및 교수·학습 여건 조성

마)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특수학급 기준 면적(66㎡ 이상 교실) 확보, 교내 이동, 세면장·화장실 접근성 등 고려 위치 선정

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운영비: 공·사립 특수학교 등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임차료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활한 통학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3)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공립유치원의 경우 우유대금 실비 지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차액분 지원(월 5만 원 상한)

다)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1일형) 및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1) 폐교 등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2024. 3. 1. 개교를 목표로 안성특수학교 설립 추진)

2) 2022년 이후 시흥 및 3기 신도시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고양, 남양주 등)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2021. 6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역량 강화 연수
- 2021. 11월: 경기 특수교육 컨퍼런스
- 2021. 11월: 2021 특수교육활동 유공 교원 표창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교육 지원시스템 개발·공유와 지원체제 강화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편성·운영 도움자료 개발 보급

다. 개별화교육계획 Q&A 자료와 매뉴얼 보급으로 계획·실행 내실화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2021. 9월: 2021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 2021. 8월: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 연수 예정

3. 진로지원 및 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및 내실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 '21년 3월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각 1명씩 의무 배치(33교)

2) 2021 스페셜바리스타 대회 개최(2021. 11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학교공동체 장애인식개선 활성화

- 2021. 12월: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 교육 실시 현황 조사

나.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 2021. 7월: 고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안내 및 연수

다.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2021. 8월 및 12월: 방학 중 늘해랑학교 운영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2021. 8월: 특수교육 보조인력 실시간 원격 직무연수
- 2021. 9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매칭 및 운영

마.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 2021. 7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1학기분 지원
- 2021. 10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신청 및 지원 예정(2차)

강원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가. 추진방향

1)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2)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나. 중점 추진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급 신증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21. 3. 1	2	8	1	4	**15**

2)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구분	2020	2022
특수학교	봉대가온학교	(가칭)동해특수학교
학급수	27학급 신설	19학급 예정

3) 춘천권 특수학교 재구조화 추진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재구조화
- 장애유형이 아닌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춘천계성학교(유+초+중), 춘천동원학교(고+전공) 특성화·전문화 교육과정 운영
- 춘천계성학교 개축, 춘천동원학교 직업중점학교로 리모델링을 통한 미래형 학습중심 학습공간 구축

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특수학급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 장애학생, 가족 등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 과밀학급 해소 및 법정 정원 준수 강화
2)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
   -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교육과정-수업- 평가 방법 개선 및 생활지도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4) 특수학교(급) 교사 보결전담강사 운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교사의 복지증진

다.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1)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산 확보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각급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마련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확대
     (통합교육지원단 지역 17단, 도 1단)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3교(초, 중, 고 각 1교)
2)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내실 있는 통합교육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춘천계성학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명진학교(시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교육과정 중심 교육부 연구학교 운영(1교)
   -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4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권역·지역별)
   - 장애유형별 특성과 지도방안 등 통합교육 연수 과정 개설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통합교육 관련 전문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조치 지원
   -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연구·현장지원 활성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2)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3) 주 3회 순회교육 운영 권장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특수학교 내 심리안정실 구축(7교) + 추가 심리안정실 구축
2) 병원학교 1학급 운영 지원: 강릉아산병원학교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연계망 구축으로 학교 지원 방안 모색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현황
   지원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
2)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

구분	유급보조인력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계
2021	423	60	**483**

3)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 운영·관리 강화
4)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 연수
5)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지원체제 확대

1) 교원학습공동체 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연중)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관련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원격화상수업은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로 운영
   ※ 건강장애 선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 학생의 교육적·의료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 후 매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
   ※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 진단서 등 확인

2)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건강 특성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

3)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강원도특수교육지원센터 및 17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춘천특수교육지원센터	철원 특수교육지원센터	– 상담·홍보활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및 – 진단·평가 지원 – 특수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 통합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 ※ 거점 및 협력센터 공동사업 추진 권장 (예) 교사, 학부모 연수 , 학생 행사 등)
원주특수교육지원센터	횡성특수교육지원센터	
강릉특수교육지원센터	평창특수교육지원센터	
속초·양양특수교육지원센터	인제, 고성 특수교육지원센터	
동해특수교육지원센터	삼척특수교육지원센터	
태백특수교육지원센터	영월, 정선 특수교육지원센터	
홍천특수교육지원센터	화천, 양구 특수교육지원센터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 순회 특수교사: 46명
- 치료사: 53명(특수학교 17명, 특수교육지원센터 36명)
- 장애영아지도사: 2명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유관기관 및 산업체, 경찰, 인권보호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특수학교 대상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비 지원

*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환경(인력, 시설 등)을 갖춘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일반학교 체육교사 연수 강화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현황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1,425명
- 지원방법: 치료사 지원, 치료지원비 지원「모두사랑카드」
- 지원방법: 120천 원×12개월, 연 1,440천 원(1인 기준)
- 치료지원 내용: 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치료 등

2) 통학지원

- 특수학교 통학차량: 26대
- 통학비 지원기준: 대중교통비 기준 1일 학생 2회, 학부모 4회

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1) 방과후학교 운영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 학생 2,225명
- 지원내용: 교내 방과후학교, 위탁형 방과후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
- 지원기준: 120천 원×12개월, 연 1,440천 원(1인 기준)

2)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 대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기준: 방학 중 1주 범위 내에서 운영
- 지원내용: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1)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체험처 발굴 관리 및 지원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홍천
- 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학교기업, 전공과 등 체험처 활동
- 자유학기제 체험처 공유: 강원발달장애인센터 개관 및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자료실 활용

2) 특수학교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행복한 일자리 사업 확대운영: 특수학교 전공과, 5개 교육지원청 및 교육문화관 고용 연계 현장실습 배치로 확대 운영
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기회 확대화
   - 지역 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 등 직업교육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분석, 협력 추진
3) 전문대학 연계 장애학생 및 학부모 취업·창업교육 지원
4)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활성화
5)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업체와 MOU 체결 및 협의 활성화
6)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2개교(태백라온학교, 속초청해학교)
   - 학교기업 직업지도사 배치로 현장실습 및 운영 지원
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효율적 운영: 영서고등학교
8)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전공과: 특수학교 7교, 30학급
   - 전공과 교육과정 협의회 활성화
9)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권역	거점지역	전환교육지원센터	역할
영서북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동원학교	– 권역 내 특수학교(급)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 맞춤형 현장실습 지원 –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 관과 연계·협력 추진 – 특수학교(급) 교사 연수 등
영서남부	원주, 영월, 횡성, 평창, 정선	원주청원학교	
영동남부	강릉, 동해, 태백, 삼척	강릉오성학교	
영동북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속초청해학교	

   - 춘천동원, 원주청원, 강릉오성, 속초청해 거점형 4개 센터 운영
   - 직업지도사 배치(16명)로 전문적인 진로·직업 교육 지원
10)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11)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2)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강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특수학교(급), 산업체 실습 확대
13)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 훈련 및 직업체험 운영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권 내실화
   - 비장애학생 대상: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으로 모든 학교 지원
     ·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기관풀 안내(강원도교육청)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대상: 문화예술 행사 활용 장애이해교육 운영
2) 교직원 현장체험형 장애이해교육: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
3)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정(2019. 12. 27.)
4) 유·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안내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학교(급) 재학 장애학생: 도특수교육지원센터(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부, 전공과)
   -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 도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 성교육 연수: 강원도교육청 소속 특수(통합)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2)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 정기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특수학교 연 2회 중 1회는 도단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서 운영
   - 특별지원: 특별지원 사안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안전점검의 날 연계: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안전관리 실태점검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4) 특수학교(급) 노후환경개선비 지원
5)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완료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진단·평가 의뢰 안내 홍보: 17개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무상·의무교육 포함) 등 홍보지 도내 시·군청 및 주민센터에 배부
- 특수교육 홍보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진행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구성 운영: 18개팀 운영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도교육청 1, 교육지원청 17개 운영
- 기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사항

마.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2) 모든 학교, 기관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3)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개선 행사 실시
4)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 내용 지도 자료 활용
5) 학교급별 장애체험 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6) 장애학생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및 연수 확대
7) 교원학습공동체 및 혁신교육연구회(특수)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

2)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내 배치 및 의무교육(통합교육) 이행 철저

3)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학부모, 교사 지원을 통한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별 계획 수립

나.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담당 연수 및 부모 교육 제공

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단위: 학급)

추진내용		연차계획		비고
		2021	2022	
특수학급	유	2	2	-
	초	8	8	-
	중	1	2	-
	고	4	3	-
	계	**15**	**15**	-

※ 신설 특수학교 별도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추진내용		연차계획		비고
		2021	2022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	순회교육대상자 수	130	132	일반학급 배치
	지원교사 수	46	46	-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

- 치료지원대상자 및 지원예산 확대
- 치료지원비 지원 '모두사랑카드' 운영 모니터링 강화

다.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환경 개선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기준에 의한, 설비·비품을 우선 확보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지침에 포함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1) 위탁형 방과후학교 '모두사랑카드' 전면 시행에 현장 안착
   - 모두사랑카드 홍보 강화
   - 모두사랑카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2)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모니터링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 향상과 개선방안 도출
   -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1)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 우수업체·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연계 운영,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운영 다양화 및 활성화 지원
   - 진로·직업교육 관련 컨설팅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직업체험처로 운영
2)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 인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
3)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운영의 다양화 추진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으로 특성화하여 전공과 운영

4) 다양한 진로 정보 및 특수교사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 특수교사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직업교육 역량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안내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확대 지원 및 연수 실시(현장소통)
3)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4) 장애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 확대

나.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1)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및 일반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다. 범도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 특수교육 홍보지 도내 시·군청 및 주민센터 배부
- 특수교육 홍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진행

라. 통합교육 지원 강화 및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1) 통합교육 내실화 및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업을 위한 지원 강화
2) 통합학급관리자, 행정직원 장애이해 연수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워크숍 실시

마. 공립특수학교 신설추진

- (가칭)동해특수학교: 2022. 3. 1.자 개교 예정
- 동해특수학교 개교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립규모: 19학급, 129명(유 1, 초 7, 중 4, 고 5, 전공 2)

충청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충북특수교육 지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충북특수교육 목표

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충북특수교육 중점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학급 신증설: 29학급(유 8, 초 11, 중 6, 고 4)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 특성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 가칭)청주특수학교 설립 추진(유·초 과정, 2023. 3월 개교 예정)

나)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 전공과 설치 예정부지 교육환경평가 실시 (4학급, 2024. 3월 예정)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가) 3학급 이상 특수학급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나) 특수학교(급) 보결수업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청주·충주·제천·음성·옥천 특수교육지원센터, 총 13명 배치(제천·음성·옥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거점 지원)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교원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특수교사 배움길(신입기·성장기·심화기) 연수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 강화 연수
- 특수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15개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 성장과정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기획 연수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치유 연수

나) 교권보호 프로그램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통합 운영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시·청각특성화지원센터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학생 1,403명, 보호자 1,259명, 총 2,662명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 지원: 특수학교 36대, 특수학급(전공과) 2대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학교 통학차량 추가 지원: 특수학교 19대
-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승하차실무사 배치: 38명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학교 승하차 동승보호자 39명 인건비 지원

2)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점검을 통한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3) 노후 특수학교(급) 현대화사업으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사항 준수·이행

- 2021년 특수학교 2교, 특수학급 40학급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학습장애학생이 조기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다양화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권장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확대

나) 통합교육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통합교육거점기관(유) 3원(9백만 원), 통합교육거점센터 3개소(12백만 원), 통합교육운영비 15개원(22.5백만 원)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배치: 시간제 기간제 교사 38명 배치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5센터, 30백만 원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청각 특성화 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등 확대 운영: 3센터, 64.9백만 원
- 특성화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정다운학교' 운영으로 협력수업 등 다양한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

- 정다운학교 운영: 도지정 연구학교 1교, 선도학교 4교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통합학교 관리자 집합 및 원격연수: 748명
- 통합학급 담당교사 집합 및 원격연수: 460명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학교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4)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특수교육 연구회 구성·운영
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15팀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순회교육 주 3회 이상 권장(특수교육지원센터 대표교사 8시간 이내, 순회교사 16시간 내외)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 수립(충북특수교육원) 및 치료지원 전담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4) 보조공학기기 구입 지원: 800백만 원
5) 장애특성에 맞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7교, 70백만 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관리 강화
가) 현장 맞춤의 다양한 보조인력 형태 운영 지원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속적 확대 지원 추진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연수: 권역별 4회 총, 500명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격 연수(15시간 또는 30시간) : 250명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신규 사회복무요원: 3개월 이내 장애이해·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연수 16시간 이상 실시
나) 기배치 사회복무요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
4) 유급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사. 개별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3)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을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
4) 개별화교육 현장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
2) 종합병원학교 내 병원학교(충북대병원) 운영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1교, 10백만 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교사 배치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승진가산점 및 이동가산점 부여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유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지원 강화
      •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10센터, 39백만 원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10교, 10센터, 100백만 원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운영을 통한 특수학교 진로교육 강화, 10교 총 110백만 원
   나) 거점센터(청주·충주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및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전문적학습공동체, 교과협의회 등을 통한 자유학기·학년제 프로그램 구성 등 교실수업 개선
   나) 담당교원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자료 활용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다)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 구축을 통한 진로체험처 발굴 및 확대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청주·충주)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전공과 11교 운영: 특수학교 10교, 일반학교 1교
   나) 학교기업 3교 운영: 청주맹학교, 꽃동네학교, 청주성신학교, 총 60백만 원 지원
   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3교 운영: 청주농고, 제천제일고, 충북산업과학고, 총 120백만 원 지원
   라) 진로직업 중점교육과정: 청주혜원학교, 충주혜성학교, 청주성신학교, 숭덕학교, 총 60백만 원 지원
   마) 전문직업양성 특화교육과정: 청주성신학교, 청암학교, 총 30백만 원 지원
   바) 진로교육 집중 학년(기)제: 청주혜원학교, 청주혜화학교, 충주혜성학교, 충주성심학교, 총 40백만 원 지원
   마) 학교 간 진로·직업교육: 꽃동네학교, 25백만 원 지원
   사) 전공과 및 고등부 직업교육: 특수학교 10교, 일반학교 1교, 총 196백만 원 지원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가)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연 3회 운영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가) 관계부처(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 실습 및 위업 지원 방안 모색
   나) 충청북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안내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4)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사업,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
   나)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 점검단 운영
   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등 위탁교육 확대
   라) 장애인고용공단(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과 연계한 취업지원 서비스: 진로설계 컨설팅,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산업체 단기 견학・체험 등
5)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가) 학교기업 및 거점학교 현장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
   나) 유관기관 연계하여 졸업 후 3년까지 사후 관리 추진

다. 특수교육대상자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

1) 장애학생 전환교육 운영
   가) 경제교육, 직장예절 및 스피치 교육,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노동인권 교육
   나)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정보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설명회,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자료집 제작
   다) 충북장애학생 직업박람회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자 문화공연 지원: 스포츠 및 문화공연 관람
2) 지역과 함께하는 전환교육 여건 조성
   가) 전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및 전환교육 연수
   나) 전환기 학부모 교육: 직장이해교육 및 현장탐방, 취미・창업클래스, 우리 자녀의 성장스토리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취업 및 장애인 서비스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전환교육 매뉴얼 개발
   라) 지자체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의 업무 협조 및 서비스 지원 연계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3) 충북특수교육원 내 장애이해교육실 운영 및 온라인 장애이해교육 운영
4) 기관별 직장교육으로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점검
   다) 모든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월 1회 이상 정기지원을 통한 학교별 인권보호 현장 점검 및 지원
   나)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은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1회 이상 실시
   다)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4)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가)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4센터, 35백만 원
   나) '긍정적 행동지원팀'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및 지원: 3교, 60백만 원
   다)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295백만 원
   라)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지원 계획 수립하고 가정 연계를 통한 행동중재 실시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안전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홍보 및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매뉴얼 준수 등 선정·배치 절차 강화
4)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마.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 및 치료지원 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가) 종일반 방과후학교
      • 44학급(특수학교 30학급, 특수학급 14학급) 운영
      • 종일반 1실당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1명 배치, 급당 운영비 6백만 원 지원
   나)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인당 월 120만 원 이내 지원
   다)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시간제 기간제교사 38명 배치, 급당 운영비 2백만 원 지원
2) 치료지원
   가) 일상생활 기능향상 및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1인당 월 12만 원 이내 지원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팀: 전담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2021. 9. 1.자 1명 추가 배치 예정)
   나) 충북특수교육원 전문직 배치: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직 배치: 전담 장학관 1명, 전담 장학사 3명, 겸임 장학사 7명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유·초 450만 원, 중 550만 원, 고 650만 원

나)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배치 시 경력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운영

3)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강화

가) 충북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연 2회(1월, 7월)

나)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운영: 정기회(4월),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노력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시 교육대상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나)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8월, 1월)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 확보 노력

다)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단위 : 교, 급)

구분	2021	2022	2023	비고
특수학교 수	-	-	1	
특수학급 수	29	18	15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초) 정교사(1급) 자격연수 자체 연수, 특수교사 유·초·중 신규임용 직무 연수

나) 성장과정별 특수교사 배움길 연수: 신입기, 성장기, 심화기

다) 특수교육교원의 마음 건강 및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치유 연수 운영: 2회

라)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한 교권 및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법률 상담 등 지원
-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교원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심층심리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정당한 편의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구축

-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 및 대여 안내 (충북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통합 배너 활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현장 활용 지원 강화 (시각, 청각, 학습, 의사소통, 이동 및 보행, 자세유지, 일상생활 등)

2)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강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기준에 맞는 시설·설비 확보를 위한 노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실시

2. 통합교육·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확대 운영

나) 통합교육 관련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강화

3)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4)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학교 1교, 통합교육 선도학교 4교 운영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5) 장애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통합교육운영비 확대 지원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정에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참여 권장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강화
   가)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 장애인일자리 참여: 117명 예정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와 연계 지원
2) 충청북도 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운영
   가) 청주성신학교 고3, 전공과 재학생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고3, 전공과 재학생
   나) 발달장애영역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3) 충청북도 교육청 어울림 '休' 운영
   가) 청주맹학교(시각장애) 전공과 재학생
   나) 시각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4)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
   가) 참여 학교: 꽃동네학교, 청주맹학교, 청주성신학교
   나)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11월 중, 특수학교,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
5)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
   청주농업고등학교,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제천제일고등학교 컨설팅 실시
6) 충북특수교육원 전환교육팀 운영을 통해 충북 전환교육 역량 강화
   가) 장애학생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체제 구축
   다) 진학 및 취업 정보 지원을 통한 사회 전환 능력 향상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확대 운영
   가) 일반학교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나) 장애이해교육 전문 강사 학교 방문교육 실시
2) 온라인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3) 교육기관 내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매월 1교 이상 방문)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협의회 및 간담회 실시: 각 2회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실시: 센터별 1회 이상
   다) 특수학교 대상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연 2회 이상 실시
2)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3)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충북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 연차적 추진
   가) 특수학교의 장애유형, 교육과정 운영현황, 교육환경시설・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19 ~ '22)
   나) 특수학급 설치연도, 통합교육 환경(편의성), 특수학급 시설・설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 연차적 교육환경 개선('19 ~ '22)
2)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컨설팅) 장학 및 사업별 모니터링으로 지원 역량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현장공감 특수교육으로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추진목적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장애학생 인권 존중 및 사회 참여 역량 강화

중점추진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나.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 사. 특수교육 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아.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카. 특수교육 스마트 교육 내실화
   - 타. 특수교육 지원장학 활성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다.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1교(당진꿈나래학교), 통합유치원(아산월천유치원) 개교
   나) 특수학급 신·증설: 총 39학급 증설(특수학급 24학급, 특수학교 15학급)
2) 특수학교(급) 학생 수 법정 정원 준수, 과밀학급 지원
   가) 유치원(4명), 초등학교(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나) 과밀학급 교사 추가 배치
3) 특수학급 재정 지원
   가)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 기준: 급당 4,000,000원 + 학교급(유·초·중·고)별 정원 초과 1명당 500,000원
   나)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학급당 연 30만 원 이상 편성 권장

나. 특수교육 교원, 통합학급 교사 및 관리자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기회 확대: 특수교사 1회, 신규 특수교사 1회 이상 운영
2) 특수교육 교원 및 센터교사의 통합교육 관련 연수 기회 확대: 연구회, 학습공동체 운영
3)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 부장교사 임용,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부장 임용(12교)
4)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학급 교사 연수 1회 이상 운영
5) 유치원 특수교사 직무연수 실시
6) 중등 특수교육 교원의 직업교육 연수 운영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대안평가 방안 마련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3)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라.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확대 배치

2) 특수학교(급) 노후 학급 환경개선비 지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확대(26교), 정다운학교 운영(2교)
2)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지원 강화
   가)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학교(기관) 운영(4개원, 2센터)
   나) 통합유치원 2개원 운영(천안도솔유치원, 월천유치원)
   다) 특수교육대상 영아(만 0~2세) 무상교육과 순회교육 운영
   라) 특수학교 영아학급(2학급) 운영, 영아프로그램 운영(2센터)
3) 통합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가)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지원, 청각장애 수어통역(6명), 문자통역서비스(5명), 보청기 배터리 지원(83명)
   나) 순회교육대상학생 교재·교구 지원 확대
   다)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라) 일반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교육 실시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인근 특수학급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등) 컨설팅 강화
4)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2교)

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과정 운영 도움 자료 개발 보급
2)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직업교육중점교육과정 운영 확대(7교)
   나)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7교)
3)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특수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
   가) 특수학교: 전교과·전학년 차시별 수업안
   나) 특수학급: 초-국어, 수학 / 중-진로와 직업 수업안

다) 맞춤형 특수교육 수학 콘텐츠 제작 제공 '도니머니, 어서와 화폐공부는 처음이지?'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

1)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그 결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2)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진학 및 전출 시 전입학교로 14일 이내 개별화 교육계획 송부
3)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지원 범위: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나)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3) 순회교육 담당교원 연수 강화
   가)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성교육, 인권보호 등에 관한 연수 강화
   나) 학기 초 순회교육 대상 학교 관리자, 통합학급 교사 연수 지역별 추진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구성, 보조공학기기 지원, 심리안정실 운영(8교)
2)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7교)
3) 의료적 지원 필요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의료적 지원을 위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1교),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2)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3) 병원학교 운영: 3기관(단국대학교 천안병원, 국립공주병원, 아람메디컬병원)
4)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 교원 및 또래를 포함하여 운영

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보조인력 1인당 학생 2~3명 지원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신규 연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 기배치 보조인력 연 1회 이상 지원청별 실시
3)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 포함 직무교육 16시간 이수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부장 학습공동체 운영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감각장애거점센터 운영(1개 센터), 자유학년제 거점센터(6개 센터)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4개 센터)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가) 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나) 주민센터, 시·군·구별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5)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강화
   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우선 지원
   나)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치료지원 실시
6) 가족지원
   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가족의 역량 강화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 지원 강화

다) 대학 연계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2개 대학)

라) 청각장애 학부모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 자원봉사단 운영(15명)

7)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보조공학(학습보조) 기기 지원(22개 기기)

나) 문자통역서비스(5명), 보청기 배터리 지원(83명)

다) 수화통역사 지원(6명)

8) 통학편의 지원

가) 통학비 지원: 1학기 788명 지원

나) 통학보조인력 배치: 특수학교와 통합유치원에 통학차량지도원(43명), 운전원 배치(공무직 1명)

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가)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IT결합형 타악기 어울림 연주단, 사물놀이 연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연수: 특수교사 대상 문화·예술·체육 직무연수 운영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가) 장애학생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장애학생 우수 선수 발굴·육성

나) 장애인 체육대회 종목별 선수 조기 발굴: 희망 학교 중심으로 체육 육성 종목 발굴 지원

다) 장애인 체육회와 연계한 선수 훈련 실시

차.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지원

나) 특수교육교원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연수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 접근권 강화

가)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사항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화기기 활용 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3)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가)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나)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다)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4) 특수학교 e 스포츠실 구축

카. 특수교육 지원 장학 활성화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장애유형,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장학 실시
   나) 특수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특수교육 행복나눔 장학 실시
   가) 학교 자체 행복나눔 장학 계획 수립 시행: 학교자체 행복나눔장학 지원 조직 구성·운영
   나) 단위학교 자율적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장애맞춤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장학·동료장학 활성화,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3) 특수교육 행복지원 장학 운영
   가) 학교 요청 및 필요시 정책 안내와 지원 중심의 수시 장학 활동 전개 (연 1회 의무, 2학기 희망교 대상)
   나) 행복지원 장학 지원단 구성·운영(29명 구성)
   다) 권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장학(3개 권역)
   라) 특수교육 현장소통단 운영(10명)
   마) 학교 지원 장학 활성화(센터별 특수학급 대상 지원 장학 실시)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1)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특수학교 8교
2) 자유학년제 운영교 자유학기 활동 221시간 이상 확보: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7개) 지정·운영
3) 교원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가) 교사연구회 등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방법 적용
   다)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활용 및 자유학기 활동 운영 프로그램 구안·적용

라) 학교장, 핵심 교원,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 운영 및 컨설팅 추진

4)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

나)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양질의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확충으로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지자체, 대학 등과의 진로체험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가)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나)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초등학교(5, 6학년)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1교)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7교)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교육과정 내 안정적인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

나)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의 현장실습 운영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가)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나)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36명, 3개 수행기관)

4) 중등과정 이상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중등과정 이상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8교)

5) 취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1개단)

나)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원스톱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다.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가)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초·중등교육 지원
   나)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인프라 구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가)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자가 교육기관 소속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기회 확대
   다)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
   라)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교과서의 장애 관련 내용 교육 충실
2)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다) 센터중심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3) 장애이해·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가) 학교별 다양한 장애영역의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실시
   나)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
   다) 장애인 초청 장애이해 토크콘서트, 수업전개 등
   라) 통합캠프, 통합교육 연찬회 등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마) 장애인식개선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4) 충청남도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1개 위원회)
   가)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나)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의 다양화 모색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시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5개단 운영(도교육청 1, 교육지원청 14)
   나)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다)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라) 매월 1회 이상 일반・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마)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 (성)폭력 피해 예방, 인권보호 강화
   바)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 조력 기능 포함
   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담인력(상담사) 배치・운영: 2명(천안 1, 아산 1)
   아)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주관교육청 운영
2)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가)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나)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조기 대처 지원
3) 더봄학생(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인권침해 예방 관리, 지원 강화
   가)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
   나) 교육지원청별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지원 계획 수립・운영
   다) 인권지원단을 중심으로 가정-학교-경찰-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가) 현장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3)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점검 강화

4) 장애학생 통학안전 지원

가) 취약지역 통학학생 실태 파악: 농로, 산길, 골목길 등

나) 경찰서와 연계한 통학시간대 순찰 강화 통학지원 '길벗 동행 서비스' 실시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과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교육적 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태 파악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과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다) 진단·평가 담당자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실시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유치원 - 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5) 취학의무 면제·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과 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유치원 방과후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연계한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

2) 특수학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배치 운영(8개 특수학교, 22명)

3)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종일반 운영

4)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중 희망자 우선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특수학교 1교 신설: 내포꿈두레(2022)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교사 직무연수 실시: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회, 교육지원청 주관
- 충남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연수: 특수교육 신규교원 2021. 7월 중 실시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각급학교 안전·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편의 증진 조례 제정 예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장애학생 안전·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직무교육 등)

-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교육지원청별 실시
- 기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건강보험공단,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 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주민센터, 시·군·구별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등 교육기부 인력 활용
-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다. 장애학생 문화 예술·체육 지원 강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노력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초등 1~6학년 학생 대상 생존수영 실기교육 4시간 이상 실시 의무(중증 장애 또는 건강문제로 인한 경우 예외 가능)
- 장애학생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장애학생 우수 선수 발굴·육성
- 통합체육 운영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발전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양질의 체험처·체험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지자체, 대학 등과의 진로체험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 거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매칭, 안전한 체험처 관리
- 꿈길, 학교 내 자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및 실습처 컨설팅 실시
   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실습 활성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하반기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3)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장애인고용공단 연계)
4)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배치(센터 7명 추가 배치) 예정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개선 행사 추진
   가)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이 연계한 작은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등

나) 특수학교(급)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학예회 등
다) 장애인식 변화 조사: 설문조사, 감상문 작성 등
라) 장애 이해 주간 운영: 모든 교직원・학부모 대상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행사 운영

2) 충남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인권지원단 상시 현장지원 실시(14개 지원단)
나)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의무
다)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라)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마)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바) 전국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실시

2)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3) 특수학교(급)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다.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기・적성 계발과 학습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 장애 개선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나) 꿈과 끼를 키우고, 발달 요구에 적합한 방과후학교 운영
다) 장애학생 특기・적성, 문화・예술・체육 중심 프로그램 운영

2)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가)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 운영 형태의 다양화
나) 장애특성, 학부모의 요구, 지역 실정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다)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라) 체육・문화・예술 등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전라북도 특수교육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추진

가.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사회통합 실현

나. 추진 목표

1)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
2)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3)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다. 중점추진과제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4)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3.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증감 현황

(단위 : 명)

연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계	증감	비고
2020	814	1,784	1,108	3,706	10	
2021	806	1,968	1,085	3,859	153	

2)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 현황

(단위 : 학급)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계
	유	초	중	고		
2020	9	5	3	-	△6	**11**
2021	15	6	2	1	△4	**20**

3) 특수학교(급) 노후환경 개선과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구축

가) 특수학교(급) 교실환경 개선: 18학급

나) 특수학교(급)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구축: 총 9개교(특수학교 3개교, 특수학급 6개교)

4) 특성화된 특수학교 설립

전북동부권특수학교 설립 추진 중: 중·고·전공과 과정 8학급 57명 규모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 2021. 2월

2) 특수교육지원단·지역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과 운영

가) 저경력교사 행복동행 맞춤형 컨설팅 운영: 45명, 1회

나) 유·초·중등 신규 특수교사 맞춤형 연수 운영: 3회

3)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지원: 5개 영역, 29개 동아리

지원 영역	동아리 수	필수 운영 내용
장애인권	3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위한 연구, 사례 발표회 운영
특수교육 교과	4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연구, 사례발표회 운영
특수교육진로직업	12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연구, 사례발표회 운영
장애체육활동	8	장애학생체육활성화 지원 연구, 교사 및 사제동아리, 사례발표회 운영
특수교육정보화	2	전북IT페스티벌대회 지원, e-스포츠, 정보화 활성화

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9개교 / 104,000천 원

2) 특수학급 자율선택과제 운영: 50학급 / 75,000천 원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3회

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통합교육 유치원 운영 확대: 2개원(익산맑은샘유, 익산부송유)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거점센터 운영: 14기관 / 130,000천 원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운영지원: 특수학교 10교, 동아리 8개 / 44,000천 원
3)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운영: 전북IT페스티벌대회 운영, 연구회 2팀 / 12,000천 원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14개 지역 구성, 찾아가는 지원 담임제 운영
2) 통합학급 프로그램 운영: 100학급 / 100,000천 원
3) 통합교육 거점·중점기관 운영: 15개 기관 / 80,000천 원
4)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지원: 8교 / 80,000천 원
5)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15개 특수학급 신증설, 연령별 특수학급 운영

나. 일반학급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학급 교사 원격직무 연수: 1,000명(15시간 이상) / 18,000천 원
2)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연수: 관리자(교장, 원장), 3시간 이상(원격연수) 안내
3) 장애이해교육 연수: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1)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특수학교 10교 / 100,000천 원
2)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2개교 2명
3) 정서 심리 상담지원: 10개교/ 20,000천 원

라.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강화

1)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4개 센터 운영(시각, 청각, 지체, 정서장애) / 70,000천 원
2) 특수학교 보조공학기기 지원: 10개교 / 100,000천 원

마.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승강기, 무대경사로 등 / 3,410,000천 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1)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지원: 특수학교 1교 / 15,000천 원

2)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운영지원: 특수학교 9교 / 100,000천 원
3)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교육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2교 / 25,000천 원
4)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지원: 특수학교 1교 / 10,000천 원
5) 현장중심 직업 교육과정 운영지원: 4개 교육지원청 / 20,000천 원
6)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급 3교 / 60,000천 원
7) 전문직업교육기관 연계 장애학생 직업 위탁교육 운영지원: 4교 / 20,000천 원

나.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지원

1) 맞춤형 일자리 사업: 2개 수행기관 / 70,000천 원
2)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지원: 4교 / 20,000천 원
3) 희망드림 직업실습생 운영지원: 특수학교(급) 학생 55명 / 305,000천 원
4) 특수행정실무사 배치 확대: 50 → 55명 / 1,499,019천 원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하는 특수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87명 (30명 증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개선
   가) 장수 1개소 신축 / 1,440,000천 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버스 지원: 무주・진안・장수 3개소 / 47,000천 원
3)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운영
   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운영: 3개소 / 431,000천 원
   나)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4개소 / 70,000천 원
   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1개소 / 2,950,000천 원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5개단, 장애인권동아리 3팀 / 185,000천 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2회

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 14기관 / 52,000천 원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2,600명 / 3,744,000천 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1,045명 / 522,000천 원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73명(54학급) / 1,876,000천 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2,470명 / 2,964,000천 원

마. 건강장애(보호필요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지원: 3기관(83명) / 333,000천 원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지원: 398명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특수교육기관의 확충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및 컨설팅 실시

– 특수학교(급) 교실환경 개선교, 특수학교(급)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구축교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신규·저경력 특수교사와 함께하는 특수교육지원단 '행복동행' 운영 및 특수교육현장 컨설팅: 연중
2) 2021년 하반기 특수교육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11월 중
3)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7 ~ 12월
4)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사례 나눔: 11월
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연수: 7월 중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3회
7) 특수교육 관련 지침·자료 제작: 3종 / 4,000천 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전북정보화대회, e스포츠대회 운영: 6월, 9월
2) 특수학교, 일반학교 문화예술체육 운영 나눔: 11월 중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 운영방안 워크숍: 8월, 9,000천 원
2)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학교 컨설팅: 연중
3)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역량강화 연수: 6 ~ 12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중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1) 2021년 특수교육 진로 · 직업 연수 운영: 7월, 10월
2) 2021년 특수교육 진로 · 직업교육 운영 평가회: 12월 중 총 50명 내외
3)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현장 모니터링: 7월~9월 중 총 9교
4) 특수교육 하루장터, 작은 음악회 운영: 7월 중, 5개 기관 참여

나.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지원

1) 특수행정실무사 배치 학교 현장 모니터링: 7월 중 총 10교
2)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현장 모니터링: 10~11월, 특수학교(급) 총 50교 내외
3) 특수행정실무사 기관별 수요조사 및 배정: 7~12월 중
4)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생 하반기 운영 지원: 9~12월

4.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 공사: 1개소, 장수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6~12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운영

1)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연중
2) 장애학생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가) 행동중재 자문단 컨설팅: 연중
   나) 행동중재 현장지원가 연수 운영: 원격, 집합 연수로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및 특별모니터링 실시: 연중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3) 장애학생 인권지원, 문화예술체육, 가족지원 운영 사례 나눔과 평가회: 11월 중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6 ~ 12월

1)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2)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운영 강화

– 건강장애 관련 권역별 설명회 운영: 3회, 7월 중

3)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지역별 연수: 8월 중

전라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 목표

가.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1)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가) 특수학교(급) 현황

(단위: 학급)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6	63	45	50	27	**191**
특수학급	48	351	136	90	-	**625**

나) 특수학교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구분	개교예정	학교명	규모	비고
특수학교	2022. 3. 1.	(가칭)광양햇살학교	23학급 146명	통합

다)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설립 기반 마련

- 유치원 관리자 대상 통합교육 활성화 연수를 통한 통합유치원 설립 공감대 형성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학교 안	학교 밖 광역	교과연구회	계
동아리 수	23	11	3	**37**

다) 특수교육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찬회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운영(1회, 8월)
-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과정 연수 운영
-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1,040명)

라)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별 신규 특수교육교원과 유경력 특수교육교원 간 멘토링제 운영

마)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 실시

바)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2회 예정)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나)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의 평가조정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학업성취 평가 방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등 명시

다)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3개청

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제공

가) 통학차량 및 통학차량실무사 지원(26대, 차량당 1명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2청, 9교)

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2)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2021.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6개원 운영
3) 일반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속적 지원
4)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22개단, 194명)
5)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공유,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운영을 위한 통합교육(정다운학교) 연구(중점)학교 컨설팅(2회, 3교)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나)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과정 운영
다)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권장
나)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다)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운영
   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전라남도교육청 고시 제2020-8호(2020.2.11.)] 등을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 및 정도에 따른 학교(급)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일반학급,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학생: 해당학교 학년 편제와 시간 배당 적용 하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가능
      - 순회교육 대상학생: 해당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학생의 장애특성과 정도에 알맞게 편성·운영
3)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가)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2) 순회학급 운영: 재택 장애학생 순회교육, 복지시설 순회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1교 순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4) 순회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실시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나)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등 연계 지원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 보건교사의 의료조치 협조 방안 마련 및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조인력 등 의료적 지원 전문 인력 배치・활용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의료적 지원 관련 내용 작성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및 기준 마련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시 성범죄 범죄이력 조사 철저

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예방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연 2회) 철저 및 업무일지 작성 강화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가)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반드시 30시간 이상의 연수 실시(원격연수 포함)

나) 지원대상 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연수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사회복무요원의 전공 및 적성,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의무화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다) 개별화교육계획 나이스 시스템 작성 권장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 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 확대

나)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 집단 편성 활용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홍보 및 행·재정 지원

나) 병원학교 설치·운영

병원학교명	설치 장소	운영교	비고
여미사랑병원학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오성초	림프성 백혈병, 소아암 등
		화순제일중	2007. 3. 1.
느티나무병원학교	국립나주병원	나주이화학교	우울에피소드, 적응행동

다) 원격수업 운영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초·중등과정
-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초·중등과정

라)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 등으로 인해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요보호 학생)은 교육(지원)청이 허가한 경우 지원 가능

2)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병원학교 강사, 보호자 교육 강화
   나) 보건실, 도서관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상시 비치
3)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나) 병원학교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4)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가)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나)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다) 대상학생이 원적학교 평가기간 동안 결석하고, 화상수업기관의 원격수업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간만 질병결석으로 처리하고, 성적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출
   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 및 평가담당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운영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 추진 총괄 및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내실화 및 실적 관리 강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7명 증 배치)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라)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주민센터, 시·군별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나)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다) Wee 센터, 진로체험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라) 특수교육 관련 홍보전략 수립과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유관기관에 배부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 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나) 특수학교(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 교육 지원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가) 치료지원 운영 실태조사, 지역여건 및 장애영역 등을 고려한 치료지원 개선 방안 마련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 전담인력), 특수학교(치료사 채용),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실시 가능

2) 가족지원
   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실질적 조력자인 가족에 대해 다양한 지식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체제 구축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등의 지원
   가)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능력 신장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통한 학습 편의성 및 성과 제고
   나)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목포, 순천, 나주)
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편의를 위한 통학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확대: 특수학교 통학차량 26대, 통학차량실무사 26명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 보호자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생 1일 2회, 동행 보호자 4회, 수업일수 기준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라) 개별화교육계획에 통학지도 계획을 첨부하여 통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책무성 강화
5)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치료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제공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학년제 확대·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운영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 확대를 희망하는 학교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과 연계 강화
   다)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나)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자원 강화
2) 현장실습 활성화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4) 고등·평생교육 참여 여건 조성
5)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6)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다) 교육기관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가) 유・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의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활용

나)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상시 감지체계 운영

도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 민원 / 전남청렴신문고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강화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다)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2회 실시 및 장애학생 및 교사 표집면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라) 유관기관 연계 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마)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라)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나) 비장애학생 성교육 시 장애학생에 대한 성추행 예방교육 병행 실시

다)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홍보 철저

5)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강화

6)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나)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가) 교육현장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나)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나)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다)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시설 개선 지원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제 구축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강화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나)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3)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5)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가)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나) 교육지원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마.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가) 지원대상: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영유아
   나) 운영: 주 15시간 미만, 영유아 방과후과정의 취지와 유치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보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계획 수립 운영
2) 특수교육 초등 보육교실 운영
   가) 지원대상: 특수학교 초등(중학)부, 초등 특수학급 재학생 중 희망자
   나) 운영: 주 15시간 미만,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시간 이용
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가) 분야: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치료지원 등 학생, 학부모의 요구 및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나)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통합교육과 함께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권장
   다) 교외 방과후 활동 지원: 치료지원, 소질・적성 계발 관련 지원(교과관련 학습 제외)

4) 돌봄 지원체제 강화(토요 프로그램 포함)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토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방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권장
   나) 학생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철저
   다) 예산(학교운영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유관 기관 적극 활용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나)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66㎡) 확보
2) 특수학급 재정 지원
   가)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우선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지침에 포함
   나)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조기에 단위학교에 배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가) 특수학급에 가급적 경력 교사를 배치하고, 신규 교사 배치 시 경력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활용
   나)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학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나. 특수학교(급) 노후 및 낙후된 시설 환경 개선

다.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 운영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연구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한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라. 학교 단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확대 · 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기 · 학년제 연계학기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내실화 지원
2)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
3)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 자원 발굴 및 특수학교(급) 제공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2)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 내실화
3)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 사후관리 체제 구축
4) 직업 및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5)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7)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8) 학부모 대상 진로 · 직업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도 및 협력적 분위기 확산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가.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전문가 그룹 구성 · 지원
2)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유관기관 연계 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장애학생 학교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2)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3) 예방활동 위주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다. 장애학생 체험형 안전 교육 활동을 통한 안전 강화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마.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및 재정 지원으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특수교육

2. 기본방침

가.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나. 교원의 통합·특수교육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다. 성공적 사회 통합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3. 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목적

가)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여건 개선

2) 추진 내용

가)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나) 합리적인 기초 자료에 근거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중장기 수용계획 마련

다) 특수학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을 운영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

라)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목적

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성과 제고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사 배치 개선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다)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목적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를 위한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2) 추진 내용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환경 구축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목적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2) 추진 내용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및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 자원 활용

나)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다) 특수교사·일반교사 협력 강화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목적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성과 제고

2) 추진 내용

가)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지원, 신규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등 우수 학습공동체 발굴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목적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및 현장 안착 강화

2) 추진 내용

가)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다)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2) 추진 내용

가) 각급학교(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나)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다) 순회교육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목적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2) 추진 내용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나)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참여 기회 확대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나)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다) 사회복무요원(특수교육보조) 배치 및 교육 강화

라)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지원, 통학지원, 1가정 2자녀 장애학생 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2) 추진 내용

가) 치료지원

나) 가족지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8교, 23개 교육지원청

다)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라) 통학지원

마) 1가정 2자녀 장애학생 지원

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아.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목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2) 추진 내용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나)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제공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의 연계성 강화 방안 강구

자.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목적

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나)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2) 추진 내용

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

다)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라)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목적

가)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나)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기능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다) 권역별 기능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포항, 구미, 경산, 안동)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목적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2) 추진 내용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지원(30교), 문화예술 거점 특수학교 지원(2교)〕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1) 목적

가)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혁신

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2) 추진 내용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나)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다)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라)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목적

가) 장애학생 미래생활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역량 등) 강화

나)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 참여 등) 확대

2) 추진 내용

가)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나)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라)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마)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바)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안정적 배치 지원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목적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확산 등을 통한 유·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2) 추진 내용

가)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나)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목적

가)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성교육 내실화

2) 추진 내용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다) 장애인권교육 강화

라) 장애학생 행동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목적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2) 추진 내용

가)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다)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라)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라)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마)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목적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2) 추진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나) 특수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

다) 방학프로그램 운영

라)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목적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2) 추진 내용

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

나)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장학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다)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과밀학급 우선 설치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추이 변화와 특수교육교원의 수급 사항 등 합리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한 특수학급 신·증설

3) 지역 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특수교사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대여 시스템 구축

2)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2)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사 양성과정의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과 연계 지원 등 특수학급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3)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5)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거점별 1개 지정 운영)
6)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자격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2)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지원[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 구미, 경산, 안동)]
3)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연구회 등 다양한 주제 중심의 우수 학습공동체 권장 및 발굴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2)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학교교육이 가능한 순회교육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재택순회, 학급순회) 지원 계획 수립 추진
3)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4) 특수교육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순회교사에 대한 성추행(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 배치 결정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2)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각급학교에 배치
2) 특수교육실무사 직무 역량강화 연수 실시(455명)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예산지원(390명)
4)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배정 및 예산지원(140명)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치료지원, 가족지원(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대중교통(버스)요금 기준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각급학교에서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컨설팅 장학 강화

자.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학적 관리 및 원격수업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연 1회 이상 연수 실시)
2)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및 계획
   ○ 순회교육 계획, 진단평가 계획,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계획,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계획, 예산 집행 세부 계획 포함
2) 4개 권역별 기능 거점 및 23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 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1인 1기,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지원(30교)
   ○ 문화예술 거점특수학교 지원(2교)

3.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1) 교육지원청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인력 확충 및 담당자 지정・운영
2)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3) 2020년부터 특수학교 8교 자유학년제 운영, 자유학기 활동 221시간 이상 확보,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특수학교 1교(공모)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Dream) 페스티벌 개최
   ○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참가학생 선발 및 지도(경상북도교육청 주관, 2021. 10. 14.~15., 경주)
2)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 특수학교 학교기업
      - 안동영명학교: 보안문서 파쇄, 커피제조
      - 포항명도학교: 직업체험훈련실, 임가공
      - 상희학교: 커피제조, 직업체험훈련실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인동고등학교: 바리스타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장애공감문화 확산

1) 모든 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및 장애 인권교육 의무 실시

2) 전문강사,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 직장교육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23개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2)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등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체 운영 지원

2)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전문성을 갖춘 의사, 치료사, 특수교사,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진단·평가팀을 구성 운영: 학부모 및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서류 요구 금지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지속적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 활용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재활 및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재활승마 가족캠프' 운영: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40가족 8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1기, 2기) 기간 중 2박 3일간 운영

바.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희망을 주는 맞춤형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장학 별도 추진

2) 특수학교(급) 장애유형, 장애정도,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도

경상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1. 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2. 중점추진과제

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급환경 개선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3)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확대

나. 통합교육지원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2)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4)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내실화
5)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2)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3)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

1) 특수학교 설립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 요구에 적합한 특수학교 설립 및 권역별 특수교육 기회 제공

나)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다) 권역별 특수학교 설립(2022. 3. 1.자 밀양권역 특수학교 개교 예정)

2) 특수학급 신·증설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지원

2021학년도 신·증설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지원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

가) 특수교육 전문가 심화교육 및 자기계발 연수 운영(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373명)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요원 연수 운영(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30명)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연수 운영(집합연수 80명)

라) 신규 및 저경력 특수교사 연수 운영(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72명)

마)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지원(원격 2,000명)

2)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가) 통합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지원: 5개 동아리 지원(1동아리당 200만원)

나) 특수학교: 학교별로 지원예산 지원(교사 1인당 3만원)

다) 특수학급: 소속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예산(교사 1인당 3만원)

3) 특수교육 자료개발

가) 특수교육 수업(원격)지원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150편

나) 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탑재 및 지원체계 강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홈페이지(gnise.gne.go.kr)에 개발자료 탑재(메인화면-특수교육지원센터-자료실)

다) 경남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아이톡톡/톡톡나눔터/장학/특수/특수자료나눔)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1)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확대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562명('21년)]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 특수교육 지원인력 집합 및 원격연수: 1,420명(1월, 8월 및 수시 원격)

2)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합시스템 운영

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실 운영

다)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대여

3)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조정 지원: 학교 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편의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통학버스 용역비, 기숙사 숙식비, 기숙사 운영비 지원

5)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치료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배치: 118명
-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별 치료지원전담팀 운영(5명 이상)
- 병원치료(물리, 작업, 청능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월 15만 원 이내 실비 지급, 치료지원 전자카드 활용 및 영수증 청구 가능)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별 가족 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강화

1)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도단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및 18개 교육지원청(거점: 진주, 김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운영: 122명[19년(62명) → 20년(85명) → 21년(122명)]
- 교육과정적 지원, 사회적관계 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원

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자폐성장애 거점지원센터(창원, 거제) 운영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수교육지원 확대
- 시청각장애 특성화센터(특수교육원, 창원, 김해, 함안)를 활용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 청각장애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 통합교육거점 유치원 확대 및 운영
가) 장애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3개 유치원)
나)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지역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교육 연수 실시

3) 특수교육체험관 운영
가) 안전생활체험(32회, 1,280명), 진로체험(12회, 480명), 공학체험(25회, 1,000명), 장애체험(52회, 1,680명)
나) 매주 월~목요일(당일 체험형)

4) 특수교육수련관 운영
가) 특수학교(급) 초·중·고등학생 (31기, 1,550명)
나) 매주 월·수·금요일(1일 체험형 수련활동)

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고등학교과정 특정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중심 중점학교 운영지원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다)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가)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다) 시각장애학생 대체교과서 지원
      - 대상: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 유형: 점자교과서, 확대교과서(B4, A3), 음성파일
4)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침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운영지침 발간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개최
5) 정다운학교 운영
   가) 교육부 요청 정책연구학교운영[산청초등학교(1/2)]
   나) 운영주제: 온누리 협력교수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학급학생 소프트 스킬 신장 방안

다. 개별화 교육계획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개별화교육계획운영 안내 연수(온라인연수)
   - 경상남도교육청온라인전달연수(https://www.gnlec.kr/main/index.jsp)
   - 연수기간: 2021. 3. 1. ~ 2022. 2. 28.
   -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사, 관리자, 학부모,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자 등에 대해 연수이수 독려
2)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개별화교육계획서 작성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책임은 단위학교장(교육책임자)에게 있음

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내실화

1)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 바람직한 행동형성을 위한 학교, 학급, 개별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장애학생 문제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특수학교 10개교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연계 지원, 방문간호사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의료적 지원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
3)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경상대병원학교(진주혜광학교), 양산부산대병원학교(양산희망학교)
   나) 원격수업 지원: 만성질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신체 질환 또는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지원
   다)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10개교
4)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파견학급 운영: 순회학급 26학급, 파견학급 10학급

마.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지원 연수
   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원장) 연수 운영(실시간 온라인 및 집합 4기, 1,000명)
      - 매년 3시간 이상 이수(시·도 교육청 평가 반영)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감(원감) 연수 운영(6월 실시간 온라인, 300명)
   다) 통합교육 행정지원(행정실장) 연수 운영(6월 집합, 80명)
2)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역량 강화 연수
   가)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 강화
   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7월 실시간 온라인, 200명)
   다)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위탁 원격 연수 실시(연중,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 전액 부담)
   라)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집합(원격)연수 이수 독려(최근 10년 이내 누적 15시간 이상)

3.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내실화
   가) 자유학년제 운영: 전 특수학교(10교)
   나)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각 학교별 전문적수업공동체 지원: 10교)
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단 운영
   자유학기 교과 재구성 및 평가, 교실수업 개선 방안에 대한 지원
3)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거점센터 운영
   가) 거점센터: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나)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활동 지원 등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특수학교 8개교 배치
2)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창원천광학교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아림고등학교
3)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가) 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 운영(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나)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위한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가)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각 급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조항 신설 · 강화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가) 운영기관: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창원, 김해, 거제, 양산, 고성, 사천)
   나) 대상학교: 64교(초, 중, 고)

나.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1)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해당학교별 신입생의 적응을 위한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2)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 교육비: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나) 방학중 희망나눔학교 운영 지원: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승인된 민간지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

다) 특수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운영(특수학교 5교 12학급, 유치원 49원 54학급)

라)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특수교육대상자 지원(47교 78명)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체계 확립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나) 정서행동장애 및 학습장애 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중학교 진학 시 재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여부 결정

다) 건강장애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여부 결정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나)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 2회 이상 실시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자 필수 참여

5) 특수교육현장자문단 운영

가) 학부모, 특수학교 교원, 전문직,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나) 정기협의회(연 2회) 및 수시협의회 개최

다) 경남특수교육의 중요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의 공공성 확보 및 공감적 분위기 확산

6)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센터장 협의회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장(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소관 부서장) 협의회를 통한 특수교육정책 의사소통 및 현안과제 협의

나) 연 2회 정기협의(상·하반기) 추진

다. 국제교류협력 사업 지원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 사업

– 베트남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지원 및 교육

– 중장기적 지원 전략으로 차년도 지원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학급 환경 개선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특수학교 설립	-	1	-	2022. 3. 1. 밀양아리솔 개교 예정
특수학급 신·증설	55	57	57	
노후특수학급 환경개선	10	25	25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555	580	600	연수지원 인원 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5	5	5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수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특수교육실무원 증원	50	50	50	특수교육실무원 증원 수
보조공학기기 지원	250	270	300	보조공학기기 대여 인원 수

2. 통합교육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지원체제 구축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지원	-	-	-	특수학교 미설치학교 통합교육지원실 구축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9	21	2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수

나.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72	75	77	전체 학교 수 대비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비율
시청각장애학생 대체자료 지원(명)	30	30	30	시청각장애 대체자료 지원 학생 수

다.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지원 내실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실)	1	1	1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수
건강장애학생 지원(명)	180	180	180	건강장애학생 원격 수업 지원 인원

라. 통합교육 역량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지원 연수(명)	1,000	1,000	1,000	통합교육지원연수 일반학교 관리자 참여 인원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연수 이수(%)	89	90	91	통합학급담임 특수교육연수 이수율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확대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교)	10	11	11	자유학년제 운영학교 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단 운영(개)	1	1	1	운영지원단 구성 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회)	1	1	1	담당자 연수 횟수

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1	3	1	진로전담교사 증원 수
전환교육지원실 프로그램 운영	65	67	69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참여율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교)	64	70	75	장애이해교실 지원 학교 수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명)	370	400	430	장애인식개선 참여 인원 수

나.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세부 사업 내용	연도별 추진 목표			비고
	′21	′22	′23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92	95	95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참여율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급)	42	45	46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2. 추진목표

가.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가. 균등학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Ⅱ 2021년도 추진 실적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급 신설

가) 유치원: 3학급(제주중앙초병설유치원, 서귀포초병설유치원, 월랑초병설유치원)

나) 고등학교: 2학급(대정고, 서귀포고)

2) 특수학급 증설

초등학교: 3학급(외도초, 한림초, 일도초)

3) 특수학교 증설: 6학급(제주영지학교 4학급, 제주영송학교 2학급)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1)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원 직무연수: 437명

2) 2020년 자유학기제에 따른 특수교사 수업 활성화 역량강화 연수: 2020. 8. 8.(토), 7시간, 57명 참가

3) 서귀포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및 장애이해' 직무연수
: 2020. 11. 21.(토) ~ 11. 28.(토), 15시간, 16명 참가

다. 정당한 교육 편의제공 강화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지원 강화

2) 장애인편의시설 컨설팅 및 실태점검 2개교(대정고, 서귀포고)

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154명, 안전실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 79명, 특수교육자원봉사자 276명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연수: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원 직무연수 123명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 체제 강화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함덕초, 도평초, 한라초, 오라초, 동홍초, 남원중

2) 정다운학교 운영: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 삼성초, 이도초, 토평초, 세화중, 표선중

3)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6개팀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교육담당교원연찬회(특수학교, 고등학교 교원 대상): 2020. 10. 16.(금), 39명 참가

2) 장애이해의 인사이더(제주시): 2020. 7. 27.(월), 대면 46명, 비대면 100명 참가

3)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직원 연수(서귀포시): 2020. 7. 31.(금), 69명 참가

4) 각급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5) 통합교육수업연구회 지원: 1개 동아리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가) 학교교육컨설팅: 7교(특수학교 1, 특수학급 6)

나) 수업컨설팅: 4교(특수학교 1, 특수학급 3)

2)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학급 컨설팅 장학

가) 학교교육컨설팅: 39교(유 4, 초 26, 중 9)

나) 수업컨설팅: 33교(유 4, 초 26, 중 3)

3) 서귀포시 특수학급 컨설팅 장학

가) 학교교육컨설팅: 25교(유 2, 초 15, 중 8)

나) 수업컨설팅: 8교(유 2, 초 6)

4)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노형초등학교병설유치원

5)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특수 3교

6)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컨설팅: 특수 3교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재택 순회학급 운영: 제주영지학교 6학급, 서귀포온성학교 3학급

2)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유 34명, 초 50명, 중 6명, 고 5명

3)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4)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14명, 꿈사랑학교 28명

나)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지정 운영

- 협력병원: 제주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협력학교: 일도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 이용학생: 코로나19 관련으로 이용자 감소

다)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운영

- 협력학교: 제주영지학교
- 이용학생: 초등 2명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가)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141명

나) 제주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305명

다) 서귀포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68명

2)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140명,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65명(비대면)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대여: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31회,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27회

4)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3개소
5)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3개교, 2기관
6) 토요프로그램 운영: 2개소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158명, 안전실무원 3명,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276명, 사회복무요원: 79명
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770명
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월 120,000원 한도)
   가) '제주희망나눔카드' 재활치료 지원 제공 기관 이용: 802명
   나) 일반 병의원 이용: 78명
4)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실 운영
   가)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3실
      - 순회치료: 15명(초 14, 중 1) - 내방치료: 7명(영아 1, 유 2, 초 4)
   나)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3실
      - 순회치료 23명(유 1, 초 19, 중 3) - 내방치료 4명(유 1, 초 3)

3.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112,000천 원
2) 특수학급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가) 중학교: 26학급(52,000천 원)
   나) 고등학교: 20학급(44,400천 원)
3)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3개교(120,000천 원)
4)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3개교(제주고, 표선고, 함덕고)
5)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6개교(제주중앙여고, 제주일고, 제주여상, 중문고, 성산고, 서귀포산업과학고)
6)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등 8개 기관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수 3교
2) 교실수업개선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3개 동아리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 코로나19로 동영상 자료 개발 보급 (읍·면지역 70교 DVD 발송)
2)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 보급: 우리는 모두 친구(동영상 자료)
3)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강사 지원: 170학급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개팀,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105교

다. 방과후교육 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개교
2)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31학급(유 10, 초 75, 중 26, 고 20)
3) 특수교육지원센터 주말학교 운영
   가) 행복충전 주말학교: 40명(초 23, 중 17)
   나) 토요프로그램 운영: 22명(초 16, 중 6)
4)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 중 계절학교
   가) 푸른솔 계절학교(제주시)
      겨울: 108명(유 10, 초 63, 중 20, 학부모 15)
      여름: 624명(유 73, 초 415, 중 136) 비대면
   나) 방학 중 계절학교(서귀포시)
      겨울: 27명(유 1, 초 24, 중 2)
      여름: 200명(유 21, 초 165, 중 14) 비대면
5) 특수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3개교
6)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54명(민간위탁 2개 기관)
7) 장애학생 계절학교 운영: 68명(민간위탁 2개 기관)

라. 장애영유아 교육비 지원

장애유아교육비 지원(만 3세-취학 직전)

- 제주시교육지원청: 21명(공립유 1, 사립유 2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명(사립유 10)

마.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1) 신·증설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11학급(유 3, 초 3, 고 2, 특수학교 4)

2) 노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10학급(초 5, 중 2, 고 3)
3)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131학급(131,000천 원)
4) 사립특수학교 통학편의 지원: 임차버스 2대

Ⅲ 향후 추진 계획

1. 균등학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기회 확대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나) 2021년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2) 특수학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가)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초등 1학급 운영지원
   나)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추진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역량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시・청각장애 특수학교(급)에 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점역사, 교정사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 교원의 우선전보 및 전보유예 확대 권장
   나) 도서지역, 읍・면 단위에 속한 특수학급에 정교사 우선 배치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권장
   나) 현직교사 중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점역・교정사, 한국수어통역사, 한국수어능력 인증자 등 소지 교원에 대한 우선전보 및 전문 역량 강화
   다)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마)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바)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등 적극 권장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신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합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나.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나) 통합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과정 운영

다)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지역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적극 활용

나)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마)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바) 감염병 상황 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와 관련하여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 마련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 및 편성・운영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확대
다)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라) 특수교육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확대
마) 원격수업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가)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활용 방법,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나)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가)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나) 특수학교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3)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마.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가)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다)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2)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연계 지원 강화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의 상시적 의료조치와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조인력 등 전문 인력 배치·확대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2) 특수교육실무원 역량 강화

가)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직무연수 의무 실시(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포함)

나) 특수교육실무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확대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사회복무요원의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강화

4)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교 대학생 현장실습 확대, 봉사학점제 등 실시

나)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자원봉사 영역 및 지원 인력 확대 노력

사.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절차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라)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마)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등) 활용 확대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의 연계성 강화 방안 강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아.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나)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다)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라)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가) 제주대학교 병원학교 운영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나) 주책임 의료진의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가)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나)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 및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등 교육지원 강화

4)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가)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나)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다)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6)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지정・운영
   가) 제주특별자치도 ICT융합담당관 지원(지정 병원: 제주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나) Blue Band 시스템 구축(http://ubb.jje.go.kr)
   다)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 운영 관리 및 홍보(이용 안내)
   라) 대상: 제주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에 1일 이상 입원 중인 초등학교 학생
   마) 수업과목: 국어(동홍초등학교), 수학(일도초등학교) 실시간 영상수업 운영
   바) 출석인정: 입원기간 동안 1일 최소 1교시 이상 학습 시 인정(녹화수업 포함)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병원, 시설)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내실화
   다) 특수교육대상 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마) 학교·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나) 주민센터, 시·읍·면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다)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라)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차.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및 문화향유권 기회 제공

다)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교육 확산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다)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참가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3.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 발전

1)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 · 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나)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장애유형 · 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즐거운 교실수업 개선

나)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년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가) '꿈길' 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 · 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다)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활용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 직업교육 전문화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가)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나)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다)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나)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다) 관계부처(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마) 장애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
나)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추진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체계 강화
가)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다)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 진로설계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

6)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가) 제주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훈련 인프라 확보 및 진로와 직업교육 효율성 제고
나) 8개 체험관(호텔린넨서비스, 의류매장서비스, 외식서비스, 유통서비스, 사서보조, 사무행정, 바리스타, 가상모의면접)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능력 고취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 2명을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배치하여 제주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

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한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나)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지원
다)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1)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다)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 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2)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백일장, 장애이해 사진・홍보영상 공모전 등의 참여 유도
   나) 유・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맞춤형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등) 배포・활용

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및 상시 감지체계 운영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사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나)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등
   다)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전담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에 대한 진술조력 역할 담당
   라) 유관기관 협업(경찰서, 복지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나) 학교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실시 강화
   다)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라)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마)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일반교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홍보 철저

다) 장학자료 활용 지도: '알고 싶은 소중한 성' 성교육 자료

라)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의 인권보호 자료실 활용

5)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

가)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나) 가족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다.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가)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나)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다)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활용(도특수교육지원센터/알림마당/자료실 참조)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가) 지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훈련 실시

나) 훈련을 통해 파악된 학교의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사전 분석하고 학생 장애정도를 고려한 대응 매뉴얼 수시 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나)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다)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라)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4)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학교보건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등)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다)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사용 의무화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나)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나)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의거 지원 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 돌봄 지원체계 강화
   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대비 지원 방안 마련

나)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돌봄 지원체계 강화

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연계한 돌봄 지원 활성화

3)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나)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4) 방과후교육, 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방과후교육, 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연수 등 역량강화 지원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바.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장학사 배치 및 지원 기능 강화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

다) 교육과정 연수 등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역량 강화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나)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다) 국립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 강화

라)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3) 특수학교(급) 운영지도 강화

가)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 지도

나) 특수학교 경영평가 실시를 통해 특수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및 선도적인 학교경영 모형 제시, 특수교육 유공교원 표창 실시

다) 사립 특수학교 교직원 정(현)원 관리 철저 및 건실한 경영 유도

4)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특수학교(급)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장학 실시

나) 특수교육 전공 교감 등 현장 장학요원 위촉 활용

부록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6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38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3.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30.〉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2019. 12. 10.〉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9. 12. 10.〉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

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①「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신설 2013. 4. 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4. 5.〉

제5장 고등교육〈개정 2016. 5. 29.〉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1. 3. 23.〉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제32조【학칙 등의 작성】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2016. 5. 29.〉

제34조 삭제〈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제17954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대통령령 제3162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 2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2021. 4. 2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 29.〉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2. 8.〉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 12. 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12. 8.]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3조 【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 【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 【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삭제 〈2017. 5. 29.〉

제6장 보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제31623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별표〕〈개정 2016. 6. 2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교육과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0.]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 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 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6. 30.〉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 명 (한 자)		성별	남, 여
	주 소			
	소 속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학교장) ㊞

시 · 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자르는 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의뢰서(고등학교 과정 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시 · 도교육감(교육장) ㊞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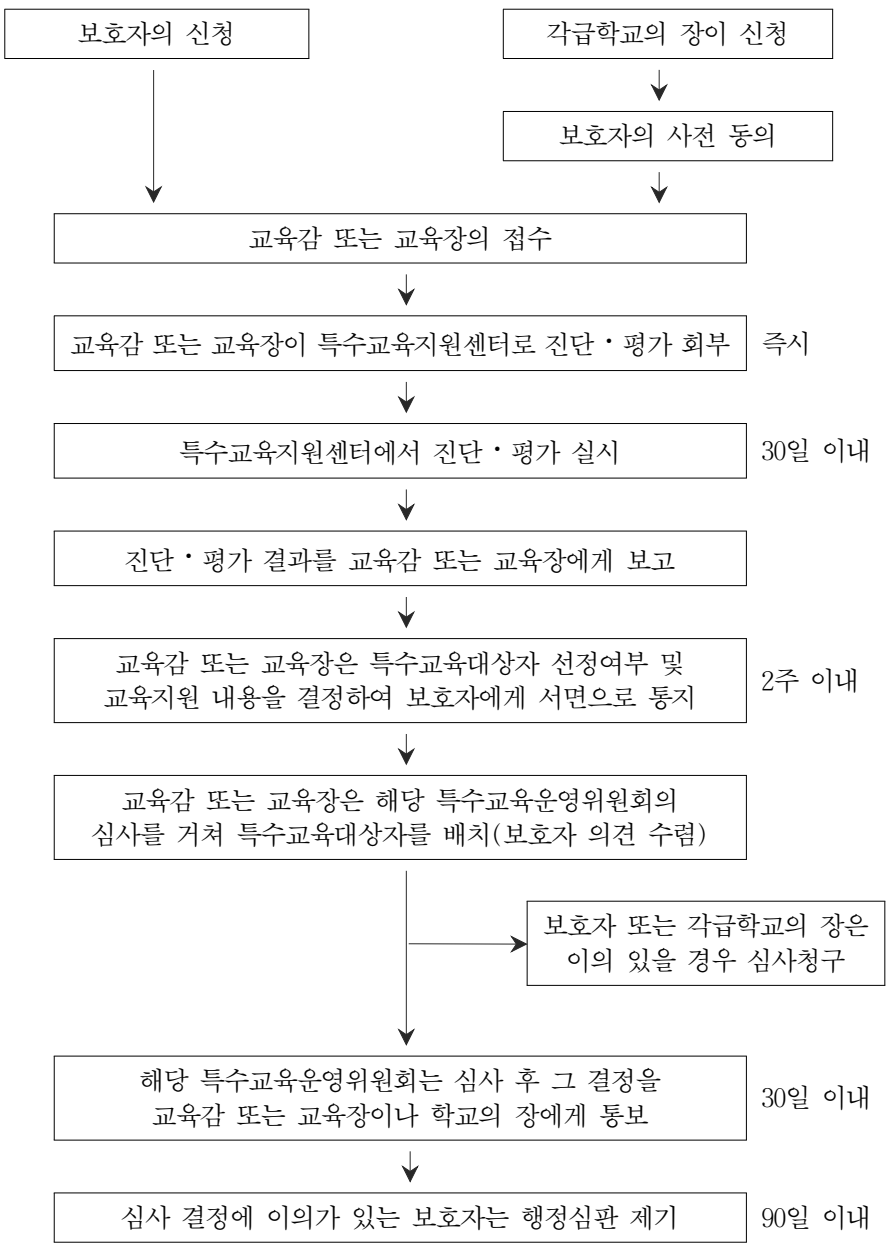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3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 9. 17.〉

(앞면)

심사청구서(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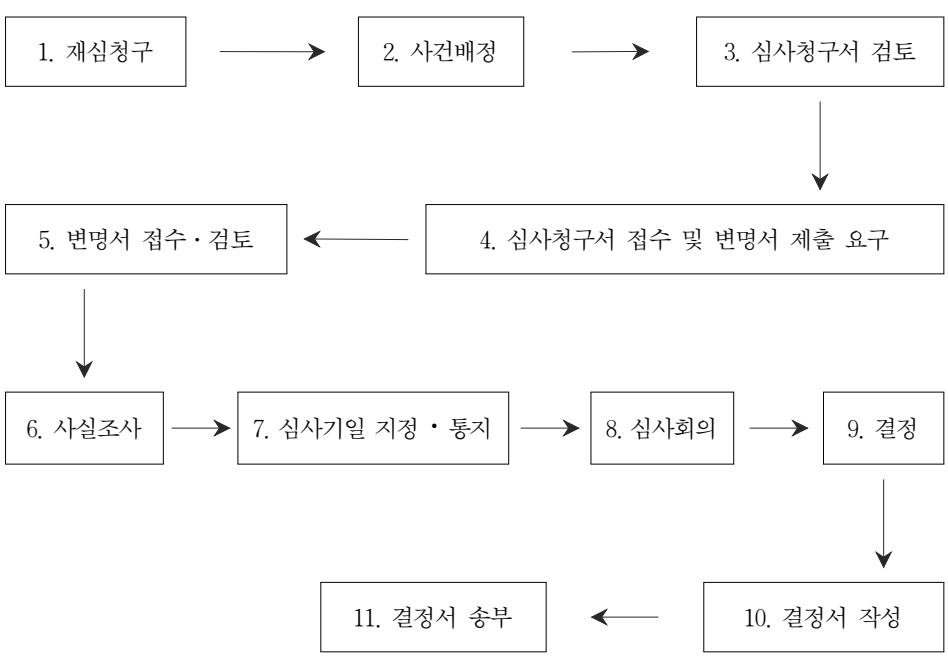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심사결과통지서(전문대학 이상)</td></tr>
<tr><td>① 사건</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② 청구인</td><td>성명</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2">(전화번호:)</td></tr>
<tr><td>소속</td><td colspan="2"></td></tr>
<tr><td>③ 피청구인</td><td colspan="3"></td></tr>
<tr><td>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3"></td></tr>
<tr><td>⑤ 심사 결과</td><td colspan="3"></td></tr>
<tr><td>⑥ 근거법률</td><td colspan="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4">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9. 9. 17.〉

(앞면)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② 청구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학교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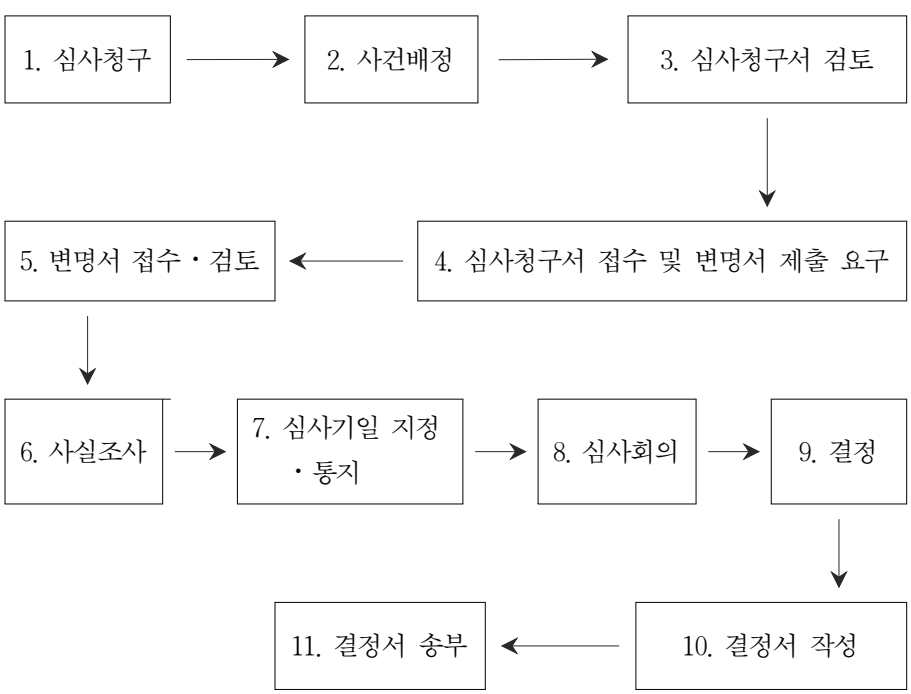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심사결과통지서(고등학교 과정 이하)</td></tr>
<tr><td>① 사건</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② 청구인</td><td>성명</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소속</td><td colspan="3"></td></tr>
<tr><td>③ 피청구인</td><td colspan="4"></td></tr>
<tr><td>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4"></td></tr>
<tr><td>⑤ 심사 결과</td><td colspan="4"></td></tr>
<tr><td>⑥ 근거법률</td><td colspan="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td></tr>
</table>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236

인쇄처: 에프앤(주)
(0859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 1201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전화 02) 6445-2250 / Fax 02) 6445-2262